



2022.10.

국회예산정책처 | 예산안 분석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Analysis by Committee

[정무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예산안분석시리즈 II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총 괄 | 최병권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서세욱 사업평가심의관
이현종 예산분석총괄과장
박주연 산업예산분석과장
김현중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전용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김애선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 성 | 김운성 예산분석관
김용오 예산분석관
김국찬 예산분석관
강지혜 예산분석관

지 원 | 김범준 예산분석관보
장유진 행정실무원
최보경 자료분석지원요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 의 :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 02) 6788-3769 | eb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예산안분석시리즈 II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정무위원회 】

2022. 10.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2. 10. 21.)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지난 9월 2일 총수입 625.9조원, 총지출 639.0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코로나로 인해 확장된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 지출 재구조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년 본예산과 비교하여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비율은 -4.4%에서 -2.6%로, 국가채무비율은 50%에서 49.8%로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민간소비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고용지표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가재정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예산안 심의기관인 국회는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거나 사업효과가 불투명한 사업 등에 대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부문으로 예산을 재배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괄 분석」 3권, 「위원회별 분석」 12권,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3권, 「성인지 예산서 분석」 1권 등 기존 4개 분석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1권 및 「예산안 주요 사업 평가」 1권 등 2개 분석을 추가하여 총 21권을 발간하였습니다.

「총괄 분석」에서는 재정건전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중심으로 재정총량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면서,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등 지원 사업, 국방 분야 부문별 예산안 분석,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업 등 주요 정책 사업과 상임위 결산시정요구사항 및 정부성과평가와 예산안의 연계, 임대형민자사업(BTL)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개별사업 단위로 각 부처의 주요 증액 또는 현안 사업에 대한 효과성·필요성 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에서는 공공기관 증장기 재무관리계획, 금융공공기관 정책금융 예산안 분석 등 주요내용과 금융·환경분야 등의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안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성인지 대상사업으로서의 적합성과 성과지표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았으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대상사업들이 실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예산안 주요 사업 평가」에서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국회 심사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예·결산 심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I. 예산안 개요

1. 현 황	3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5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6

II. 주요 현안 분석

1. 규제혁신 추진체계 개편에 따른 예산편성 및 제도운영의 적정성 검토 필요	8
1-1. 민간 주도 규제개선 심사기구 운영의 차별화 노력 필요	9
1-2. 규제혁신추진단 홍보예산 감액 검토 필요	15

III. 개별 사업 분석

1.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관련 법적 근거 마련 필요	22
2.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 사업의 연내 종료 검토 필요	26

[국민권익위원회]

I. 예산안 개요

1. 현 황	33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34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35

II. 주요 현안 분석

1. 청렴윤리경영 지원 관련 사업의 적절성 검토	36
----------------------------------	----

[국가보훈처]

I. 예산안 개요

1. 현 황	45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50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51

II. 주요 현안 분석

1. 보훈단체운영 및 선양활동등 사업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고려한 집행관리 철저 필요	53
--	----

Ⅲ. 개별 사업 분석

- 1. 재활센터 건립을 위한 공사비 예산 규모 재검토 필요 57
- 2. 순애기금 안정적 사업 수행을 위한 자체수입 확보 필요 61
- 3. 지원 실적 및 세율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고려한 예산안 규모
재검토 필요 66

[공정거래위원회]

Ⅰ. 예산안 개요

- 1. 현 황 73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74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75

Ⅱ. 주요 현안 분석

- 1. 위해제품 감시 및 시정 업무 민간위탁 필요성 재검토 필요 76

Ⅲ. 개별 사업 분석

- 1. 상담실적 감소 추세를 고려한 상담위탁 수당 추가 감액 필요 79
- 2. 경쟁영향평가 의견제시 실적 제고 및 인건비 예산 재검토 필요 83
- 3. 단계별 사업 지연에 따른 이월액 최소화 필요 89

[금융위원회]

I. 예산안 개요

1. 현 황	95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00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02

II. 주요 현안 분석

1. 청년도약계좌 출시 관련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사업 검토	104
1-1. 청년도약계좌 관련 세부 운영계획 수립 필요 등	105
1-2. 청년도약계좌 운영 관련 경상경비 등 감액 필요성 검토	112
2. 청년희망적금 저축장려금 예산규모 재산정 필요 등	117
3.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관련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규모의 적정성 검토	124

III. 개별 사업 분석

1. 핀테크 창업지원 프로그램 신규 추진의 타당성 검토 필요	131
2. 자본시장조사단 특별사법경찰 별도 장비 마련 필요성 검토	138
3. 모바일을 활용한 CTR 당사자 통보에 따른 예산 감액 필요	142
4.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 출자규모 재검토 필요 등	146
5. 신용보증기금으로의 기금전입금 계상 타당성 검토 등	152
6. 보유주식 매각 계획 등을 반영한 공적자금 추가 회수 필요	16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I. 예산안 개요

1. 현 황	171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72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74

II. 주요 현안 분석

1. 신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법적 문제 고려 필요	175
1-1. 아동·청소년 디지털잊힐권리 실현 사업 관련 문제	175
1-2. 개인정보 전송지원 플랫폼 사업 관련 문제	181

III. 개별 사업 분석

1. 개인정보 가명처리 및 전문관리자(CPO) 양성 사업 관련 문제	185
---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

현황

가. 총수입 · 총지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은 일반회계로 구성되며, 총지출은 일반회계 및 1개 특별회계(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된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2,3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과 동일하다.

[2023년도 예산안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63	23	23	23	0	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023년도 총지출은 6,722억 1,6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78억 100만원(2.7%) 증가하였다. 회계 · 기금별로는 일반회계 6,602억 8,600만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119억 3,000만원이다.

[2023년도 예산안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597,517	643,623	642,162	660,286	18,124	2.8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11,213	12,253	12,253	11,930	△323	△2.6
합 계	608,730	655,876	654,415	672,216	17,801	2.7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나. 세입·세출예산안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로 구성되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1개 특별회계(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된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2,3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과 동일하다.

[2023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63	23	23	23	0	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6,725억 1,2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77억 9,100만원(2.7%)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605억 8,200만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119억 3,000만원이다.

[2023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597,608	643,929	642,468	660,582	18,114	2.8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11,213	12,253	12,253	11,930	△323	△2.6
합 계	608,821	656,182	654,721	672,512	17,791	2.7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023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청년 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2022년 41억 2,200만원 → 2023년 92억 4,300만원)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고, ②규제혁신추진단 운영 및 ③특별자치시·도지원단 운영이 신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다.

2023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의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와 규제심판부 간 설치목적 및 기존규제 정비심사 절차 등이 유사한 측면이 있음을 감안할 때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와 규제심판부 운영방식의 차별화를 통해 각 심사기구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규제혁신추진단 운영과 관련하여, 홍보콘텐츠 제작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처 홍보예산을 통해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상시조직인 규제개혁위원회(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및 담당 부처에서 홍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한시조직인 규제혁신추진단은 규제 발굴·검토 등 심사에 집중하는 등 역할 분담이 가능하므로 규제혁신추진단 홍보비 예산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에 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한 국가의 사무 및 민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 이므로, 국무조정실은 중앙 및 지역 청년지원센터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선행한 후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위원회 정비계획상 폐지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므로 2024년 2월까지 운영할 예정인 기획단 및 특별대책위원회의 업무를 2023년 중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2023년도 신규사업은 총 2개 사업 60억 400만원 규모이다.

신규사업 중 규제혁신추진단 운영은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개별 부처의 주도적 해결이 어려운 덩어리 규제개선을 위해 신설된 규제혁신추진단의 조직 운영 등을 위한 사업이고,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운영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족기능 강화 및 행정수도 완성,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자치권 확대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2개)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5,630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운영	374
합 계		6,004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023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국제개발협력 총괄 조정 및 지원(ODA),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국정운영 정보화,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등이 있다.

①청년정책 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 소관 ‘청년센터 운영’ 사업 중 온라인 청년센터 운영 관련 사업출연금을 2023년부터 국무조정실 이관 등에 따라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고, ②부패예방추진단 운영 사업은 조직 존속기한이 2022년 6월에서 2024년 12월로 연장됨에 따라 2022년에 6개월분만 편성된 예산을 2023년에 12개월분으로 편성하면서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③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사업은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운영 경비 등이 반영되어 증액되었다. ④국정운영 정보화 사업은 노후화된 운영 장비를 최신 장비로 교체하기 위한 비용을 반영하여 증액되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2 ¹⁾		2023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1개)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운영	3,242	3,238	3,414	176	5.4
	국정운영 정보화(정보화)	981	981	1,418	437	44.5
	대테러센터 운영	881	881	886	5	0.6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1,059	1,051	1,531	480	45.7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 (ODA)	2,254	2,187	2,870	683	31.2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4,122	4,113	9,243	5,130	124.7
	창의적 업무역량 강화	225	225	235	10	4.4
	내부 정보화(정보화)	1,646	1,646	1,675	29	1.8
	공직복무 관리	705	695	706	11	1.6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416	416	740	324	77.9
	뉴미디어 정책정보 서비스	596	596	597	1	0.2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

규제혁신 추진체계 개편에 따른 예산편성 및 제도운영의
적정성 검토 필요

기존 규제개혁 추진체계는 대통령 소속의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결정하고 신설·강화규제의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기구이며,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안전의 사전 검토·조정 및 전문적 조사·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기술규제위원회, 비용분석위원회 등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하였다. 한편,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은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운영된 규제개선 전담조직으로서 기업의 활동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였다.

2022년 6월 정부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개편하였다. 규제혁신 추진체계는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로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규제혁신추진단을 신설·운영하며, 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체계]



자료: 국무조정실 홈페이지(www.opm.go.kr)

1-1. 민간 주도 규제개선 심사기구 운영의 차별화 노력 필요

가. 현 황

규제개혁위원회 운영¹⁾ 사업은 「행정규제기본법」²⁾에 따라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억 8,000만원 증가한 15억 3,1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2023년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936	1,059	1,051	1,531	480	45.7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안을 의미

자료: 국무조정실

김윤성 예산분석관(kimys1001@assembly.go.kr, 6788-4623)

1) 코드: 일반회계 7033-301

2)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2023년도 동 사업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은 규제혁신 추진시스템 개편에 따라 민간 주도 규제개혁 추진(규제심판제도) 2억 3,000만원, 규제혁신전략회의 운영 2억 1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된 것에서 기인한다.

[2023년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년도		2023년도 예산안
		본예산	추경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921	913	1,192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747	739	794
	규제개혁 관련 회의 지원	35	35	35
	규제개혁신문고	37	37	37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63	63	56
	비용분석위원회	15	15	15
	적극행정 추진	25	25	25
	민간 주도 규제개혁 추진 (규제심판제도)	-	-	230
○ 규제혁신전략회의 운영		-	-	201
○ 국제협력		18	18	18
○ 범정부 규제혁신 국민소통		120	120	120
계		1,059	1,051	1,531

주: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국무조정실

나. 검토의견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와 규제심판부 간 설치목적 및 기존규제 정비심사 절차 등이 유사한 측면이 있음을 감안할 때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와 규제심판부 운영방식의 차별화를 통해 각 심사기구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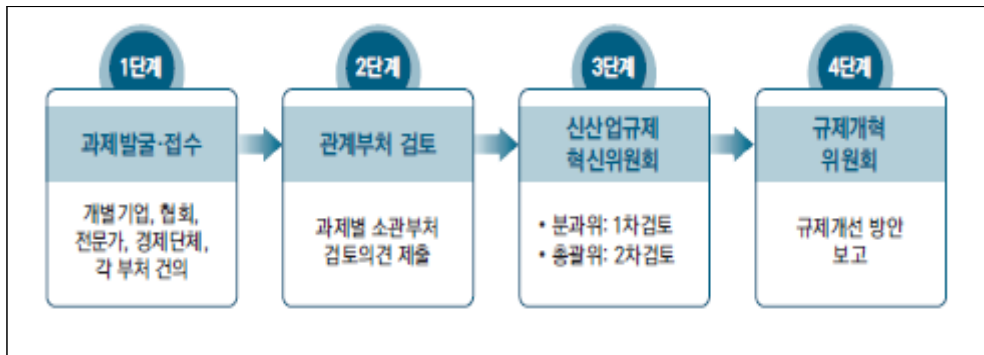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민(民) 주도의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규제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문기구³⁾로, 2022년 8월말 기준 5개 분과위원회에서 124명

3)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1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③ 위원회는 신산업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위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국무조정실훈령) 제18조(자문기구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3개 자문기구를 둔다.

의 민간위원이 활동 중이다.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 과제에 대한 검토는 과제발굴·접수, 관계부처 검토,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검토 및 규제개혁위원회 보고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규제개선 과제 검토 절차]



자료: 2021년 규제개혁백서

한편,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이하 ‘규제심판부’)는 민간이 주도하여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는 국무조정실장 소속의 심의기구⁴⁾로, 2022년 8월 현재 2개 분야(경제, 행정·사회) 10개 분과⁵⁾ 99명의 민간전문가 풀(pool)로 구성되어 있다. 규제심판은 과제 접수·발굴 및 소관부처 검토, 규제심판부 심의 후 규제개혁위원회 개선 권고, 필요시 규제혁신전략회의 상정·논의의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1. 비용분석위원회

2.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3. 기술규제위원회

③ 자문기구는 신설·강화 규제의 비용분석, 신산업 및 기술규제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안전의 사전 검토·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지원한다.

4)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및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 운영세칙」(국무조정실훈령)

5) 경제분야: 금융·공정거래, 주택·교통·입지, 소상공인·중기벤처, 산업혁신·에너지, ICT·과기·방통
행정·사회분야: 행정·지역, 교육·문화, 보건·의료, 해양·환경, 고용·안전

[규제심판제도 절차]



자료: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와 규제심판부는 소속이 다르고 규제심판부의 심사분야가 포괄적이라는 차이점은 있으나, 민간의 주도로 기존 규제개선을 추구한다는 목적과 그에 따라 민간전문가만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또한, 두 기구의 기존 규제 개선 심사가 “현장건의 및 온라인 접수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한 개선과제 발굴 · 접수 → 소관부처 검토 → 심의 → 규제개혁위원회 보고”의 절차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인적 구성 차원에서도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위원 중 14명이 위원의 전문성 및 규제혁신 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기반으로 규제심판부 위원 풀에도 참여하고 있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와 규제심판부 비교]

구 분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 (규제심판부)
목적	신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신산업 · 신기술 분야의 민간주도의 규제개선시스템 확립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선과제에 대한 민간 주도의 전문적 심의
설치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21③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18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및 「민간주도 규제개선 심의회 운영세칙」
성격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	국무조정실장 소속 심의회
분야	무인이동체 등 신산업 · 신기술 5개 분야	2개 분과(경제, 행정 · 사회) 10개 분야
구성 (2022.8.)	민간 전문가 124인	민간 전문가 99인
절차	과제 접수 · 발굴 → 관계부처 검토 →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보고	과제 접수 · 발굴 → 소관부처 검토 → 규제심판부 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개선 권고

자료: 국무조정실 제출자료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회의가 2021년~2022년 8월말까지 1건을 제외하
고는 모두 서면으로 개최되고 있어 회의체 형태로 운영할 필요성이 낮다고 보인다.

[2021~2022.8월말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운영실적]

(단위: 회, 천원)

연도	회의실적						운영예산	
	무인 이동체	ICT 융합	바이오 헬스	에너지 신소재	신서비 스	총괄위	예산액	집행액
2021	6	7	9 ¹⁾	10	-	2	63,000	41,301
2022.8.	3	2	5	5	2	1	63,000	21,529

주: 1) 2021년 바이오헬스 분과 1회만 대면회의로 개최하였으며, 그 외에는 모두 서면 개최임

자료: 국무조정실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종합적으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와 규제심판부의 목적, 절차 등이 유사하고, 규제심판부의 심사분야가 전반적이어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신산업·신기술 분야를 포괄할 수 있으며 일부 신산업규제혁신위원이 이미 규제심판부 민간전문가 풀에 참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두 심사기구 간 차별성이 부족할 경우 오히려 규제 개선 심사가 중복되어 운영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와 규제심판부 운영방식의 차별화를 통해 각 심사기구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1-2. 규제혁신추진단 홍보예산 감액 검토 필요

가. 현 황

규제혁신추진단 운영¹⁾ 사업은 민·관·연 협업을 통해 덩어리 규제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무총리 소속 규제혁신추진단을 설립·운영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56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	-	(예비비 3,632)	5,630	5,630	순증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²⁾(이하 ‘추진단’)은 다수부처가 연계되어 있거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소위 ‘덩어리 규제’의 발굴·검토·개선을 위해 각 분야의 경험 및 전문성을 가진 전직 공무원,³⁾ 민간전문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국무총리 소속 조직으로 2022년 8월 1일 출범하였다. 추진단은 2개 분과 10개 팀에 전직 공무원 86명, 연구기관·경제단체 37명이 배치되어 근무 중이며, 자문단(비상근) 33명 및 지원국 20명이 추진단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김윤성 예산분석관(kimys1001@assembly.go.kr, 6788-4623)

1) 코드: 일반회계 7033-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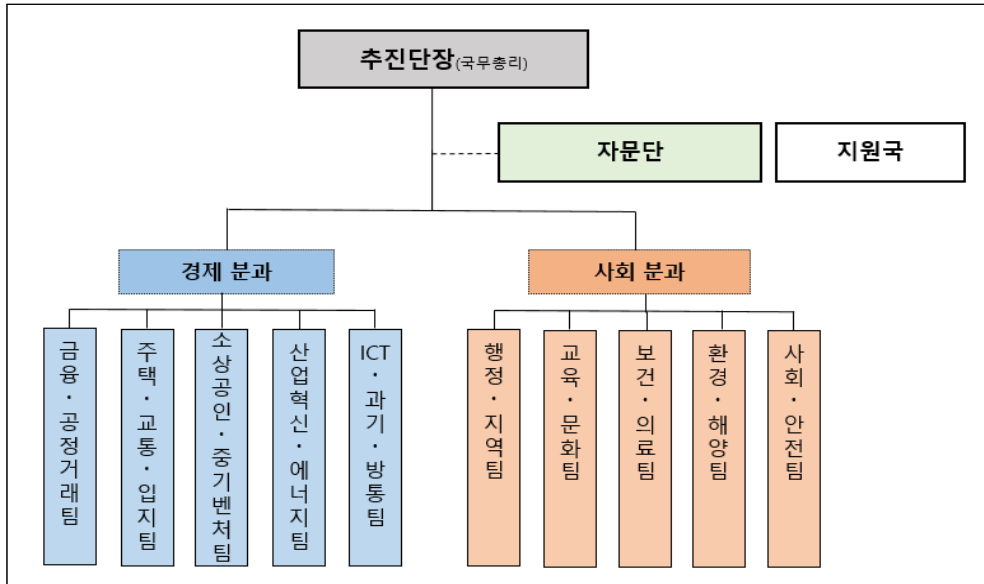
2) 「규제혁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한 발굴·검토·개선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1. 다수 부처의 권한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규제
2.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규제
3. 신산업 분야 또는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제품 분야의 규제
4. 기업활동 또는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규제로서 기업활동 또는 경제활동 개선을 위해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제

3)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퇴직공무원으로서 관련 직무분야에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규제혁신추진단 조직 현황]



자료: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구성 현황]

(단위: 명)

구 분	경제분과					사회분과					현장 협력	합
	금융공 정	주택교 통입지	소상공 인증기 벤처	산업 혁신 에너지	ICT 과기 방통	행정 지역	교육 문화	보건 의료	환경 해양	사회 안전		
전직 공무원	9	5	13	13	-	14	8	6	7	11	-	86
연구기관· 단체	3	3	2	2	6	1	2	3	3	2	10	37
계	12	8	15	15	6	15	10	9	10	13	10	123

자료: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지원국 구성 현황]

(단위: 명)

정원	현원	직제 미반영					
		별도		비별도			
		중앙		중앙		지자체	
-	20	국조	고위나 1명	국조	5급 1명	경기	5급 1명
		국조	3·4급 1명	국조	기간제 5명	경기	6급 1명
		국조	5급 1명			서울	5급 1명
		기재	4급 1명			인천	5급 1명
		행안	4·5급 1명				
		산업	4·5급 1명				
		복지	5급 1명				
		국토	5급 1명				
		공정	5급 1명				
		법제처	5급 1명				

자료: 국무조정실

2022년 8월부터 추진단이 운영됨에 따라 2022년에는 운영예산 5개월 분인 36억 3,200만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었으며, 2023년도 예산안에는 혁신단 운영 44억 8,600만원, 덩어리규제 발굴 관련 4억 100만원, 추진단 홍보 3억 5,800만원 등이 계상되었다.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사업 예산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세목	2022예산 (예비비)	2022.8월말 집행액	2023예산안
합 계		3,632	204	5,630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소 계	2,939	204	4,486
	상용임금	1,045	192	2,634
	일반수용비	33	-	118
	공공요금및제세	37	-	96
	특근매식비	2	-	19
	복리후생비	1	-	3
	일반용역비	40	-	80
	관리용역비	8	-	24
	기타운영비	2	-	10
	임차료	444	-	1,133
	관서업무비	9	-	24
	고용부담금	75	12	257
	공사비	181	-	-
	자산취득비	1,063	0.03	60
	직책수행경비	-	-	27
덩어리규제 발굴	소 계	300	-	401
	일반수용비	70	-	130
	사업추진비	30	-	72
	정책연구비	200	-	200
발굴 규제 검토·개선·조정	소 계	165	-	385
	일반수용비	110	-	226
	국내여비	47	-	134
	사업추진비	8	-	25
규제혁신추진단 홍보	소 계	228	-	358
	일반수용비	128	-	308
	일반용역비	100	-	50

자료: 국무조정실

나. 분석의견

규제혁신 추진체계 및 덩어리 규제개선의 세부 내용에 관한 홍보는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사업 및 타 부처 사업 예산으로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상시조직인 규제개혁위원회(규제조정실) 및 담당 부처에서 홍보를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규제혁신추진단은 규제 발굴·검토 등 심사에 집중하는 등 역할 분담이 가능하므로, 규제혁신추진단 홍보예산의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추진단은 2022년 예비비를 통해 홍보비 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예산안에는 덩어리 규제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개선 필요성, 규제혁신추진단의 규제개선 실적 및 활동 성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개선안 시행에 따른 법령 개정사항 등 규제혁신추진단 제도 활용도 및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를 위해 3억 5,800만원으로 홍보비를 증액하였다.

[규제혁신추진단 홍보비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2022년도 예비비		2023년도 예산안	
228		358	
	리플렛·인포그래픽 등 제작 8		리플렛·인포그래픽 등 제작 18
	온라인·모바일 광고 120		온라인·모바일 광고 290
	홍보콘텐츠 제작 50		홍보콘텐츠 제작 50
	홈페이지 제작 50		-

자료: 국무조정실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규제혁신추진단은 존속기간이 있는 한시조직⁴⁾으로 민·관·연 협업으로 덩어리 규제의 발굴·검토·개선을 목적으로 출범하였고, 2022년 8월말 기준 규제혁신추진단 홍보비 집행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규제혁신 시스템 개편과 관련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사업예산 내 홍보비(1억 2,000만원)로 집행해왔다. 또한, 2022년 9월말 기준 덩어리 환경규제 개선 홍보 등 규제혁신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소관 부처(환경부)에서 홍보자료를 제공했으며 동 자료를 국무조정실과 공유하고 있다.

4) 「규제혁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존속기한) 추진단은 이 훈령에 따라 설치된 날부터 3년간 존속한다. 다만,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2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022년 규제개혁위원회 홍보예산 집행 내역]

(단위: 천원)

연도	콘텐츠 내용	예산액	지출액	계약자	계약 기간	계약 방법
2022	규제혁신 국민소통 (콘텐츠 제작·운영)	110,000	109,000	ㅇㅇㅇㅇ 엔에스	1.6~ 12.16	경쟁
	계	110,000	109,000	-	-	-

자료: 국무조정실

[2022년 환경부 규제혁신 관련 홍보자료]

환경부

민간혁신과 현장적용성 제고로 국민이 누리는 더 나은 환경 구현

환경규제 혁신 방안

기본 방향

- 환경정책 목표: 확고하게 유지, 정책시그널 제시
- 환경규제 수단: 민간혁신 유도, 현장적용성 제고
- 환경성과 강화: 탄소중립 전환과 국민이 누리는 더 나은 환경

덩어리 환경규제 방향 전환

폐기물 재활용 규제

» 열린(negative) 규제 확대로 민간의 창의적 혁신 촉진

자원순환 규제샌드박스 도입
폐기물 규제 면제 확대
→ 전 2,000여만 마스의 사회적 편익 창출

환경영향평가

» 과학-데이터를 활용하여 절차는 줄이고 투명성은 강화

· 스크리닝 도입, 조사 범위·항목 합리적 조정
→ 평가 내실화, 평가기간 단축, 비용절감
· 실시간 진행상황 정보제공
→ 투명성·신뢰성 강화

화학물질 규제

» 위험에 비례한 규제 차등·합리화로 국민안전 강화

물질 유·위해성에 따라 맞춤형 규제로 전환
EOL 위험성평가보고제 등 선진국형 제도 도입 논의 착수

환경정책 목표 구현 규제 혁신

탄소중립 전환

· 포집(CO2) 건설소재 등 재활용 허용
· 배출권거래제 해당실적 인정할지 간소

순환경제 구현

· 폐배터리 폐기물 규제 면제(순환자원 인정)
· 일반폐기물 나트륨 원료 활용 허용

녹색산업 육성

· 환경표지 통합인증 도입
· 환경규제 의무사항 맞춤형 데이터베이스 지원

현장으로 해소 규제 합리화

유사·중복 규제 일원화

· 화학규제-폐기물 규제 중복 적용을 폐기물 규제로 일원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현실화

· 용접용가스 공공처리시설 연계하면 배출기준 합리적 조정

모호한 기준 명확화

·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판단기준 명확화(적용 협의한 사업내용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위와 같이 홍보콘텐츠 제작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처 홍보예산을 통해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상시조직인 규제개혁위원회(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및 담당 부처에서 홍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한시조직인 규제혁신추진단은 규제 발굴·검토 등 심사에 집중하는 등 역할 분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규제혁신추진단 홍보비 예산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관련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가. 현 황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¹⁾ 사업은 청년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청년정책의 분석 및 이행상황 점검·평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51억 3,000만원 증액된 92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

[2023년도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3,535	4,122	4,113	9,243	5,130	124.7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국무조정실

2023년도 예산안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은 오프라인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21억 3,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온라인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온라인 청년센터 서비스 관리 주체를 고용노동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이관함에 따라 온라인 청년센터 운영 예산²⁾이 동 사업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김윤성 예산분석관(kimys1001@assembly.go.kr, 6788-4623)

1) 코드: 일반회계 7035-316

2) 2022년도 온라인 청년센터 관련 예산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본예산	추경(A)
청년지원 센터	9,364	11,728	11,728
온라인 청년센터	2,393	4,148	4,148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별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1결산	2022본예산	2023예산안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3,535	4,122	9,243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정책책임관협의회 운영	186	205	219
청년참여 확대	1,024	1,116	1,158
청년의 날 기념 및 주간행사 개최	193	550	650
청년정책 연구사업	209	120	170
청년정책홍보	593	632	682
청년 종합 실태조사	88	1,200	150
시행계획 점검 및 추진실적 분석·평가	105	300	300
오프라인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	-	2,139
온라인 청년센터 운영	-	-	3,775

자료: 국무조정실

나. 분석의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한 국가의 사무 및 민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¹⁾이므로, 국무조정실은 중앙 및 지역 청년지원센터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선행한 후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청년센터는 청년 커뮤니티·단체활동 지원, 구직 지원, 청년활동공간 제공 등 청년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현재 218개소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각 지역 청년센터가 양질의 서비스를 균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광역 단위의 청년지원센터와, 지역 청년지원센터의 사업 관리 및 전국의 청년센터 지원을 담당할 중앙지원센터로 이어지는 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앙 지원센터 및 지역 청년지원센터를 공공·민간기관 등 전문기관을 공모방식으로 선정하여 위탁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2023년도 예산안에 민간위탁사업비 21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다.

[오프라인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추진내용]

구 분	중앙지원센터	지역 청년지원센터
기능	◦ 지역 청년지원센터 사업관리 및 전국 청년센터 지원 - 사업관리: 사업계획 수립, 청년지원센터 심사·선정, 모니터링·평가 등 지역 청년지원센터 사업 전반 관리 - 청년센터 지원: 지역센터 운영 매뉴얼 개발, 청년시설·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개발 및 운영, 청년정책 자료집 제작 및 서비스 홍보	◦ 지역 내 청년센터 지원 등
예산안	5억 3,900만원 - 지역센터 운영 매뉴얼 개발 1억원 - 지역 청년지원센터 선정·사업관리 등 1억원 - 청년시설(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개발 및 운영 2억 3,900만원 - 청년정책 자료집 제작 및 서비스 홍보 등 1억원	16억원(4억원 × 4개 지역) - 지역별 특화 청년 사업 2억원 - 지역 내 청년정책 유관기관·청년센터와 네트워크 구축 1억원 - 청년정책·서비스 종합 안내 창구 마련·홍보 1억원

자료: 국무조정실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민간위탁사업은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민간 법인·단체·기관 등에게 맡기는 사업이므로 법률에 사무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³⁾ 그러나 「청년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⁴⁾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청년정

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책 지원 또는 청년지원기관 운영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⁵⁾

즉, 청년 통합지원체계에 관한 국가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지역 간 균등한 청년지원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사무 및 민간 위탁에 대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그에 근거하여 안정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중앙 및 지역 청년지원센터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선행한 후 오프라인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5)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청년기본법」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현재 관련 위임규정이 없다.

「청년기본법」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국무총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그 업무의 일부를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가. 현 황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¹⁾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사무·운영을 지원하고 미세먼지 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800만원 감액된 5억 4,3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2023년도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	647	551	551	543	△8	△1.5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국무조정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특별대책위원회’)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심의위원회²⁾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관련 정부대책 심의·조정, 국제협력 등을 심의한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은 특별대책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의 지원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운영된 사무기구이다.³⁾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기획단은 기한 내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도

김윤성 예산분석관(kimys1001@assembly.go.kr, 6788-4623)

1) 코드: 일반회계 7032-305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①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2.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3.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4.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건강 관리

5.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요령 등 국민제안 및 실천사항

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7.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모할 목적으로 존속기한을 5년으로 설정하여 2024. 2. 14.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기간 종료 1년 전에 성과를 국회에 보고하여 존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기획단은 2022년 8월말 기준 17명이 근무 중이며, 기획재정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15명이 파견 근무 중이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조직 구성 현황]

(단위: 명)

계	고공단		3.4급		4급		5급		관리운영직	
17	-		1		3		12		1	
파견 인원	기재부	환경부	국토부	산자부	해수부	충청 남도	행안부	교육부	서울시	복지부
	2	4	1	1	1	1	2	1	1	1

자료: 국무조정실

나. 분석의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위원회 정비계획상 폐지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2022년 서면회의 중심의 안전 검토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부 내 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획단 및 특별대책위원회의 업무를 2023년 중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2년 9월말 현재 정부는 정부위원회 636개 중 유사·중복, 운영실적 저조, 단순 자문 성격 등의 사유로 불필요한 246개 위원회를 폐지·통합하는 내용의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총 27건의 일괄개정 법률안⁴⁾을 제출(2022. 9. 30.)하였다. 정비 계획상 특별대책위원회는 폐지 대상 위원회로 선정되었으나, 법률 개정 대상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2023년도 예산안에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 사업 예산도 편성되었다.

3) 동법 제12조(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 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의 원활한 추진과 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설치한다.

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등 27건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및 국무조정실은 특별대책위원회가 단순 자문 성격의 위원회로 분류되어 폐지위원회로 선정되었으나 법률상 존속기간인 2024. 2. 14.까지 이므로 현 체제를 유지한 후 2024년에 연장없이 폐지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2023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점(2022. 9. 2.)에 법률상 근거가 있더라도 위원회 정비계획에 포함된 정부위원회 운영 예산은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일례로 국무총리 소속 식품안전정책위원회⁵⁾는 폐지 대상 위원회로 선정되어 개정안이 2022. 9. 30. 국회에 제출되었으며⁶⁾ 동 위원회 운영 예산은 2023년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예산안에는 전액 삭감되어 있다.⁷⁾

또한, 실제 2022년 특별대책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면, 대면 회의 2회, 영상회의 2회, 서면회의 7회가 개최되었으며, 특히 특별대책위원회의 주요 업무인 종합계획의 이행점검·평가와 관련된 분과회의는 모두 서면으로 개최되는 등 심의를 위한 회의체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식품안전기본법」

제7조(식품안전정책위원회) ①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식품등의 안전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안전법령등 및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등에 대한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
5. 중대한 식품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종합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7675, 정부 제출)

7)

[2023년도 현안과제 추진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현안과제 추진 지원	864	810	810	284	△526	△64.9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운영	179	208	208	-	△208	△100.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국무조정실

[2022년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개최 현황]

구분	장소	일자	주요내용	참석 인원
전체회의	영상	2.10	①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현황 ② 제1기 미세먼지특위 주요성과	14명
	한국 프레스 센터	2.28	① 제2기 미세먼지특위 운영계획 ②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방안	16명
	서면	3.30	①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32명
	한국 프레스 센터	5.31	① 1분기 분과위 의견 조치계획 ② 제 3차 계절관리제 시행 효과 분석 결과 ③ 국정과제 주요내용 및 이행계획 ④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건강영향	13명
분과장 협의회	영상	2.22	① 제2기 미세먼지특위 운영계획 ②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중간평가 추진 계획	4명
분과위	서면	4.25	① 공공부문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1분기 이행점검	6명
	서면	4.25	① 민간부문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1분기 이행점검	6명
	서면	4.25	① 생활부문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1분기 이행점검	5명
	서면	7.29	① 공공부문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2분기 이행점검	4명
	서면	7.29	① 민간부문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2분기 이행점검	3명
	서면	7.29	① 생활부문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2분기 이행점검	3명

자료: 국무조정실

특히 최근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이 정부 내 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임을 감안할 때, 기획단 및 특별대책위원회의 업무를 2023년 중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1

현황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8억 2,300만원으로 전년 추경 예산 대비 2억 8,400만원(52.7%) 증가하였다.

[2023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435	539	539	823	284	52.7

주: 1) 추경의 경우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949억 5,800만원으로 전년 추경 예산 대비 16억 7,000만원(1.8%) 증가하였다.

[2023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83,414	93,288	92,793	94,958	1,670	1.8

주: 1) 추경의 경우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2023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국민 제안 시스템 고도화, 적극행정 신청·소극행정 신고 시스템 서비스 개선을 하면서 국민 소통시스템구축및운영 사업 예산이 확대되었고(2022년 31억원 → 2023년 58억원), ② 국민콜 110 상담사 인건비 인상분과 노후화된 상담장비 교체비용이 반영되면서 종합상담창구운영 사업 예산이 확대되었으며(2022년 112억원 → 2023년 115억원), ③ 청렴연수원 내진보강공사 등이 종료됨에 따라 청렴교육및의식확산 사업이 감액되었다(2022년 26억원 → 2021년 22억원).

2023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의 K-CP 사업 추진 방식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윤리관련 지표를 개발하고 해당 기관에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바, 현재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청렴교육및 의식확산” 및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청렴도 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사업 등과 사업 대상 및 목적, 수행 방식이 유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년도 신규사업은 총 1개 사업, 1억 1,400만원 규모이다.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 사업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를 접수·처리하고 공공기관 공정채용을 교육·홍보하여 공정채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운영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1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	114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도 주요 증액사업은 국민소통시스템구축및운영(정보화), 종합상담창구 운영, 부패신고자보호보상 등이 있다.

① 국민소통시스템구축및운영(정보화) 사업은 국민제안, 적극·소극행정 시스템 고도화 예산으로 증액되었고, ② 종합상담창구운영 사업은 국민콜 110 상담사 인건비 상승분과 노후화된 상담장비 교체비용을 반영하면서 증액되었으며, ③ 부패신고자보호보상 사업은 부패신고자 보상금 지급 증가추세를 반영하면서 예산이 증액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2 ¹⁾		2023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개)	국민소통시스템구축 및 운영(정보화)	3,112	3,112	5,780	2,668	85.7
	종합상담창구운영	11,169	11,169	11,547	378	3.4
	부패신고자보호보상	2,682	2,682	2,832	150	5.6

주: 1) 추경의 경우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1

청렴윤리경영 지원 관련 사업의 적절성 검토

가. 현 황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사업¹⁾은 공기업 등이 청렴윤리경영을 자율 실천할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K-CP)’ 마련·배포를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1억 2,8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청렴윤리경영 지원 관련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청렴권익민간협력	502	672	672	672	-	-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	128	128	128	-	-

주: 1) 추경의 경우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부터 기업의 청렴윤리경영²⁾을 지원하기 위해 청렴권익민간협력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2022년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³⁾(K-CP)을 처음 도입하였다. 당시 부동산 투기의혹사건 등을 계기로 공기업에 대한

강지혜 예산분석관(jihyekang@assembly.go.kr, 6788-46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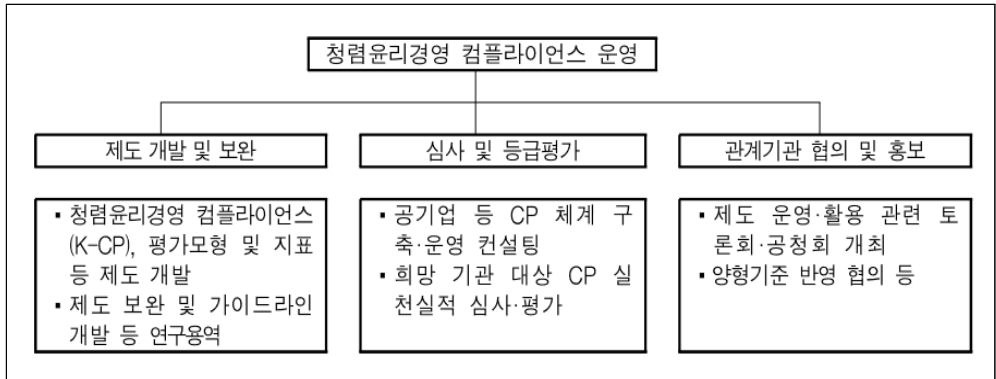
1) 청렴권익민간협력(사업코드 1133-333) 사업 내 내역사업

2)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윤리경영을 공기업 등이 법규를 준수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도입 뿐만 아니라 부패행위·비리 등 부패위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탐지·대응·개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경영방식으로 본다.

3) 자율준수프로그램 또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은 기업이 스스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일련의 내부 시스템·지침 등을 말한다. CP는 기업의 임직원들에게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기업의 문화로 체화하도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자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전에 위반행위 재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청렴윤리경영이 강조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K-CP를 “공기업 등의 부패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로 정의하고, 이를 위해 부패 리스크를 자율적으로 예방 탐지 개선하여 청렴한 문화를 조성하는 일련의 시스템 및 리스크 관리 활동으로 제시하며 2022년 예산안에 K-CP 시범사업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추진방향]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에 시범 대상으로 선정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CP 지표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며, CP 도입 기관의 운영 실태 심사 및 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운영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나. 분석의견

국민권익위원회의 K-CP 사업 추진 방식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윤리관련 지표를 개발하고 해당 기관에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바, 현재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청렴교육및 의식확산” 및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청렴도 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사업 등과 사업 대상 및 목적, 수행 방식이 유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청렴윤리경영 K-CP는 기관이 자발적으로 기관 내 부패관련 리스크 식별, 평가, 개선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교육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운영을 지원하는 제도로 계획되었다. 2022년 K-CP 도입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는 대상기관으로 공기업 등을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이후 연구용역 및 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해 민간기업 대상 K-CP 추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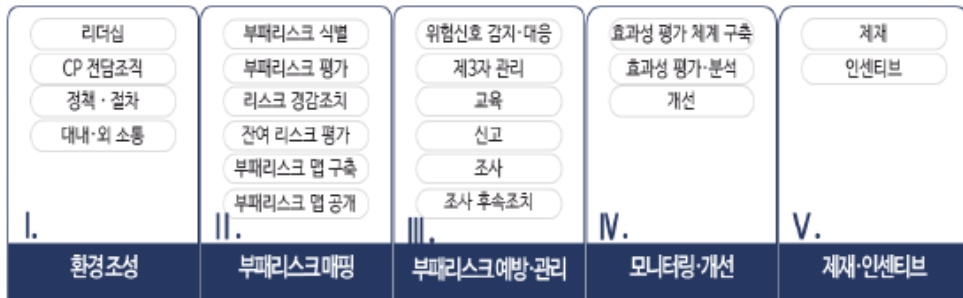
그러나 K-CP의 민간 기업 대상 도입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2년도 예산안 보고서를 통해 민간기업에의 K-CP 적용 여부를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공직 영역의 부패를 예방하고 규제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하여⁴⁾ 적용 대상을 공기업으로 한정하여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K-CP 도입 기업의 양형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이에 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6월 K-CP를 공공기관용 가이드라인⁵⁾으로 배포하고 시범 대상으로 총 20개의 공공기관을 선정하였으며, 민간기업 가이드라인의 경우 현재 배포할 계획이 없으며 K-CP 관련 민간기업 대상 사업의 진행 여부 또한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공기업 등에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컨설팅 교육 등 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 또한 K-CP 도입 배경에 대해서도 2021년 3월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표한 공직자 반부패 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로 K-CP가 포함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매뉴얼은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공기업 등에 우선 적용을 고려하여 개발되었으며, 기업 등에서도 청렴윤리경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범용성을 두었다고 밝히고 있다.

[청렴 윤리 경영 CP 구성체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2023년 예산안에서 밝힌 K-CP의 대상기관 및 운영방식 등 운영 계획에 따르면, K-CP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프로그램의 내역사업인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과, “청렴도 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사업(이하 “청렴도 측정”)⁶) 과 사업 대상 및 운영 방식 등에서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K-CP와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에는 궁극적으로 청렴성 제고를 통한 청렴윤리경영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목적 하에 그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다는 사업운영방식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다고 보인다.⁷)

⁶)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측정) 사업은 공공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 진단, 반부패·청렴시책의 적정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각급 기관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23억 2백만원이 편성되었다. 한편, 청렴윤리경영 교육 사업은 공직자(청렴교육) 및 공기업 및 공직유관단체 대상(청렴윤리경영 교육) 반부패·청렴 교육을 통한 청렴도 향상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1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청렴도 측정 및 청렴(윤리경영) 교육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2,425	2,522	2,507	2,644	137	5.5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측정)	2,082	2,086	2,086	2,302	216	10.4
청렴교육 및 의식확산	2,010	2,622	2,592	2,152	△440	△17.0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 운영	-	100	100	160	60	60.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⁷)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윤리교육과정은 일반적이고 집합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나, K-CP는 소수의 기관을 심층분석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두 사업간 운영방식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K-CP와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 사업 비교]

구 분	K-CP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
사업 목적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청렴윤리경영 실천 및 문화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K-CP)’을 개발·보완 - 이후 K-CP를 공공기관용 가이드라인으로 배포, 가이드라인 배포 후 희망기관 대상 교육·컨설팅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시범운영을 추진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 공기업 및 공직유관단체 대상 청렴윤리경영 교육 지원으로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문화 확산을 통한 민간 부문 청렴도 향상
법적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능), 시행령 제3조(기업윤리경영 지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2조, 제81조, 제81조의2, 제88조의2 등
성격	공기업 등에 컨설팅 교육 등 윤리경영을 조력 지원	공기업 및 공직유관단체,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 교육

자료: 국민권익위원회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K-CP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리스크를 식별하고 평가하여 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도 측정 사업⁸⁾을 통해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매년 청렴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른 세부 분석을 통해 청렴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⁹⁾ 이러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K-CP 대상 시범 기관으로 선정한 20개 기관의 경우 이미 모든 기관이 청렴도 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사업의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¹⁰⁾

8) 해당 사업의 경우 기관의 청렴 수준과 부패방지 시책 추진 실적을 사후 평가하는 제도이다. 2021년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일정 규모 이상 공직유관단체(공기업은 전수, 준정부기관은 정원 300명 이상, 기타공공기관은 500명 이상 기관에 대하여 전수조사) 대상으로 총 592개 기관에 대해 청렴도를 측정하였다.

9)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도 측정 사업의 청렴 컨설팅의 경우 청렴도 평가 결과 하위권 기관(5등급제 중 4~5등급)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등급 개선을 위해 부패인식, 부패경험 등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별 부패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부패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K-CP보다 대상기관의 범위와 내용이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K-CP 시범 대상 공공기관 목록]

선정 연도	선정 목적	K-CP 선정 기관	청렴도 측정 대상
2021년 (총 6개 기관)	청렴윤리경영 CP 개발 단계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목적	한국가스공사	○
		한국도로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전력공사	○
		한국지역난방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2022년 (총 14개 기관)	청렴윤리경영 CP 가이드라인 발표 후 유효성 검증 등을 위해 확대 선정	강원랜드	○
		경기주택도시공사	○
		국민연금공단	○
		도로교통공단	○
		서울시설공단	○
		인천교통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한국산업단지공단	○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철도공사	○
		한전KPS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K-CP 프로그램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윤리경영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 청렴도평가 사업 및 청렴윤리경영 교육 내역사업과 대상, 목적 및 운영 방식 등이 유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10)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도 측정 사업을 통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보고서에서 청렴도 측정 사업의 향후 계획으로 공공기관의 부패수준·실태와 함께 반부패 노력도 반영하여 평가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체제로 개편('21.12월)할 계획을 제시하였고, 2022년부터 기존 청렴도 측정 사업(공공기관의 부패수준·실태 측정 목적)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반부패 노력 평가 목적) 사업을 통합한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1

현황

가. 총수입·총지출

국가보훈처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은 일반회계, 2개 특별회계(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2개 기금(보훈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으로 구성된다.

국가보훈처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2,176억 2,0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05억 6,100만원(4.6%) 감소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95억 7,300만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6,1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7,500만원, 보훈기금 2,000억 9,300만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78억 1,800만원이다.

[2023년도 예산안 국가보훈처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4,139	9,304	9,304	9,709	405	4.4
- 일반회계	4,020	9,198	9,198	9,573	375	4.1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4	61	61	61	0	0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75	45	45	75	30	66.7
기 금	86,955	218,877	218,877	207,911	△10,966	△5.0
- 보훈기금	75,716	211,290	211,290	200,093	△11,197	△5.3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11,239	7,587	7,587	7,818	231	3.0
합 계	91,094	228,181	228,181	217,620	△10,561	△4.6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6조 1,592억 5,8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2,855억 3,800만원(4.9%)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5조 9,069억 5,300만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55억 3,1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2억 7,000만원, 보훈기금 1,335억 3,800만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1,009억 6,600만원이다.

[2023년도 예산안 국가보훈처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5,566,778	5,654,418	5,652,967	5,924,754	271,787	4.8
- 일반회계	5,549,342	5,635,188	5,633,737	5,906,953	273,216	4.8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5,303	16,990	16,990	15,531	△1,459	△8.6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133	2,240	2,240	2,270	30	1.3
기 금	234,862	220,753	220,753	234,504	13,751	6.2
- 보훈기금	140,103	125,411	125,411	133,538	8,127	6.5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94,759	95,342	95,342	100,966	5,624	5.9
합 계	5,801,640	5,875,171	5,873,720	6,159,258	285,538	4.9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국가보훈처

나. 세입·세출예산안

국가보훈처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2개 특별회계(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된다.

국가보훈처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97억 9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4억 500만원(4.4%)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5억 7,300만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6,1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7,500만원이다.

[2023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4,020	9,198	9,198	9,573	375	4.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4	61	61	61	0	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75	45	45	75	30	66.7
합 계	4,139	9,304	9,304	9,709	405	4.4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6조 174억 5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2,755억 9,000만원(4.8%)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조 9,996억 400만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55억 3,1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2억 7,000만원이다.

[2023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5,630,168	5,724,036	5,722,585	5,999,604	277,019	4.8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5,303	16,990	16,990	15,531	△1,459	△8.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133	2,240	2,240	2,270	30	1.3
합 계	5,647,604	5,743,266	5,741,815	6,017,405	275,590	4.8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국가보훈처

다. 기금운용계획안

국가보훈처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보훈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기금으로 구성된다.

국가보훈처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7,913억 900만원으로 전년 수정계획안 대비 288억 600만원(3.5%) 감소하였다. 기금별로는 보훈기금 6,525억 4,700만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1,387억 6,200만원이다.

[2023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보훈기금	432,198	682,307	682,307	652,547	△29,760	△4.4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167,035	137,808	137,808	138,762	954	0.7
합 계	599,233	820,115	820,115	791,309	△28,806	△3.5

주: 1) 기금은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국가보훈처

라. 재정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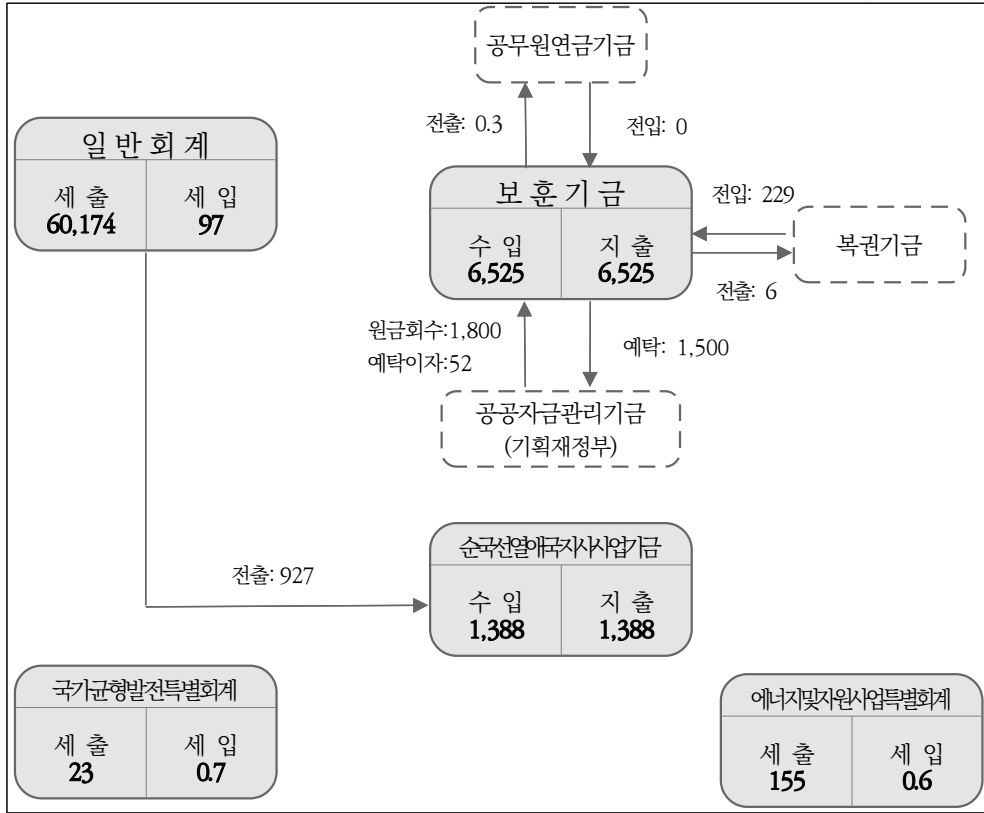
2023년도 예산안의 국가보훈처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의 경우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으로 927억원이 전출된다.

보훈기금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1,500억원을 예탁하고, 1,851억 6,000만원의 예탁원금 및 예탁이자를 상환 받으며, 복권기금으로부터 229억 1,900만원을 전입 받는 한편, 5억 7,700만원을 전출한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기금으로 3,200만원을 전출한다.

[2023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회계 · 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국가보훈처

2023년도 국가보훈처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에 대한 보상수준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보상금·수당 예산이 증액되었고(2022년 4조 5,569억원 → 2023년 4조 7,618억원), ② 위탁병원을 확대하고 감면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등 의료접근성 제고와 진료비 부담경감을 위한 예산이 확대되었으며(2022년 6,380억원 → 6,574억원), ③ 국립호국원 묘역확충, 연천현충원 및 강원권 국립묘지 조성 등 보훈예우 강화 예산이 증액되었으며(2022년 928억원 → 1,006억원) ④ 보훈컨텐츠 및 프로그램 확대 등 보훈문화 확산사업과(2021년 1,588억원 → 2022년 1,802억원) ⑤ 6·25전쟁 정전70주년 계기 사업비 등이 편성되면서 참전·제대군인 선양사업이 확대되었다. (2021년 272억원 → 2022년 490억원)

2023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친일환수재산의 매각을 통한 추가적인 수입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급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므로, 기금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자체수입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사업의 경우 2022년도 8월말까지의 월 평균 LPG 차량 지원 실적을 기준으로 동 사업의 예산 규모를 산정하는 한편, LPG 개별 소비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에 따라 지원 단가와 총 예산액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훈처의 2023년도 신규 세부사업은 없으며,

2023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위탁병원진료, 보훈정신계승발전, 유엔군참전 및 정전70주년 기념사업 등이 있다.

① 보상금은 지급단가 5.5% 인상 및 상대적 보상수준이 낮은 7급상이자 보상금을 3.5% 추가인상하였고, ② 참전명예수당은 단가 월 3만원(2022년 35만원 → 2023년 38만원) 인상하였으며, ③ 위탁병원진료 사업은 위탁병원 지정 확대, 감면 대상자 약제비 지원 확대(2022년 4/4분기→2023년 연간) 및 연령제한 폐지 등이 반영되어 예산이 증액되었다. ④ 보훈정신계승발전은 청남대 나라사랑리더십 교육문화원 건립 연차사업비 및 보훈체험활동 및 보훈콘텐츠 확대 예산이 반영 증액되었고, ⑤ 유엔군참전 및 정전70주년 기념사업은 2023년 정전70주년 계기행사 및 기념사업을 위해 증액되었다.

[국가보훈처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2 ¹⁾		2023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6개)	보상금	3,197,518	3,197,518	3,325,248	127,730	4.0
	생활조정수당	42,027	42,027	55,899	13,872	33.0
	6·25자녀수당	299,431	299,431	328,809	29,378	9.8
	고엽제수당	298,384	298,384	310,694	12,310	4.1
	참전명예수당	608,794	608,794	629,633	20,839	3.4
	위탁병원진료	252,556	252,556	267,441	14,885	5.9
	중앙보훈병원치과병원증축	2,418	2,418	11,985	9,567	395.7
	대구보훈병원주차장증축	185	185	2,515	2,330	1,259.5
	보훈정신계승발전	3,187	3,172	18,221	15,049	474.4
	국내외사적지탐방	525	525	2,059	1,534	292.2
	현충시설관리	4,170	4,170	7,170	3,000	71.9
	국립3·15묘지	400	400	2,295	1,895	473.8
	국립묘지조성	1,215	1,215	16,487	15,272	1,257.0
	제대군인사회복지지원	12,657	12,543	19,800	7,257	57.9
	국제보훈교류협력	5,972	5,733	9,438	3,705	64.6
	유엔군참전 및 정전70주년 기념사업	287	287	11,364	11,077	3,859.6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2 ¹⁾		2023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보훈기금 (3개)	보훈요양원 건립	495	495	6,839	6,344	1,281.6
	국가유공자등대부관리	3,181	3,181	4,857	1,676	52.7
	골프장시설투자	2,580	2,580	5,327	2,747	106.5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2. 2022년 본예산 대비 30%(10억원 미만 소규모 증액사업은 제외)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 사업

자료: 국가보훈처

1

보훈단체운영 및 선양활동등 사업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고려한 집행관리 철저 필요

가. 현 황

보훈단체운영 및 선양활동등 사업¹⁾은 광복회 등 16개 보훈단체 운영비와 보훈단체별 특성에 맞는 행사 진행을 위한 예산 등을 편성한 것으로,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억 2,900만원(1.9%) 증액된 336억 6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보훈단체운영 및 선양활동등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보훈단체운영 및 선양활동등	28,427	32,977	32,977	33,606	629	1.9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국가보훈처

한편,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제1항²⁾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³⁾에 따라 사업 수행부처가 소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87)

1) 코드: 일반회계 1238-315

2)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재정사업 성과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3)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2(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85조의8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이하 “재정사업자율평가”라 한다)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평가로 재정사업자율평가 또는 심층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1.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평가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평가제도이다.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2021회계연도 평가)에 따르면 자율평가 대상 단위사업 수가 10개 이상 부처는 전체 평가대상 사업에 대해 ‘사업 수’ 기준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20% 이하, 보통 65% 내외, 미흡 15% 이상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흡사업은 예산규모 기준(5% 이상)도 준수하여야 한다.⁴⁾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각 부처는 미흡사업에 대해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등급 사업 내 성과가 부진한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10% 이상 예산을 삭감하여야 한다.⁵⁾

나. 분석의견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집행부진 사유로 ‘미흡’ 등급을 받아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예산안이 오히려 증액 편성되었으므로, 동 사업의 집행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규 내역 예산의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훈단체 지원’ 단위사업은 202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집행률 제고노력’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해 미흡등급을 받았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해당 단위사업에 편성된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에서 2억 6,100만원을, ‘보훈단체운영 및 선양활동등’ 사업에서 6억 2,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지출구조조정 계획과 달리 보훈단체운영 및 선양활동 등 세부사업의 예산안을 634억 8,500만원으로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 정부안에는 2022년도 본예산 대비 6억 2,900만원 증액(1.9%)된 336억 600만원이 편성되었다.

-
2.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이나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사업
 3. 향후 지속적 재정지출 급증이 예상되어 객관적 검증을 통해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심층적인 분석·평가를 통해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4) 평가대상 사업 수가 10개 미만인 부처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5) 총지출구조조정 규모는 ‘평가대상사업 총예산의 △1%이상’이며, 미흡사업만으로 지출구조조정 목표달성이 어려운 경우 다른 평가대상 사업을 포함하여 지출구조조정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보훈단체지원 단위사업 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2022 본예산(A)	지출구조조정계획		2023예산안		
			2023 예산요구 계획(B)	구조조정 금액 (B-A)	부처 요구안	정부안(C)	증감 (C-A)
보훈단체지원	지방보훈회관 건립	2,605	2,344	△261 (△10.0)	6,105	2,344	△261 (△10.0)
	보훈단체운영 및 선양활동등	32,977	32,357	△620 (△1.9)	63,485	33,606	629 (1.9)

자료: 국가보훈처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2021년 결산 결과 집행부진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행사 축소로 인한 것이며, 기존 예산은 계획대로 감액 편성하였으나 참전·무공수훈자 장례서비스 및 상이군경복지회관 재건축 지원비용 등이 반영되어 세부사업 전체 기준으로는 증액 편성이 불가피하였다는 입장이다.

국가보훈처가 설명하는 내역별 증액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성과목표 달성 저조 및 집행부진 등을 고려하여 정부 스스로 동 세부사업의 평가 결과를 ‘미흡’으로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세부사업 단위의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오히려 예산안을 증액 편성한 것은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국가보훈처 지출구조조정 대상 사업 감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지출구조조정 사유	지출구조조정 계획	실제 감액 규모
보훈단체운영및 선양활동등	- 집행 부진 - 보훈단체 신뢰도 및 성과 미흡	△620	629 (증액)
지방보훈회관 건립	- 집행 부진	△261	△261
취업지원	- 집행 부진 - 모니터링 실시 미흡	△300	△67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	- 집행 부진	△2,300	△1,302

자료: 국가보훈처

따라서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등급으로 결정됨에 따라 지출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하였음에도 세부사업 단위 증액 편성이 있었던 만큼, 국가보훈처는 동 사업의 집행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규로 반영된 장례서비스 및 복지회관 재건축 지원 예산의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재활센터 건립을 위한 공사비 예산 규모 재검토 필요

가. 현 황

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사업¹⁾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에게 보훈병원 진료와 연계한 양질의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개 지방 보훈병원(광주·부산·대전·대구)에 전문재활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51억 4,200만원이 감액된 3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17,364	8,612	8,612	3,470	△5,142	△59.7
부산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1,1279	-	-	-	-	-
대전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5,330	3,985	3,985	-	△3,985	순감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752	4,627	4,627	3,470	△1,157	△25.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형식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당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될 계획이었으나, 사업 진행이 지연되면서 2022년 9월 기준 광주와 부산 보훈병원의 재활센터만이 완공된 상황이며, 대전보훈병원 재활센터의 공사가 2023년 1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2023년 예산안에는 아직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안이 반영되었다.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87)

1) 코드: 일반회계 2156-382

나. 분석의견

2022년 예산의 이월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안대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전체 공사비의 70%가 공사 1년차에 편성된다는 점, 완공된 다른 재활센터의 경우 공사 1년차에 전체 공사비의 70%에 달하는 대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의 공사비만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안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의 경우 당초 2022년 12월 완공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조달청의 사업비 증액 검토의견에 따라 관련 예산 조정 및 공사기간 연장 등을 논의하면서 행정기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²⁾ 이에 국가보훈처는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사업 완료 기간을 2023년 12월 까지로 연장하였으며, 2022년도에 사용하기 위한 공사비 예산 46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다.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사업 개요]

(단위: 백만원)

구분	당초	2022년도 예산	2023년도 예산안
건립 규모	연면적 5,027m ² / 지하1층, 지상4층 / 40병상		
사업 기간	2020.1. ~ 2022.12.	2021.1. ~ 2023.12.	2021.1. ~ 2024.9.
공사비 예산 편성액	-	4,627	3,470

자료: 국가보훈처

그러나 2021년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설계용역이 2022년 9월까지로 연기되면서 사업이 재차 지연되고 있으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따르면 2022년 12월말 시공사 및 감리사 선정이 예정되어 있어 관련 예산 46억 2,700만원 중 상당액이 이월될 예정이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공사기간을 2023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로 조정하고, 2022년도 공사비 예산을 제외한 잔여공사비 69억 4,000만원을 2023년도와 2024

2) 이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171억 4,100만원에서 195억원으로 증액되었다.

년도에 각각 5:5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로 인해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34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다.

[대구 보훈병원 재활센터 공사비 편성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예산	2023 예산안	2024 계획
공사비	4,627	3,470	3,470

자료: 국가보훈처

이처럼 2022년도 공사비 예산이 이월되어 2023년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잔여 공사비의 절반을 2023년도 예산안에 추가적으로 배분한 것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2022년 연내 계약 체결을 통해 선금을 지급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할 것이며, 공사 착수 초기에 공사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가 당초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시점에서 공사기간을 2022년과 2023년 2년간으로 설정하면서 1년차 공사비 예산으로 46억 2,700만원을 편성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사기간이 2023년과 2024년 2년간으로 미뤄진 상황에서 예상 이월액 외에 추가적으로 1년차 공사비 예산 34억 7,000만원을 편성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 정부안대로 예산을 반영할 경우 이월액을 포함한 1년차 공사비는 80억 9,700만원으로 전체 공사비의 70%가 되는데, 21개월간 진행될 공사의 1년차 공정률이 70%에 이를 것으로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대구 보훈병원 재활센터 공사 진행 및 공사비 집행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예산	2023 예산안	2024 계획
공사 진행 계획	시공사·감리사 선정 12월20일 예정	1월 착공 예정	9월 완공 예정
공사비 예산 편성액	4,627	3,470	3,470
공사비 예산 집행 계획(누계)	선금 지급 및 일부 이월 예상	8,097 (70.0%)	3,470 (30.0%)

자료: 국가보훈처

실제로 2019년 11월 착공한 광주재활센터의 2020년 공정률은 42.38%, 2019년 12월 착공한 부산재활센터의 2020년 공정률은 12.1%에 불과하였으며, 본격적인 공사 첫해 지급한 대금은 전체 공사비 대비 각각 39.4%, 32.4% 수준이었다.³⁾

[재활센터 연도별 공정률]

구분	공사기간	2019	2020	2021	2022.9말
광주재활센터	2019.11~2021.10.	11월 착공	42.38%	100%	-
부산재활센터	2019.12.~2021.12.	12월 착공	12.1%	100%	-
대전재활센터	2021.12.~	-	-	12월 착공	25%

주: 대전재활센터는 아직 공사가 진행 중임

자료: 국가보훈처

[재활센터 연도별 대금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공사기간	2019	2020	2021	2022.9말	계
광주재활센터	2019.11~2021.10.	1,961 (10.7%)	5,254 (28.7%)	11,088 (60.6%)	-	18,303 (100.0%)
부산재활센터	2019.12.~2021.12.	2,166 (10.8%)	4,336 (21.6%)	11,306 (56.5%)	2,218 (11.1%)	20,026 (100.0%)
대전재활센터	2021.12.~	-	-	3,109	1,225	4,334

주: 대전재활센터는 아직 공사가 진행 중임

자료: 국가보훈처

이와 같이 2022년도 착공을 전제하여 편성한 1년차 공사비의 이월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정부안대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이월액을 포함하면 2년간 진행될 공사비의 70%가 1년차에 배분된다는 점, 이미 완공된 다른 재활센터의 경우 공사 1년차에 전체 공사비의 70%에 달하는 대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수준의 공사비 예산만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안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3) 다만, 국가보훈처는 2022년 9월말 기준 25%인 대전재활센터의 연말 공정률을 83%로 예상하고 있다.

가. 현 황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순애기금”이라 한다)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돕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¹⁾ 동 기금은 독립유공자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5년 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환수된 재산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있다.²⁾

2023년 동 기금의 수입 및 지출 계획액은 1,387억 6,200만원이며, 주요 수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926억 5,100만원을 차지하고 있고, 주요 지출액은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 사업에 970억 6,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87)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돕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일청구권(對日請求權) 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元貨資金)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이 호에서 “친일재산”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것 또는 친일재산을 대체하는 유형·무형의 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것
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재산
4. 정부의 출연금
5. 다른 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③ 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장기 차입할 수 있다.

제3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2.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 발굴 사업
3.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교육·연구 및 이에 부수(附隨)된 사업
4. 기금 조성 경비 및 기금 운용상 필요한 부수 경비
5. 그 밖에 심의회에서 독립유공자의 공훈 선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국가귀속재산의 사용) 이 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재산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023년도 순애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수입 총계	167,035	137,808	137,808	138,762	954	0.7
일반회계 전입금	80,826	88,848	88,848	92,651	3,803	4.3
자체수입	11,239	7,587	7,587	7,818	231	3.0
여유자금 회수	74,970	41,373	41,373	38,293	△3,080	△7.4
지출 총계	167,035	137,808	137,808	138,762	954	0.7
독립유공자및유족지원	91,551	92,083	92,083	97,065	4,982	5.4
독립운동관련문헌발간	276	281	281	281	-	-
독립유공자묘소관리	432	385	385	425	40	10.4
광복회관관리	2,407	2,493	2,493	3,097	604	24.2
기금운영비	93	100	100	98	△2	△2.0
여유자금운영	72,276	42,466	42,466	37,796	△4,670	△11.0

주: 1)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국가보훈처

한편, 국가보훈처는 2018년부터 동 기금을 통해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사업³⁾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에 따라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⁴⁾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40억 2,900만원이 증액된 918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다.

3) 독립유공자및유족지원(3141-401)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중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기준 중위소득 등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지급 신청절차 및 지원금 수급권 확인·심사를 위한 국가보훈처장의 권한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3년도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독립유공자 및 유족지원	91,551	92,083	92,083	97,065	4,982	5.4
손자녀 생활지원금	87,764	87,849	87,849	91,878	4,029	4.6

주: 1)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국가보훈처

나. 분석의견

순애기금 주요사업인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아 그대로 지출하는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동 기금의 지원 수요 증가에 따른 일반회계 의존도가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보훈처는 기금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자체수입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 기금의 주요 수입 중 일반회계 전입금과 여유자금을 제외한 자체수입은 친 일귀속재산의 매각대금 또는 토지 및 건물대여료 등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자체수입액 평균은 72억 8,200만원으로 기금 총 수입 평균인 1,614억 7,800만원의 4.5%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금액이 2018년 546억 8,600만원에서 2023년 926억 5,100만원으로 급증(69.4% 증가)하였다.

[순애기금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2023
일반회계 전입금(A)	54,686	76,203	76,689	80,826	88,848	75,450	92,651
자체수입(B)	5,282	4,589	7,712	11,239	7,587	7,282	7,818
여유자금 회수	83,053	116,843	77,492	74,970	41,373	78,746	38,293
기금 총 수입(C)	143,021	197,635	161,893	167,035	137,808	161,478	138,762
전입금 비중(A/C)	38.2	38.6	47.4	48.4	64.5	46.7	66.8
자체수입 비중(B/C)	3.7	2.3	4.8	6.7	5.5	4.5	5.6

주: 1 2018~2021년은 결산 기준이며, 2022년과 2023년은 계획 기준임

자료: 국가보훈처

한편, 순애기금 수입으로 계상되는 친일 환수 재산 중 경제적 가치가 높은 재산은 이미 매각이 완료되었고, 향후 매각 예정인 재산은 개발 활용도가 낮아 매각을 통한 자체수입 증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21년 57억원으로 소폭 증가하긴 하였으나 친일귀속재산 토지매각에 따른 수납액은 과거에 비해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⁵⁾ 매각 가능한 잔여 귀속재산의 공시가격은 227억원에 불과하여 자체수입 확보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매각 가능한 잔여 귀속재산 현황]

(단위: 천m², 억원)

구분	전답	대지	임야	잡종지 등	합계
필지	155	15	136	23	329
면적	280	3	3,499	60	3,842
공시가	41	1	178	7	227

자료: 국가보훈처

그에 반해 국가보훈처가 2018년부터 동 기금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사업의 계획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일반회계 전입금과 유사한 규모로 편성되고 있다. 동 기금은 여유자금을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을 중단하였다가 2018년부터 다시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자체수입 확대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아 그대로 사업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 지급액 역시 국가보훈처의 계획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동 기금의 일반회계 의존도는 심화될 우려가 있다.

5) 연도별 친일귀속재산 토지 매각 실적

(단위: 억원)

구분	'08~'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필지	289	174	52	30	77	31	20	12	20	5
매각액	228	142	18	91	56	86	12	4	61	7
수납액	198	145	38	31	91	88	24	17	15	57

자료: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지급 계획 및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지급계획		지급실적	
	지급인원	지급액	지급인원	지급액
2018	150,156	52,581	163,583	72,255
2019	213,528	74,281	217,935	77,399
2020	218,976	75,302	229,202	82,031
2021	225,192	79,534	239,907	87,876
2022.8.	243,036	87,849	161,829	76,014

주: 지급인원은 누계치임

자료: 국가보훈처

이처럼 손자녀 생활지원금이 사실상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는 재원을 그대로 지출하는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기금 지출 소요는 증가함에 따라 일반회계 의존도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는 보다 안정적인 기금 사업 수행을 위한 자체수입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⁶⁾

6) 참고로 조달청이 국유재산 관련 법령 및 「귀속재산처리법」 등에 근거하여 일본인 명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처리하고 있으나, 국가보훈처는 해당 재산을 순애기금 수입으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원 실적 및 세율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고려한 예산안 규모 재검토 필요

가. 현 황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사업¹⁾은 신체장애가 있는 상이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보철용 LPG 차량에 대한 LPG 연료의 개별소비세 인상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4억 5,900만원이 감액된 147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15,303	16,174	16,174	14,715	△1,459	△9.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2001년 7월 석유가격구조개편으로 LPG 개별소비세가 인상됨에 따라 LPG를 연료로 하는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상이자들의 세금인상분을 지원하고자 동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09년 9월부터는 월 300리터를 한도로 리터당 220원의 지원 단가를 반영하여 국고보조금의 형태로 교부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2023년의 경우 월 평균 42,603대의 차량에 대하여 연간 LPG 충전량이 1,570리터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여 동 사업의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14,715백만원

= 월평균 차량대수(42,603대) × LPG 충전량(1,570L) × 리터당 지원 단가(220원)

자료: 국가보훈처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87)

1) 코드: 일반회계 2158-380

나. 분석의견

국가보훈처는 2022년 예산 편성 당시 계획한 월 평균 LPG 차량 지원 대수에 연평균 증감률을 반영하여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는데, 매년 지원 실적이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2022년도 8월말까지의 월 평균 LPG 차량 지원 실적을 기준으로 동 사업의 예산 규모를 산정하는 한편, LPG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에 따라 지원 단가와 총 예산액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2021년의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월 평균 47,710대의 보철용 LPG 차량에 대하여 연간 1,702리터의 충전량을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45,821대에 대하여 연간 1,559리터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25억 5,7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20억원 내외의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2년의 경우에도 월 평균 45,130대의 차량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였으나 8월 말 기준 월 평균 지원 대수는 43,401대로 계획 대비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161억 7,400만원 중 67억 9,200만원이 집행된 상황이다.

[LPG 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8월)	2023
예산편성액	22,968	27,715	20,831	19,789 ¹⁾	17,860	16,174	14,715
실제 집행액	22,943	21,054	18,725	17,085	15,303	6,792	-
이·전용 등	-	-	-	-	-	-	-
이월액	-	-	-	-	-	-	-
불용액	25	661	2,106	1,704	2,557	5,306	-

주: 1) 추경을 통해 1,000백만원이 감액되었음

자료: 국가보훈처

[LPG 차량 편성 대수 및 지원 대수(월 평균)]

(단위: 대)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8월)
편성 대수	57,080	53,849	51,855	49,972	47,710	45,130
지원 대수	57,732	55,248	51,819	48,759	45,821	43,401

자료: 국가보훈처

한편, 2021년 시행된 LPG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서 지원 단가가 하락한 것도 불용액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동 사업의 지원 단가는 2001년 7월 석유가격구조개편 이전의 세금(40원)에 비하여 리터당 세금인상분으로 결정되는데,²⁾ 세율 인하 조치 시행 및 연장 등으로 지원 단가 역시 낮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2022년도 예산의 불용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가보훈처는 연도 말 불용액이 53억 6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PG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에 따른 지원 단가 조정 내역]

기간	LPG 개별소비세(kg당)	지원 단가(리터당)
~ 2021.11.12.	275원	220원
2021.11.12. ~ 2022.4.30.	220원	180원
2022.5.1. ~ 2022.6.30.	193원	160원
2022.7.1. ~ 2022.12.31.	176.4원	150원

주: LPG kg당 개별소비세에서 40원을 차감한 후 리터 단위로 환산하여 지원 단가 적용
자료: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의 2022년도 연도 말 집행 전망]

구분	편성	집행 (8월)	집행 전망				불용 예상액
			9월	10월	11월	12월	
예산(백만원)	16,174	6,792	864	864	864	1,484	5,306
월 평균 지원대수(대)	45,130	43,401	43,300	43,300	43,300	43,000	-
총전량(리터)	1,629	1,010	133	133	133	230	-

자료: 국가보훈처

이러한 가운데 국가보훈처는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월 평균 지원 차량대수를 산정함에 있어 2022년 예산 편성 물량에 최근 5년간 평균 증감률을 적용하여 42,603대로 산출하였는데, 매년 실제 지원 물량이 예산 편성 물량에 미치지

2)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제4조(LPG 세금인상분 지원) ② LPG 세금인상분 지원 금액은 상이자가 LPG를 구입하는 경우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2001년 7월 1일 이전과 비교하여 인상된 금액으로 한다.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실제로 2022년 8월말까지의 월 평균 지원 대수인 43,401대를 기준으로 평균 감소율을 적용하면 2023년의 경우 40,970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³⁾⁴⁾

따라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2022년도 예산 편성 시 예측치가 아닌 실제 지원 실적을 바탕으로 2023년 예상 지원 대수를 산정하여 동 사업의 적정 예산 규모를 재검토하는 한편, LPG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에 따라 지원 단가와 총 예산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동 사업은 연간 지원 물량이 아닌 월 평균 지원 물량을 바탕으로 예산액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8월말까지의 월 평균 실적을 바탕으로 지원 물량을 산정하는 것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4) 이 경우 약 5억 6,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1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4,216억 9,600만원으로 전년 추경 예산 대비 302억 6,300만원(7.7%) 증가하였다.

[2023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790,844	391,433	391,433	421,696	30,263	7.7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1,579억 3,500만원으로 전년 추경 예산 대비 9억 1,000만원(0.6%) 증가하였다.

[2023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41,683	157,526	157,025	157,935	910	0.6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2023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을 위한 경쟁영향평가 역량 강화 예산을 5억 200만원 편성하였고, ② 객관적으로 투명한 디지털 증거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7억 7,300만원), ③ 중·소상공인의 협상력 및 사업기반 강화를 위하여 대기업 하도급대금 공시제도를 운영(1억원)하고,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설립(3억 3,000만원)하였으며, ④ 위해제품으로부터의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위해제품 감시체계 구축하기 위한 예산(5,600만원) 등을 편성하였다.

2023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할 계획인 ‘위해제품 감시 및 시정’ 사업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기존 업무와 연관성이 있으므로, 한국소비자원이 수행하는 방향의 사업 방식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비자상담센터’ 위탁수당의 경우 상담실적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소요 예산이 다소 높게 선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2022년 하반기 상담 실적을 바탕으로 소요 예산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23년도 신규사업은 없으며,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규제개선 및 경제분석,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 사업이 있다.

① 경쟁제한적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쟁영향평가 역량강화사업을 편성하였고, ② 디지털증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2 ¹⁾		2023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개)	규제개선 및 경제분석	578	578	1,016	438	75.8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	769	769	1,366	597	77.6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1

위해제품 감시 및 시정 업무 민간위탁 필요성 재검토 필요

가. 현 황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사업¹⁾은 소비자의 날 행사 개최, 소비자정책 종합세미나, 소비자중심경영(CCM) 활성화 등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4,500만원이 증액된 11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선진소비자정책 추진	850	1,126	1,126	1,171	45	4.0
소비자 위해제품 감시 및 시정	-	-	-	56	56	순증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위해제품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 및 판매차단, 리콜명령 요청 등을 통한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소비자 위해제품 감시 및 시정’ 내역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동 내역사업은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안에는 모니터링을 전담할 민간단체 책임연구원 1인과 보조원 3인에 대한 인건비 등의 예산이 반영되었다.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87)

1) 코드: 일반회계 1431-600

나. 분석의견

공정거래위원회는 위해제품 모니터링 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신규 사업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한국소비자원의 신규 사업 및 기존 업무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방식 대신 한국소비자원이 수행하는 방향으로 사업 방식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온라인상의 위해제품 관련 정보 모니터링을 전담할 4명의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의 온라인플랫폼 이용이 확대되면서 위해제품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 자체 인력만으로는 위해제품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민간위탁을 통한 사업 추진을 계획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은 2023년 신규 사업으로 '위해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예산(3억원)을 편성하였는데,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한 위해정보 분석 역량 제고 및 AI 모니터링 기술 개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규 내역사업과 궁극적인 목적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소비자원 위해제품 정보 관련 신규 사업 비교]

구분	소비자 위해제품 감시 및 시정	위해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시행 주체	민간단체 위탁(4인 전담인력)	한국소비자원
사업 목적	위해정보 분석 및 차단을 통한 소비자 안전 확보	
사업 내용	위해제품 정보 모니터링 및 후속조치	위해정보 수집·분석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AI 모니터링 기술 개발
예산액	5,600만원	3억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은 사업 목적의 연관성 측면을 고려할 때 위해제품 정보 모니터링 업무를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대신, 위해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존에도 위해정보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소비자원이 두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모니터링 업무를 통해 확보한 위해제품 정보

를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환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의 신규 사업은 위해정보 전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규 내역사업은 위해제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것으로 세부적인 업무 내용 자체에 중복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민간위탁 방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추진 계획에 따르면 민간단체의 역할은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제품 관련 정보를 발견하는 것에 한정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민간단체는 위해제품 정보를 발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고, 해당 업체 등에 대한 리콜명령 요청, 제도개선 권고, 사건처리 등의 후속절차는 어차피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해야 하는데, 단순히 모니터링을 전담할 4명의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을 민간단체에 위탁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신규로 편성한 ‘위해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과 별개로, 한국소비자원 내 위해정보국은 ‘위해정보 모니터링 체계 구축’, ‘위해정보 확인 및 시정권고 관련 업무’, ‘위해요소 상시 감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한국소비자원 내 해당 부서의 인력을 활용하여 위해제품 정보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이 전문성 측면에서도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위해정보 관련 업무]

- 위해정보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위해정보의 수집 · 평가 · 처리
- 위해정보 확인 및 시정권고 관련 업무
- 위해요소 상시 감시

자료: 한국소비자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사업인 ‘소비자 위해제품 감시 및 시정’ 업무를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대신 위해정보 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한국소비자원이 수행하도록 사업방식 개편을 검토하는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신규로 편성한 ‘위해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상담실적 감소 추세를 고려한 상담위탁 수당 추가 감액 필요

가. 현 황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사업¹⁾은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제공하는 소비자상담서비스를 지역과 관계없이 1372 전화번호를 통해 연결하고 상담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8억 2,900만원이 감액된 38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4,407	4,717	4,567	3,888	△679	△14.9
소비자단체 상담위탁	2,328	2,739	2,589	2,564	△25	△1.0
유지보수 및 운영위탁	1,094	1,144	1,144	1,144	-	-
공공요금	171	180	180	180	-	-
노후전산장비 교체	591	404	404	-	△404	순감
성과관리 및 상담원 보호	223	250	250	-	△250	순감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2010년부터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가 1372 번호로 전화를 하면 음성안내시스템을 통해 상담영역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상담 건을 인근지역 상담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87)

1) 코드: 일반회계 1451-620

소비자상담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소비자원, 그리고 2021년 기준 10개의 소비자단체²⁾가 제공하고 있다. 동 사업에는 소비자단체가 수행하는 상담건에 대한 위탁수당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³⁾가 월별 상담건수를 취합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수당으로 지급한다.

나. 분석의견

최근 상담실적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상담위탁 수당이 여전히 높게 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2022년도 하반기 상담실적과 최근연도 상담건수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에 편성된 소비자단체 위탁수당 예산은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4억 8,600만원과 6억 6,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2022년의 경우 8월말 기준 당초 예산액 27억 3,900만원 중 11억 6,300만원이 집행(집행률 42.5%)되었다.

[최근 5년간 소비자단체 위탁수당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8말
예산액	1,974	2,401	2,928	2,923	3,189	2,739
예산현액	1,974	2,612	2,960	2,923	2,989	2,589
집행액	1,974	2,612	2,960	2,437	2,328	1,163
집행잔액	-	-	-	486	661	1,426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이처럼 2020년 이후 집행실적이 하락하고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상담건수 예측이 부정확하였기 때문이다. 동 사업을 통해 제공하는 상담은 ‘일반상담’과 ‘피해구제’로 구분되는데, 일반상담 분야에서 상담건수의 예측오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담건수를 2020년 43만 건으로 예측하였으나

2)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3)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직접 상담을 제공하지는 않고, 소비자단체 상담위탁을 위한 계약, 상담실적 취합 및 위탁수당 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실제 상담건수는 전년대비 대폭 감소하여 30만 5,830건에 불과하였고, 2021년 45만 건으로 확대될 것을 예측하였으나 실제 상담건수는 29만 440건으로 감소하였으며, 2022년의 경우 35만 건을 예측하였으나 8월말 기준 실제 상담은 14만 9,800건 이루어진 상황이다.

[연도별 예측 상담건수 및 실제 상담건수]

(단위: 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일반상담	예측	419,111	430,000	450,000	350,000 (330,000)	320,000
	실적	401,117	305,830	290,440	149,800	-
피해처리	예측	99,125	98,000	120,000	120,000 (112,500)	115,000
	실적	116,550	107,061	102,085	63,578	-

주: 1. 2022년 실적은 8월말 기준
 2. 괄호 안의 수치는 추정 금액에 따라 수정한 건수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대외활동 감소와 소비자들의 정보취득 방식의 다양화 등에 따라 상담 실적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3년도 예산안에는 예측 상담건수를 일반상담의 경우 32만 건, 피해처리의 경우 11만 5천 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3만 건, 5천 건 적게 반영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8월말 기준 상담건수를 바탕으로 일반상담 분야의 2022년도 말 상담건수를 추산하면 약 22만 4,700건 정도의 상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2022년도 예산 역시 불용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최근 상담 실적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2023년도 일반상담 분야 예측 건수인 32만 건 역시 다소 높은 측면이 있다.

[2022년 예상 실적 및 2023년 상담 계획 건수]

(단위: 건)

구분	2022년 계획	2022년 예상 실적	2023년 계획
일반상담	350,000	224,700	320,000
피해구제	120,000	95,367	115,000

주: 2022년 예상 실적은 8월말 기준 실적을 바탕으로 추산한 것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2022년도 하반기 상담 실적과 연도별 상담 건수 감소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사업에 편성된 상담위탁수당 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규제개선 및 경제분석 사업¹⁾은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4억 3,800만원이 증액된 10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규제개선 및 경제분석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규제개선 및 경제분석	209	578	578	1,016	438	75.8
경쟁영향평가 역량강화	-	-	-	502	502	순증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제6호²⁾에 따라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경쟁 제한적 요소 포함 여부를 분석하는 ‘경쟁영향평가’를 1998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경쟁영향평가는 소관부처가 국무조정실에 규제심사를 요청하면 국무조정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영향평가를 의뢰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안전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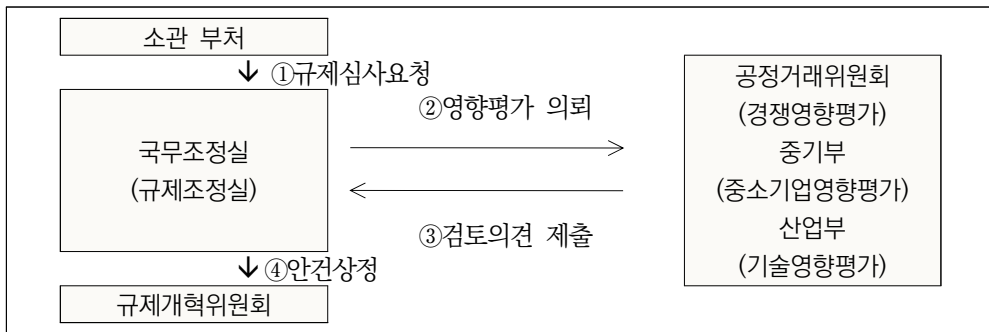
1) 코드: 일반회계 1261-340

2)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규제영향평가 시행 절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한편, ‘시장진입과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혁신’이 새정부 국정과제로 포함 되는 등 규제개선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정책기조에 대응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 및 상시 모니터링 업무를 전문 연구기관이 수행하도록 ‘경쟁영향평가 역량강화’ 내역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포함한 연구용역비 예산안을 반영하였다.

[경쟁영향평가 역량강화 내역사업 예산안 내역]

- 연구용역비(260목) - 일반연구비(260-01): 502,000천원
 - 인건비: 300,773천원 = 책임연구원 (3명) + 연구원(1명)
 - 설문조사비: 140,000천원 = 35,000원 × 4건
 - 자료 인쇄 및 전문가 인터뷰 등 경비: 38,000천원
 - 일반관리비 등: 23,939천원 - 단수조정(712천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나. 분석의견

첫째, 경쟁영향평가 대상 규제 건수에 비해 의견제시 실적이 저조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영향평가 용역을 신규로 추진함에 있어 전문성 있는 기관을 선정하는 등 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조정실로부터 영향평가를 의뢰받은 규제에 대하여 시장 진입 제한 및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제약 여부 등을 평가하고, 해당 규제에 대한 수정, 현행 유지 등의 검토의견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경쟁영향평가 실적을 살펴보면, 검토건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평가 결과 의견을 제시하는 비율은 전체 검토건수 5,705건 중 111건으로 1.9%에 불과한 상황이다.

[경쟁영향평가 검토 및 의견제시 실적]

(단위: 건,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검토건수(A)	571	197	360	647	1,171	1,569	1,190	5,705
의견제시(B)	16	6	17	25	12	21	14	111
비율(B/A)	2.8	3.1	4.7	3.9	1.0	1.3	1.2	1.9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이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제시 실적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영향평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수행하고 있는 기술영향평가 등 유사한 목적의 규제영향평가 의견제시 실적에 비해서도 크게 저조한 수준이다.

[최근 3년간 부처별 규제영향평가 실적]

(단위: 건, %)

연도	구분	경쟁영향평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영향평가 (중기부)	기술영향평가 (산업부)
2019	검토건수	1,171	1,043	287
	의견제시건수	12	31	43
	(의견제시율)	(1.0%)	(3.0%)	(15.0%)
2020	검토건수	1,569	1,552	382
	의견제시건수	21	86	79
	(의견제시율)	(1.3%)	(5.5%)	(20.7%)
2021	검토건수	1,190	1,185	187
	의견제시건수	14	32	66
	(의견제시율)	(1.2%)	(2.7%)	(35.3%)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는 택지개발 시행사 이윤율 상한을 정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³⁾에 대한 경쟁영향평가 의뢰가 있었으나, 해당 개정안은 사업자의 이윤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규제임에도 심층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예산 부족과 시간적 제약(최대 40일 내 의견제출) 등에 따라 전문적 분석을 통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견제시 실적제고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으나, 다른 규제영향평가 수행 부처들이 별도의 조직·인력·예산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반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시조직을 활용하여 평가를 수행하면서 실적이 저조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이 분석 대상 규제 건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검토의견 제시 실적 저조 현상이 지속되거나, 특히 시장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규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경쟁영향평가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전담인력 확보 등을 위해 용역 방식으로 사업을 개편하더라도 수행기관의 전문성이 담보되지 못할 경우 평가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3)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의3(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공공시행자 외의 출자자(이하 “민간참여자”라 한다)와 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은 총사업비 중 공공시행자의 부담분을 제외한 비용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2. 6. 21.]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영향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동 내역사업이 신설되는 만큼 전문성 있는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용역을 위한 사전절차 소요 기간, 업무 개시 예상 시기 등을 고려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수준의 인건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설된 경쟁영향평가 역량강화 내역사업의 예산안에는 연구원 4인에 대한 12개월치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다.

[경쟁영향평가 역량강화 내역사업 인건비 내역]

◦ 인건비: 300,773천원
= {책임연구원(6,654천원) 3명 + 연구원(5,102천원) 1명} × 12개월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5월 수립한 「경쟁영향평가 역량강화 방안」에 따르면, 2023년 2월 중에 전문연구기관 선정 등을 통한 경쟁영향평가 인력(연구원)을 확보하고, 2023년 3월 경쟁영향평가체계 구축을 완료하여 운영을 개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연구원의 실제 업무 수행은 3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므로 인건비 일부에 대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쟁영향평가 역량강화 향후 추진일정]

기간	추진계획
2022.12.	2023년도 예산안 국회 확정
2023.2.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한 경쟁영향평가 인력(연구원) 확보
2023.3.	경쟁영향평가체계 구축 완료 및 운영

자료: 「경쟁영향평가 역량강화 방안」 2022.5., 공정거래위원회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중 동 사업의 추진단 구성을 완료하는 등

2023년 1월부터 본격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앞당기고 있으며, 예산이 확정되면 연구용역을 위한 사전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예산이 확정된 이후 사업공고, 대상기관 선정, 계약조건 및 과업범위 조율 등의 사전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연내 모든 준비를 완료하여 2023년 1월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전절차 소요 기간, 업무 개시 예상 시기 및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이 ‘연구용역비를 활용한 계약직 연구원은 연구·조사 등 사업목적과 사업기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채용’하도록 명시⁴⁾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수준의 인건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4)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p.228

가. 현 황

데이터포털 구축 및 운영 사업¹⁾은 공정거래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수요자 맞춤형 통계 정보를 생산 및 제공하고, 불공정거래행위 분석 등 데이터기반 사건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7억 3,900만원이 증액된 52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데이터포털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데이터포털 구축 및 운영	4,000	4,516	4,516	5,255	739	16.4
데이터포털 구축	2,430	4,000	4,000	3,849	△151	△3.8
데이터포털 운영	-	516	516	1,406	890	172.5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3월 데이터포털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를 수립하였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120억원을 투입하여 3단계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2023년도 예산안에는 3단계 구축 사업비 38억 4,900만원과 2022년 5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데이터포털 운영을 위한 관리용역비와 데이터 사용료 등이 반영되었다.

[데이터포털 구축 및 운영 사업 개요]

단계	시기	추진목표	추진내용
1단계	2021 년	·데이터 통합 및 인프라 구축 ·통합데이터 서비스	·내·외부 데이터 연계·통합 및 서버 등 인프라 구축 ·통합데이터 서비스 구축 ·온라인 민원신고·접수 채널 통합 ·민원 신고·처리 관련 AI 학습데이터 구축 ·법령분야 자연어 질의응답 서비스
2단계	2022 년	·통합데이터 서비스 확대 ·지능형 응용서비스	·통합데이터 서비스 확대 ·사건처리 관련 AI 학습데이터 구축 ·민원 신고 및 처리 지원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 시범서비스
3단계	2023 년	·지능형 응용서비스 고도화 ·빅데이터분석 서비스	·사건 관련 자료 빅데이터 분석 등 서비스 확대 ·단순·반복 업무의 자동화 등 사건처리 효율화 지원 서비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23년도 데이터포털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데이터포털 구축 - 일반연구비: 3,664,000천원 (시스템 구축비) - 자산취득비: 185,000천원 (H/W, S/W 구입비) ◦ 데이터포털 운영 - 공공요금및제세: 129,000천원 (데이터 사용료) - 관리용역비: 1,277,000천원 (시스템 운영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나. 분석의견

단계별 사업의 연례적 지연에 따른 이월액 발생이 반복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정부는 2023년 3단계 사업을 위해 편성한 예산의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동 사업의 총 과업기간을 29개월로 산정하면서 2021년 8월 17일부터 1단계 150일, 2단계 365일, 3단계 355일 간 단계별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2021년 1단계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업이 지연되면서 사업기간이 73일 연장되어 1단계 사업은 2022년 3월 28일에 종료되었다. 이에 따라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 완료 이후인 2022년 3월 29일에 시작되었으며, 2023년 3월 28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데이터포털 구축 및 운영 사업 단계별 종료 및 대금지급 시기]

구분	사업종료일	선금지급일	잔금지급일
1단계	2022.3.28.	2021.9.30.	2022.4.7.
2단계	2023.3.28.	2022.7.15.	2023.3.28. 이후
3단계	2024.3.17.	2023.3.29. 이후	2024.3.17. 이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이처럼 연례적으로 사업 종료 시점이 연기됨에 따라 대금 지급 시기가 미뤄지면서 당초 2021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1단계 사업비 40억원 중 15억 6,900만원이 2022년으로 이월되었고, 2022년 예산으로 편성된 2단계 사업비 역시 40억원 중 17억 2,700만원이 2023년으로 이월될 예정이다.²⁾

이와 같이 대금 지급 시기가 지연되면서 연례적인 이월액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3단계 사업비 전액에 해당하는 38억 4,900만원을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는데, 2단계 사업 종료 이후 2023년 3월 29일부터 2024년 3월 17일까지 3단계 사업이 수행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2) 당초 계획 수립 당시 1단계 사업 종료 예정 시점은 2022년 1월 14일로, 사업 지연이 없었더라도 잔금 이월은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도 예산안 38억 4,900만원 중 10억 9,500만원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데이터포털 구축 사업 연도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21	4,000	4,000	2,430	1,569	1
2022	4,000	5,569	3,842	1,727	-
2023	3,849	5,576	4,481	1,095	-

주: 예산현액 및 집행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금액임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명시한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고려할 때, 이월 발생이 분명하게 예상되는 사업비까지 모두 포함하여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재정운용으로 보기 어렵다.³⁾ 다만, 이월 예상액을 감액할 경우 계약조건 변경, 과업 범위 축소 등이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부는 2023년 3단계 사업을 위해 편성한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

1

현황

가. 총수입·총지출

금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의 총수입 및 총지출은 일반회계와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구성된다.

금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2조 6,907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95억원(0.7%) 감소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723억원, 공적자금상환기금 2조 6,184억원이다.

[2023년도 예산안 금융위원회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258,122	281,749	281,749	72,325	△209,424	△74.3
- 일반회계	258,122	281,749	281,749	72,325	△209,424	△74.3
기 금	1,258,233	2,428,437	2,428,437	2,618,351	189,914	7.8
- 공적자금상환기금	1,258,233	2,428,437	2,428,437	2,618,351	189,914	7.8
합 계	1,516,355	2,710,186	2,710,186	2,690,676	△19,510	△0.7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1조 5,239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328억원(2.1%) 감소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1조 5,238억원, 공적자금상환기금 0.8억원이다.

[2023년도 예산안 금융위원회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1,099,382	800,006	1,556,542	1,523,806	△32,736	△2.1
- 일반회계	1,099,382	800,006	1,556,542	1,523,806	△32,736	△2.1
기 금	8,642	175	175	80	△95	△54.3
- 공적자금상환기금	8,642	175	175	80	△95	△54.3
합 계	1,108,024	800,181	1,556,717	1,523,886	△32,831	△2.1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금융위원회

나. 세입·세출예산안

금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금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723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2,094억원(74.3%) 감소하였다.

[2023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58,122	281,749	281,749	72,325	△209,424	△74.3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3조 6,838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4,727억원(11.4%) 감소하였다.

[2023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699,382	3,400,006	4,156,542	3,683,806	△472,736	△11.4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다. 기금운용계획안

금융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공적자금상환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 구성된다.

금융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33조 9,695억원으로 전년 수정 계획안 대비 6조 1,788억원(22.2%) 증가하였다. 기금별로는 공적자금상환기금 11조 193억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542억원, 신용보증기금 12조 2,450억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조 2,957억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4조 8,924억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3조 4,630억원이다.

[2023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 공적자금상환기금	7,098,411	5,137,034	5,137,034	11,019,312	5,882,278	114.5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68,240	55,717	55,717	54,153	△1,564	△2.8
- 신용보증기금	10,401,302	12,088,103	12,988,103	12,245,030	△743,073	△5.7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147,378	2,202,913	2,202,913	2,295,675	92,762	4.2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4,024,061	4,210,023	4,210,023	4,892,360	682,337	16.2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3,874,184	3,197,000	3,197,000	3,463,019	266,019	8.3
합 계	27,613,576	26,890,790	27,790,790	33,969,549	6,178,759	22.2

주: 1)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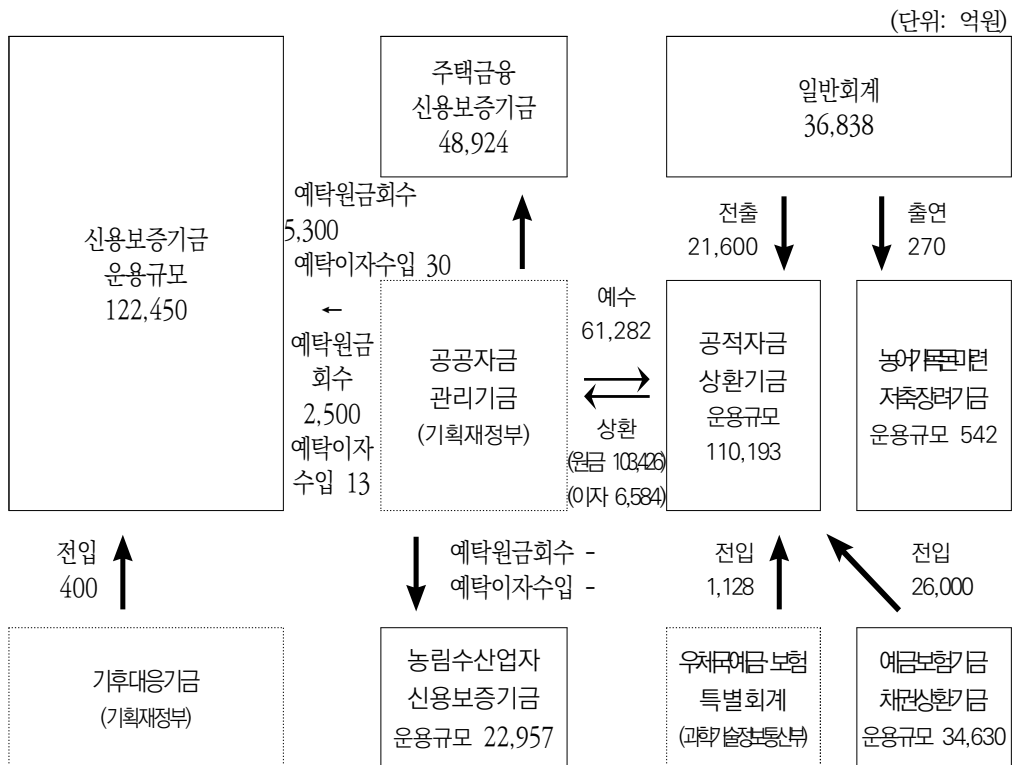
1. 총계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라. 재정구조

2023년도 예산안의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의 경우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2조 1,600억원을 전출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으로 270억원을 출연한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10조 3,426억원의 예수금을 상환하며,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2조 6,000억원을 전출한다. 신용보증기금은 기후대응기금으로부터 400억원을 전입받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2,500억원을 상환받는다. 또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원금 5,300억원을 회수한다.



2023년도 금융위원회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서민금융지원 비중이 높아졌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한 예산을 2022년 제2회 추경을 포함하여 1.38조원(현물출자 5,000억원 포함) 편성하였으며, ②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2022년에 이어 청년희망적금을 운용하고, 추가로 청년도약계좌를 신규 출시할 예정이다.

1,000억원 이상 5개 세부사업(인건비 및 기본경비 제외) 중 2개 사업은 서민 및 가계대출 관련 사업, 2개 사업은 청년 자산형성 관련 사업, 1개 사업은 혁신성장 지원 관련 사업으로 편성되었다.

2023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청년도약계좌는 다른 청년자산형성 상품과 달리 청년지원 정책과의 연계성이 낮아 예산투입의 효과성이 저조할 우려가 있고 세대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중장기 재정투입사업이라는 점에서 총 재정투입규모 및 사업기간·대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국회 심사과정에서 청년도약계좌 도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조속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저축장려금의 지급이 실제 2024년 2~3월에 이루어진다는 점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정부 예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고려하여 2023년 지원 예산 3,600억원 중 특별중도해지 지급 금액 등을 제외한 일부 금액을 2024년으로 이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최대 3년 재연장됨에 따라 초기 채무조정 실적이 저조하고 수요가 분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 수요를 감안하여 총 채무조정 수요 및 캠프의 부채비율 등을 재산정하고 그에 따라 출자규모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와 관련하여 2022년 9월말 기준 혁신성장펀드의 투자대상·투자규모 등 운영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으며, 혁신성장펀드의 투자대상·분야가 중복될 것으로 보이는 기존 정책펀드의 투자여력 및 신규 정책펀드 조성 등을 감안하여 출자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의 2023년도 신규사업은 총 3개 사업, 5,769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은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이며, ‘소송수행비용’은 금융위원회를 당사자로 하는 각종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용보증기금의 ‘대환보증 대위변제’ 사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대환보증)을 도입하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금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2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352,772
	소송수행비용	425
신용보증기금 (1개)	대환보증 대위변제	223,731
합 계		576,928

자료: 금융위원회

2023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희망적금), 금융 소비자 보호, 자본시장조사단 운영(정보화),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 내 보증료환급 등이 있다.

①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희망적금) 사업은 당초 계획과 달리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모두 가입을 허용함에 따라 2024년 저축장려금 지급예상액의 50%를 2023년에 출연하기 위해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② 금융소비자 보호 사업은 2030 청년자문단 설치·운영을 위한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다.

③ 자본시장조사단 운영(정보화) 사업은 자본시장조사단 특별사법경찰을 위한 별도 포렌식 장비 및 조사실 마련을 위한 자신회득비 등이 편성되어 예산이 증액되었다.

④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내 보증료환급 사업은 3년 이내 보증 중도해지 시 초기보증료 환급이 2023년부터 추진될 예정임을 감안하여 기금 운용계획액이 증가하였다.

[금융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2 ¹⁾		2023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8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청년희망적금)	47,550	47,550	360,168	312,618	657.4
	금융소비자 보호	39	39	101	62	159.0
	금융위정보시스템 운영 (정보화)	870	870	1,858	988	113.6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정보화)	1,660	1,660	1,744	84	5.1
	자본시장조사단 운영 (정보화)	238	238	574	336	141.2
	금융위 대표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 보수(정보화)	114	114	117	3	2.6
	금융정책 알리기	837	790	879	89	11.3
	금융의 날 행사	72	72	80	8	11.1
신용보증 기금 (4개)	일반보증대위변제	2,244,443	2,244,443	2,350,922	106,479	4.7
	유동화회사보증대위변제	181,211	181,211	328,007	146,796	81.0
	경영지도	15,920	15,920	16,082	162	1.0
	프론트원운영	6,568	6,568	6,620	52	0.8
주택금융 신용보증 기금 (6개)	대위변제(주신보)	291,200	291,200	306,100	14,900	5.1
	주신보IT운영(정보화)	3,558	3,558	4,012	454	12.8
	구상권관리(주연보)	775	775	790	15	1.9
	보증료환급(주연보)	185	185	4,575	4,390	2,373.0
	대위변제	23,400	23,400	24,790	1,390	5.9
	사업수수료(주연보)	518	518	1,187	669	129.2
예금보험 기금채권 상환기금(3개)	전입금환급	78,381	78,381	84,245	5,864	7.5
	소송및법적절차비	275	275	1,469	1,194	434.2
	기타정리자문경비등	2,109	2,109	2,649	540	25.6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1

청년도약계좌 출시 관련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사업 검토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¹⁾ 사업은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출시·지원하고자 서민금융진흥원에 정부기여금 및 시스템 구축·유지에 관한 출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3,527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본인 납입금에 대한 기여금 지원 3,440억 3,700만원, 가구소득 심사시스템 구축·운영 및 서민금융진흥원 내 소득심사센터 설치·운영 등 인프라 구축 85억 8,100만원, 청년도약계좌 제도 운영 지원 1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청년도약계좌)	-	-	-	352,772	352,772	순증
기여금 지원	-	-	-	344,037	344,037	순증
인프라 구축	-	-	-	8,581	8,581	순증
청년도약계좌 운영 지원	-	-	-	154	154	순증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금융위원회

1-1. 청년도약계좌 관련 세부 운영계획 수립 필요 등

가. 현 황

정부는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국정과제¹⁾의 일환으로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추진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연 6,000만원 및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의 19~34세 청년이 납입한도 내에서 본인 납입금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에 비례하여 개인소득별 차등화된 기여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2023년 6월 중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 개요(안)]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만 19~34세 이하 청년(병역이행기간(최대 6년) 제외) 중 개인소득 연 6,000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적금방식	(기여금 지급기준) 최대한도 40~70만원
가입기간	5년(2023~2027년 판매 예정)
기여금	최대 6% 매칭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3년도 기여금 예산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의 예상 가입자수를 약 306만명²⁾으로 하고 개인소득 구간별로 기여금 지급한도(월 40~70만원)와 매칭비율(최대 6%)을 근거로 연간 기여금이 약 0.7조원 필요하며, 2023년에는 6월 출시하여 7월부터 납입받을 예정이므로 연 기여금의 50%만 산정하여 총 3,440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입장이다.

김윤성 예산분석관(kimys1001@assembly.go.kr, 6788-4623)

1) 국정과제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

2) 금융위원회는 2019년 대비 2021년 기준으로 조정된 개인소득과,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배수로 조정된 가구소득 변수를 바탕으로 청년인구 비율을 산출하였으며, 만19~34세 인구수인 1,034만명에 청년 비율을 곱하여 가입대상 약 306만명을 산출하였다고 밝혔다.

[2023년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 예산 세부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

2023예산안	산출산식	산출근거
344,037	가입자 약 306만명 × 월 기여금 최대 2.34만원 × 예상 납입률 80% × 6개월	◦ 가입자: 전체 청년인구(1,034만명) 중 개인소득·가구소득 변수를 동시만족하는 청년인구 수 추정 ◦ 월 지원금: 개인소득 기준 구간별 기여금 지급대상 납입금 한도(40~70만원) 및 매칭비율(3~6%)을 감안하여 평균 최대 매칭지원금액 월 2.34만원 ◦ 예상납입률: 청년희망적금 납입률 사례(월 50만원 납입한도 중 2022. 3월 말 기준 월평균 41.4만원 납입) 등을 고려하여 80% 추정 ◦ 기간: 2023년 6월 출시 예정이므로 6개월 간 기여금 산정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청년도약계좌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청년도약계좌는 다른 청년자산형성 상품과 달리 청년지원 정책과의 연계성이 낮아 예산투입의 효과성이 저조할 우려가 있으며 자산형성이 미진한 중장년층이 사업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세대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산형성 관련 사업은 자산형성 그 자체를 재정정책의 목표로 하기 보다는 다른 정책목표(저소득층 자립 지원,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를 위한 유인체제로 작동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특별시의 희망두배 청년통장, 부산광역시의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기존의 청년 자산형성사업의 경우에도 취약 청년계층의 자립, 중소기업 고용유지율 확보, 특정 지역의 청년계층 지원 등의 정책목표를 위해 유인체계 중 하나로 장려금 또는 기여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기존 주요 청년 자산형성사업 현황]

상품명	소관	상품 목적	의무 가입기간	만기시 수급액 (만원)
청년내일 저축계좌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청년 지원	3년	① 최대 1,478 ② 최대 739 (금리 2.0% 가정)
청년 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취업청년 자산형성 지원	2년	1,200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기업 장기재직 청년 자산형성 지원	5년	3,000 이상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특별시	취약계층 자산형성 지원	2년 또는 3년	약 500~1,100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서울특별시	장애청년 자산형성 지원	3년	약 900~1,300
청년희망 날개통장	부산광역시	부산시 거주 저소득 근로청년 자산형성 지원	3년	약 700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부산광역시	부산시 거주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18개월, 24개월, 36개월	약 1,100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대구광역시	대구시 단기일자리 청년 자산형성 지원	6개월	약 250
청년13통장	광주광역시	광주시 저소득 근로청년 자산형성 지원	10개월	약 200
대전 청년 희망통장 지원	대전광역시	대전시 저소득 근로청년 자산형성 지원	3년	약 1,100
청년연금	경기도	자산형성 및 중소기업 장기재직 지원	10년	약 2,600 ~ 8,000
청년마이스터통장	경기도	경기도 중소 제조기업 청년 근로자 지원	2년	최대 480 (지역화폐)
강원도형 일자리안심공제	강원도	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 자산형성 지원	5년	약 3,000
청년희망 디딤돌통장	전라남도	전라남도 거주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3년	약 750

자료: 금융위원회

그러나 청년도약계좌의 정책목표는 청년층의 자산형성·목돈마련이라는 점에서 다른 정책들과 차이가 있으며, 정부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아야 하는 청년의 주거 및 생활 보장, 고용촉진 등과의 연계성이 낮아 재정투입의 효과성이 타 사업에 비해 저조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청년자산형성 사업은 그 대상을 19~34세 이하의 청년으로 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이전 세대 대비 청년이 자산형성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자산형성이 미진한 중장년층이 자산형성 사업대상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는 우려 등 세대간 형평성에 관한 논의도 있는 상황이다.

즉, 청년도약계좌는 다른 청년자산형성 상품과 달리 청년지원 정책과의 연계성이 낮아 예산투입의 효과성이 저조할 우려가 있으며 재정지원을 둘러싼 세대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도약계좌 운영이 10년간 운영되는 대규모 재정지출사업임을 감안할 때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총 재정규모와 사업기간·사업대상·사업효과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 청년도약계좌 관련 세부 운영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금리 및 지급구조와 그에 따른 예산규모의 적정성을 논의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의 협의 등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상품을 조속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

청년도약계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청년도약계좌 내용의 타당성 및 공급 규모의 적정성에 관한 국회의 내실있는 심사를 거쳐 그에 필요한 예산규모가 결정되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023~2027년(5년) 동안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허용하고 2032년까지 동 상품을 운영·관리할 계획으로 2026년까지는 2.4조원의 재정지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³⁾

3) 2023년도 예산안 제출 당시에는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위한 중기사업계획상 재정투자규모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는데, 금융위원회는 2022. 10. 21. 청년도약계좌 관련 중기사업계획을 제출하였다.

[청년도약계좌 재정투입 규모(안)]

(단위: 백만원)

구 분	총						
	예산규모	기여금	인건비	전산구축 ¹⁾	민원상담	경상비	운영지원
2023	352,772	344,037	617	-	3,780	4,184	154
2024	688,446	670,420	926	5,000	5,670	6,276	154
2025	693,152	680,126	926	-	5,670	6,276	154
2026	696,381	683,355	926	-	5,670	6,276	154
계	2,430,751	2,377,938	3,395	5,000	20,790	23,012	616

주: 1) 전산구축 관련 ISP 진행 중으로 추후 반영 예정
자료: 금융위원회

그러나 2027년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2032년까지 가입자에 대한 기여금을 지급할 경우 청년도약계좌 운영을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이 예상되는바, 2023년도 단년도 예산 뿐만 아니라 총량적 차원에서 총 재정투입규모와 사업기간, 사업대상 및 사업효과 등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청년도약계좌의 금리수준 등 세부사항에 대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의 판매 금융기관이 선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금리수준 및 기여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향후 국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2023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금융권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22년 2월 청년희망적금은 은행권과의 협의를 통해 당시 금리수준⁴⁾보다 높은 5.0%를 기준금리로 하고 우대금리를 최대 1.0% 적용한 바 있으며, 그에 따라 금융기관의 이자지급액이 1조 1,316억원~1조 2,730억원⁵⁾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청년희망적금 사례를 감안할 때, 청년도약계좌 역시 금융기관이 일정 수준 이상의 적금 금리를 보장해야 하는바 5년간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의 이자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즉, 청년도약계좌 운영이 금융기관의 이자지급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년도약계좌의 금리수준 및 기여금 지급구조와 그에 따른 예산규모의 적정성을 국회 심사과정에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4) 2022년 2월 저축은행 적금 평균금리 2.5%

5) 2022년 3월말 기준 월평균 납입액 41.1만원 × 기준금리 5% × 24개월 × 최초가입규모 286.8만명 × 예상 중도해지율 10~20% = 1조 1,316억원 ~ 1조 2,730억원

상품 운영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청년도약계좌는 10년간 대규모 재정지출이 계획된 자산형성 정책이므로 국회 심사과정에서 총 예산규모와 사업기간·대상·효과 등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청년도약계좌의 금리 및 지급구조와 그에 따른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국회 심사 시 논의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는 금융권과의 협의 등을 통해 세부 운영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인소득·가구소득을 기준으로 가입대상 및 지원비율을 결정할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면밀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대상을 개인소득 연 6,000만원 및 가구소득 중위180% 이하로 설정하고,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조금 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소득 구간별 매칭비율을 차등적으로 설정할 계획이나, 세부적인 기준은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가입대상의 역차별 및 지원규모의 역진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먼저, 1인 가구의 경우 개인소득 가입기준(연 6,000만원/월 500만원 이하)보다 가구소득 가입기준(월 374만원)이 적어 월 374만원 초과 소득인 청년이 가입할 수 없는 반면 2인 이상 가구(월 622만원)의 가구원인 청년은 가입이 허용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19~34세 청년 1인 가구 비중이 2019년 기준 54.9%이었다는 점에서 1인 가구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인당 가구소득이 유사하거나 더 많은 경우에도 개인소득이 적으면 기여금을 더 받아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⁶⁾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

6) 예를 들어, 2인 가구 중 본인만 월 450만원의 소득이 있는 청년보다 월 972만원의 4인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월 250만원의 소득이 있는 청년이 더 많은 기여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가구소득이 더 많아 생활 수준이 더 높더라도 기여금을 더 받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중위소득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자료: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을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당초에는 예산 제약 하에 저축장려금이 지원됨에 따라 가입규모가 제한되어 있었으나 가입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국내 소득이 있는 외국인 가입이 허용되어 논란이 있었는바, 청년도약계좌의 목적·취지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 가입을 허용할지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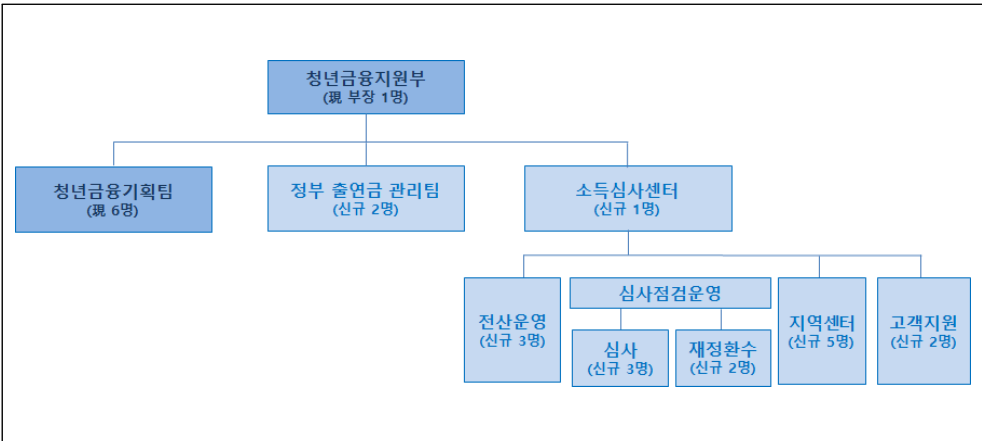
종합적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가입대상 및 지원비율을 결정할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세대 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면밀한 제도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2. 청년도약계좌 운영 관련 경상경비 등 감액 필요성 검토

가. 현 황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운영과 관련하여 가구소득 심사 및 금융회사와의 전산연결 시스템 등을 전담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산하에 “소득심사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센터 인건비 6억 1,700만원, 민원상담 용역비 37억 8,000만원, 경상운영비 4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다. 인프라 구축 외에도 청년도약계좌 운영 지원에 일반용역비 7,000만원, 정책연구비 7,000만원 등 총 1억 5,400만원이 계상되었다.

[서민금융진흥원 내 소득심사센터 구조(안)]



자료: 금융위원회

[2023년도 청년도약계좌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지원 관련 예산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산출내역	예산액
인프라 구축(사업출연금)		8,581
소득심사센터 인건비	3~5급 및 상담직 총 18인 인건비	617
민원상담 용역비	외주인력 200명 × 시간당 10,537.875원 × 220시간 × 8개월	3,780
경상운영비		4,184
사무실 임차료	신규인력 및 콜센터 외주인력 근무지 보증금 562백만원 + 임차료 1,517백만원 + 관리비 720백만원 (유사인원 공공기관 단가 활용)	2,799
콜센터 통신비 등	설치비 6백만원 + 기본료 14백만원 + 통화료 252백만원 등	428
여비	시내: 5명 × 20천원 × 2일 × 8개월 = 2백만원 시외: 2명 × 105천원 × 1회 × 8개월 = 2백만원	4
업무추진비	2명 × 132천원 × 8개월 = 2백만원	2
자산취득·수선유지	공공기관 증원경비 참고 (인당 1백만원 반영, 위탁용역 30% 반영)	78
사무환경	200명 × 2.2백만원 = 436백만원	436
응대교육	200명 × 20천원 × 1회 = 40백만원	40
설문조사 등 연구	청년도약계좌 이용 만족도 조사 등 4회 (1~3분기 각 1회 * 30백만원, 연말 1회 50백만원)	140
복리 후생비	18명 × 300천원 × 2/3(8개월분) = 4백만원	4
홍보비	상품출시 광고 제작비: 90백만원 × 1회 = 90백만원 온라인 홍보 콘텐츠 및 노출광고: 100백만원 × 1회 바이럴 마케팅: 350천원 × 180일 = 63백만원	253
청년도약계좌 운영 지원		154
일반수용비	회의 준비용 소모품 등	4
일반용역비	홍보물 콘텐츠 제작 및 확산	70
국내여비	근무지 내 (0.6백만원), 근무지 외(1.4백만원)	2
사업추진비	상품설계, 전산구축 등 관련 협의	8
정책연구비	청년 관련 정책연구용역	70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예산 중 인프라 구축 예산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2023년도 예산안 중 인건비 등은 전산시스템 구축을 전제로 편성되어 있으나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은 편성되지 않았는데, 전산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및 시기의 타당성, 전산시스템 구축 예산규모 및 전산담당 인력 규모의 적정성 및 기존 설비활용에 따른 예산 절감방안 등을 국회에서 내실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2023년도 예산안에는 소득심사센터 내 전산운영 담당(3인) 인건비, 전산구축 관련 협의 사업추진비 등이 편성되어 있으나, 실제 가구소득 심사시스템 및 금융회사와의 전산연결망 구축에 관한 예산은 계상되지 않았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2022년 8월부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청년 장기자산형성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ISP 수립이 진행 중으로, 2023년 6월까지 가입심사를 위한 시스템을 우선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약 190.7억원의 추가 출연금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¹⁾

[전산시스템 구축 계획(안)]

구분	내용
총구축비	19,070백만원(예정)
구축기간	2023.2~2023.10*(예정) * 6월까지 가입심사를 위한 시스템 우선 개발, 이후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순차적 개발

자료: 금융위원회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보화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검토,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하나, 현재 제시되는 자료는 중간산출물 수준에 불과하다.²⁾ 즉, 동 자료만으로는 전산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1) 금융위원회는 ISP 중간결과상 구축기간 8개월, 총 구축비 190.7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2)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2022. 10월 기준 ISP 수립 완료 전에 ISP 기본 구성내용을 모두 갖춘 중간산출물 검토를 NIA에 요청한 상황이다.

및 구축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을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전산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및 시기의 타당성, 전산시스템 구축 예산규모 및 전산담당 인력 등 관련 인프라 규모의 적정성, 기존 설비활용에 따른 예산 절감방안 등을 국회에서 내실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원상담 외주인력 용역비로 37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인력 및 근무시간 등 용역비 산출 단가가 과다계상된 측면이 있으며, 청년도약계좌 출시 이후 운영체계가 안정된다면 민원상담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주인력 규모 및 관련 용역비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원상담 외주인력 운영 관련 용역비 37억 8,000만원은 8개월 간 200명이 근무하는 것을 가정하여 편성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산식과 같다.

[민원상담 관련 용역비 편성 근거]

- 산출근거: 외주인력 200명 × 시간당 10,537.875원 × 220시간 × 8개월

* 필요인력 200명: 300만명 신청자 기준 하루 1% 수준(3만명)으로 문의한다고 가정하면 1인당 응대가능 콜수(150콜) 기준 200명 필요

* 10,537.875원: 2022년 상반기 중소기업직종별 임금조사 결과 단순노무종사원 일당 임금(8시간, 84,303원)의 시간당 임금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관련하여, ① 19~34세의 경우 전화문의보다는 모바일·인터넷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므로 가입자 300만명 중 1%가 매일 전화 문의하는 것을 가정한 외주인력 규모 200명은 과다한 측면이 있다.

② 근무시간과 관련하여, 1인당 월 22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주 5일 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 주휴수당(1주 40시간 근무시 8시간 추가)도 감안하여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용역비를 산정하므로, 이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³⁾

3) 국세청의 홈택스 상담센터의 경우에도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산출하고 있다.

③ 콜센터 운영기관과 관련하여, 출시 예정(6월)보다 2개월 전부터 연말까지 12월까지 200명 수준으로 계속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8개월 분을 편성하였는데, 상품 출시 전 또는 가입 시기에 집중적으로 문의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운영기간이 길어질수록 콜센터 문의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2023년 내 운영기간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즉, 위의 사항을 고려할 때 민원상담 관련 용역비가 과다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합리적인 규모로 감액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경상운영비(통신비 등)도 적정수준으로 감액할 수 있다고 보인다.

가. 현 황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희망적금)¹⁾ 사업은 청년희망적금의 저축장려금 지급을 주관하고 적금실적을 관리할 서민금융진흥원에 저축장려금 및 시스템 구축·유지에 관한 출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126억 1,800만원 증액된 3,601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

[2023년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희망적금)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청년희망적금)	-	47,550	47,550	360,168	312,618	657.4
저축장려금 지원	-	45,600	45,600	360,000	314,400	689.5
운영시스템 구축/ 전산보수		1,950	1,950	168	△1,782	△91.4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2년간 저축장려금(1년차 2%, 2년차 4%) 및 이자소득 비과세를 지원하는 금융상품으로, 2022년 2~3월 12개 은행에서 상품을 운영하였다.

[청년희망적금 상품 개요]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만 19~34세 이하 청년(병역이행기간(최대 6년) 제외) 중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과세 2,600만원) 이하
적금방식	월 최대 50만원(자유적립식)
가입기간	2년
저축장려금	1차년도 2%(최대 12만원), 2차년도 4%(최대 24만원)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
취급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 은행 자체금리: 기본 5%, 우대 0.0~1.0%p
기 타	1인 1계좌, 이자소득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91의21)

자료: 은행연합회 및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성

금융위원회는 당초 2022년도 저축장려금 예산(456억원) 한도 내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허용할 계획이었으나, 예상 가입규모인 38만명보다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2022. 3. 4.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을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286.8만명이 최초 가입하였으며, 2022년 6월말 기준 270.1만명이 가입을 유지하여 월평균 41.3만원을 납입하였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실적]

(단위: 만좌, 만원)

구 분	최초 가입시점	2022. 3월말	2022. 6월말
계좌건수	286.8	284.4	270.1
해지건수	-	2.4	16.7
(해지율)	-	0.8	5.8
월평균 납입액	-	41.1	41.3

자료: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성

나. 분석의견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희망적금)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 저축장려금의 지급이 실제 2024년 2~3월에 이루어진다는 점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정부 예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고려하여 2023년 지원 예산 3,600억원 중 특별중도해지 지급 금액 등을 제외한 일부 금액을 2024년으로 이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3년도 동 사업 예산안 중 청년희망적금의 저축장려금 지급예산은 3,600억원으로, 최초 가입계좌수 및 2022년 3월말 기준 월평균 납입액(41.1만원)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저축장려금의 최댓값(7,188억원)의 약 50%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예상되는 총 저축장려금 중 기 출연금 456억을 제외한 금액에 서민금융진흥원의 중장기 재무관리 및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2024년과 균분하여 3,600억원을 저축장려금으로 계상했다는 입장이다.

[2023년도 청년희망적금 저축장려금 관련 예산안 편성내역]

연도	저축장려금 (백만원)	산출근거	
2022	45,600	◦ 월 납입금 50만원 × 12개월 × 2%* × 38만 계좌** * 1년차 장려율 2%, 2년차 장려율 4% 적용 ** 과거 시중은행 재형저축(2013~2015년) 운영 시 청년층 계좌 추정규모 33만~43만의 평균치인 38만 계좌	
2023 (안)	360,000	총 저축 장려금	◦ 월 납입금 41.1만원* × 12 × 1년차 2%(2년차 4%) × 287만 계좌 × 예상 중도해지율 10~20%** = 6,794억 3,200만원~7,644억원 * 2022.3월말 기준 월평균납입액 ** 과거 자산형성상품 중도해지율 참고
		2023년 도 예산안	◦ 2022년 저축장려금 456억원 제외한 금액(6,338억 3,200만원~7,188억원)의 50% = 3,169억 1,600만원 ~ 3,594억원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의 적금 상품으로, 특별중도해지²⁾에 대한 장려금 외에는 원금 및 이자가 만기에 일시지급된다. 이에 따라 저축장려금은 만기까지 유지되는 계좌에 대하여 2024년 2~3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청년희망적금 사업을 수행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살펴보면, 2019년 부채비율(=부채/자본)이 858.6%이나, 2023년에는 459.4%, 2024년에는 부채비율이 352.9%로 감소하는 등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³⁾

[서민금융진흥원 연도별 주요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 %p)

구 분	결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2022~2026)			차이 (b-a)
	2019 (a)	2020	2021	2022	2023	2024 (b)	
자산 (a)	29,063	31,706	36,469	43,850	52,900	50,063	21,000
부채 (b)	26,031	27,651	29,444	35,835	43,444	39,009	12,978
자본 (c=a-b)	3,032	4,055	7,025	8,016	9,456	11,054	8,022
부채비율 (b/c)	858.6	681.8	419.1	447.1	459.4	352.9	△505.7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특히,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 청년희망적금 관련 정부출연금 수입 미수금 및 저축장려금 미지급액은 각각 자산(미수금) 및 부채(미지급금)으로 계상되는데도 저축장려금 정부출연금은 2022년 456억원을 제외하고는 2024년 2월에 전액을 수령하는 것으로 반영되어 있다.⁴⁾ 즉 중장기 재무관리 측면에서 2024년 출연을 가정함에도

2) 각 은행의 청년희망적금 약관에 따르면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계약해지일 전 6개월 이내 천재지변·퇴직·폐업 등의 경우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하다.

3) 2022~2026년 서민금융진흥원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 보증관련 출연금 수입은 2022년 4,487억원, 2023년 4,579억원, 2026년 4,277억원으로 해당기간 동안 총 1조 8,579억원 발생하는 것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2022년 991억원에서 2026년 1,883억원으로 총 8,058억원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정부 및 금융회사의 출연금 등에 따른 이익발생으로 인해 부채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4) 다만, 청년희망적금 관련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현재 한국회계기준원에서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검토 중에 있어, 관련 회계처리 방법 변경 시, 서민금융진흥원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상 2022~2024년간의 부채비율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회계법인이 작성한 서민금융진흥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과 관련한 정부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회사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목적에 따라 보수적으로 사업종료시점(2024년)에 출연이 발생한다고

서민금융진흥원의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금융진흥원 중장기재무관리계획(2022~2026) 상 청년희망적금 관련 반영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22년	'23년	'24년	합계	비고
연도 중 수익 비용	수익 (이전수입)	2,201	4,801	877	7,879	• 287만명, 월평균 납입액 38만원 가정
	비용 (장려금 지급액 등)	2,201	4,801	877	7,879	• 비용 중 26억원은 관련 전산구축 등 사업비 지원금 비용임
연도 말 자산 부채	자산(미수금)	1,725	6,526	0	-	• 저축장려금 지급 관련 정부출연금 수입 미수금 계상
	부채(미지급금)	2,181	6,980	0	-	• 저축장려금 미지급액 부채 계상
정부지원금 수령금		476	0	7,403	7,879	• 2024.2월에 저축장려금 지급 관련 정부 출연금 전액 수령 가정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은 2022년도 출연금 477.5억원 중 전산시스템 구축비를 제외한 출연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장려금 지급을 위해 단기성(6개월)으로 자금을 예치하고 있다. 2023년 예산안을 통해 정부로부터 출연받을 저축장려금 역시 2024년 2월 실제 지급되기 전까지는 서민금융진흥원의 관련 여유자금 자산운용 기준에 따라 내부적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2022년 청년희망적금 관련 출연금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총 출연금	특별중도해지지급액	여유자금 운용	비고
47,550	2	43,300	* 예치기간: 2022.5.12.~11.22.
(저축장려금 45,600)			* 예치금리: 2.95%

자료: 금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정하였으나 최종 예산 지원 시점에 따라 재무제표 및 주요재무비율의 추정치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고 설명하고 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여유자금의 운용) 진흥원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회사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금융회사가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 그 밖에 여유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운영위원회(휴면계정의 경우에는 관리위원회를 말한다)가 정하는 방법

「자금관리규정」(내규)

제4장 자금의 운용

제17조(운용원칙) ① 여유자금은 운용자금 원본의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적정 유동성 확보 및 수익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자료: 서민금융진흥원

그러나 정부 출연금 예산 조달금리라고 볼 수 있는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는 최근 상승하여 2022년 5월 3.18%, 8월 3.17%으로, 청년희망적금 관련 별도계정에서 운용 중인 금리수준(2.95%)보다 높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 전체 여유자금 자산운용 수익률도 2022년 6월말 기준 1.2%에 불과하여 당시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 3.42% 대비 $\Delta 2.22\%p$ 차이가 발생하였다.

[국고채 평균조달금리]

(단위: %)

구 분	2021	2022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	1.79	2.95	2.61	3.15	3.18	3.42	3.40	3.17
서민금융진흥원 자산운용 수익률	1.33	-	-	-	-	1.20	-	-

즉,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 저축장려금의 지급이 실제 2024년 2~3월에 이루어진다는 점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정부 예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고려하여 2023년 지원 예산 3,600억원 중 특별중도해지 지급 금액 등을 제외한 일부 금액을 2024년으로 이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23년도 성과지표 목표인 청년희망적금 가입유지율이 50%으로 과소하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적정 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도 금융소비자보호 프로그램의 성과지표를 청년도약계좌 가입유지율(가중치 0.4), 청년희망적금 가입유지율(가중치 0.4), 채무자대리인 법률구조 실적(가중치 0.2)로 설정하였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유지율 목표 50%는 6대 은행 적금 중도해지 추이⁵⁾를 감안하여 설정한 것이며, 2023년도 성과목표도 2022년과 동일하게 50%로 수립하였다.

[청년희망적금 관련 성과지표 내역]

성과지표	구분	'19	'20	'21	'22	'23	'23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청년희망 적금 가입유지율 (단위:%)	목표	-	-	-	50	50	6대 은행 적금 중도해지 추이 등 고려	가입유지율 = [(최초 가입자 일반 중도해자자)/ 최초 가입자] * 100	서민금융 진흥원
	실적	-	-	-	-	-			
	달성도	-	-	-	-	-			

자료: 금융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에는 상품 출시 이전이었으므로 기존 적금의 중도해지 추이 등을 고려하여 성과목표를 수립하였을 수는 있다. 그러나 청년희망적금의 실제 지급금리 수준이 연 9.3% 이상⁶⁾이 되어 가입수요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 역시 예상 중도해지율을 10~20%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사업의 성과목표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5) (2018년) 45.4% → (2019년) 44.33% → (2020년) 43.0%

6) (지급금리 5% + 저축장려금 1년차 2%, 2년차 4%)에 이자소득세(15.4%) 감면을 감안하면 연 9.31%의 일반적금과 유사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관련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규모의 적정성 검토

가. 현 황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¹⁾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인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산하 새출발기금(SPC)을 통한 채권매입형 채무조정 또는 금융사 동의 기반 중개형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캠코에 자본금을 출자하는 것으로, 2023년에는 전년 대비 3,200억원 감액된 2,800억원으로 편성되었다.

[2023년도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	-	600,000	280,000	△320,000	△53.3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부터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서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의 채무를 조정하거나 원금을 감면하기 위해 2022년 10월 출범한 캠코 내 기금이다. 동 기금의 자금을 통해 장기연체(3개월 이상)에 빠진 부실차주 또는 근 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 대상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신용대출·보증부대출(대위변제 후)의 원금조정 및 금리감면·분할상환 등을 지원하고, 부실차주의 담보부대출 및 부실우려차주의 대출에 대해서는 금리감면·분할상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윤성 예산분석관(kimys1001@assembly.go.kr, 6788-4623)

1) 코드: 일반회계 2432-303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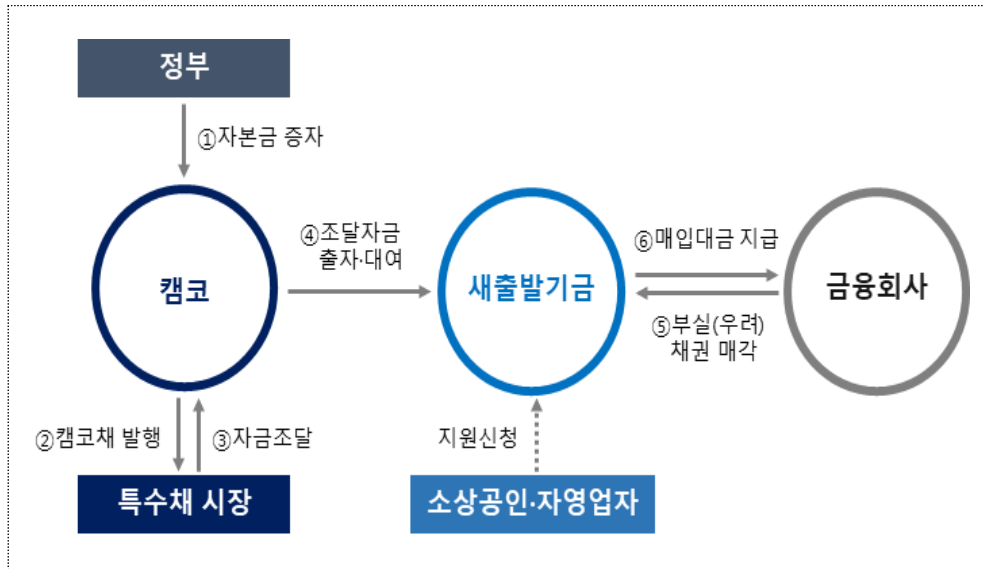
구 분	주요내용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상공인으로서 부실차주(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발생) 및 부실우려차주(폐업자 및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등) * 중소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외 업종(부동산임대·매매업, 사행성 관련 업종 등) 제외
지원규모	총 30조원 ²⁾
대상대출	협약금융회사 보유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대출 무관)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부실우려차주의 6개월 내 신규대출 등 제외 * 총 15억 한도(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지원내용	부실차주: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60~80% 원금조정 및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경우 원금조정 無 * 기초생활수급자, 만 70세 이상 저소득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 감면 부실차주의 담보부채무 및 부실우려차주 채무: 거치기간 연장, 장기분할상환 및 고금리 부채의 금리조정 등
지원기간	2022. 10월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 접수(필요시 최대 3년간 연장운영)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새출발기금 운용을 위해 캠프는 정부의 자본금 증자 및 캠프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새출발기금(SPC)을 설립하고, SPC에서 부실(우려)채권을 매입하여 해당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2) 2021년말 소상공인·자영업자(부동산임대·매매업 제외)의 총 대출 약 666조원(= 사업자대출 441조원 + 가계대출 225조원) 중 5~10%에 해당하는 35~70조원이 잠재부실로 추정되며, 금융위원회는 잠재부실의 약 40%를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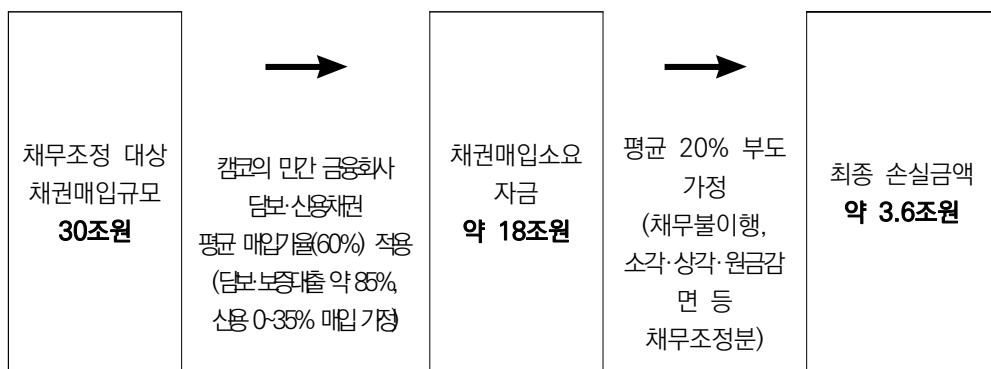
[새출발기금 운용체계]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채무조정 대상 채권매입규모 30조원 중 매입한 채권에 부도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3.6조원을 정부 출자로 조달하고 14.4조원은 최대 3년간 캠코채를 분산발행하여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 소요재원 추정 산정방식]



자료: 금융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에는 정부출자 규모가 2,800억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는 법률상 자본금 제한(3조원)³⁾으로 인해 2022년말 기준 자본금 잔여액인 2,800억원으로 편성한 것이다. 이후 정부는 총 3.6조원(추가 2.72조원) 출자를 위해 자본금 한도 상향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본 상황]

(단위: 억원,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예상)	2023		
						(출자전)	(출자후)	(3.6조원 출자)
자본금	8,600	8,600	9,500	16,119	27,119	27,119	29,919	52,119
현물출자	-	-	-	6,500	5,000	-	-	-
(비율)	-	-	-	40.33	18.44	-	-	-
부채	21,904	30,017	38,826	47,534	83,424	145,950	143,100	120,504
부채비율	117.2	158.4	193.9	172.9	217.3	398.5	362.5	194.1

자료: 금융위원회

나. 분석의견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최대 3년 재연장됨에 따라 초기 채무조정 실적이 저조하고 수요가 분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 수요를 감안하여 총 채무조정 수요 및 캠프의 부채비율 등을 재산정하고 그에 따라 출자규모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2020. 3. 31. 이전에 대출받은 개인사업자·중소기업 대출에 대하여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이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4차례 연장⁴⁾하여 2022년 9월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2년 9월 이후 동 조치 종료에 따라 채무불이행이 급격하게 증가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한다.

4) (최초) 20.4.1.~20.9.30.→(1차연장)~21.3.31.→(2차연장)~21.9.30.→(3차연장)~22.3.30.→(4차연장)~22.9.30.

할 경우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정부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출자재원 1.1조원(세출예산 0.6조원 및 현물출자 0.5조원)을 마련하였으며 이를캠코에 출자함으로써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2022. 9. 27. 금융위원회는 최대 3년 만기연장 및 최대 1년 상환유예를 허용하는 내용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만기연장은 과거 일괄 만기연장이 아닌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전환하되 최대 3년간(새출발기금 신청접수기간과 동일) 지원하고, 상환유예는 최대 1년간 추가지원하는 것으로 하였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목표와 달리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한 것에 대하여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금융여건 악화로 동 조치가 종료될 경우 대거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한 것이며, 새출발기금과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2022. 9.)의 주요내용]

차주 구분		채무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1:1 상담 → 채무조정을 원하는 경우
만기연장 이용 중인 차주	124.7조원 (53.4만명)	최대 3년간 만기연장 추가지원 (금융권 자율협약 전환)	차주가 희망할 경우, 새출발기금,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예: 개인사업자 119 등) 등으로 연계하여 상환부담 완화
상환유예 이용 중인 차주	16.7조원 (3.8만명)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추가지원	

자료: 금융위원회

그러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으로 인해 새출발기금 출범(2022. 10. 4.) 직후 당초 예상과는 달리 채무 매입규모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채무자 차원에서는 만기연장 조치가 이어짐에 따라 곧바로 부실 차주로 이어지지 않아 새출발기금의 수요가 분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리감면·분할상환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채무조정 대상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워지는 등 금융활

동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스스로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선택할 유인도 낮다고 보인다.

한편, 금융회사 입장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로 인해 채무자의 부실 가능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부실우려차주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도 늘어 새출발기금의 초기 수요가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다.⁵⁾

초기 신청현황을 보면, 금융위원회는 당초 지원 가능 인원을 약 25만명~40만 명⁶⁾으로 예상하였는데, 실제 2022. 10. 14. 기준 사전신청 기간(2022. 9. 27.~30.)을 포함하여 온라인 플랫폼 방문 475,535명, 콜센터 연결이 59,427건이었음에도 신청 중 또는 신청완료된 차주수는 7,680명(플랫폼방문자수 대비 1.6%, 콜센터 상담 수 대비 12.9%)에 불과하였다.

[새출발기금 관련 접속 및 상담 현황(2022. 10. 14. 기준)]

(단위: 명)

새출발기금온라인플랫폼접속자수		콜센터연결건수 ¹⁾	
당일	누계	당일	누계
19,737	475,535	2,465	59,427

주: 1) 새출발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자료: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신청 현황(2022. 10. 14. 기준)]

(단위: 명, 억원)

단계	차주수		채무액	
	당일	누계	당일	누계
신청중	118	6,538	210	11,332
신청완료	49	1,142	29	718
합 계	167	7,680	239	12,050

자료: 금융위원회

5) 금융위원회는, 2023년 3월까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상환유예조치가 가능하고 2023년 9월 후 상환유예조치가 종료되며, 경제·금융상황을 감안할 때 상환유예차주 등이 2023년 이후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6)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의 평균 부채규모가 1.2억원이므로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 지원시 약 25만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으며, 채무조정 신청차주의 재산·소득 및 부채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최대 40만명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즉,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추가 연장으로 인해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수요가 초기에 몰리지 않고 만기연장 가능기간(3년) 및 상환유예(1년) 후 채무조정 수요가 늘어 당초 예상보다는 수요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캠프의 부채비율이 현재 예상 부채비율(362.5%)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2022. 10. 4.부터 실시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 수요를 면밀히 살펴 총 채무조정 수요 및 예상 부채비율을 재산정하여 그에 따라 2023년 출자규모에 대한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핀테크 창업지원 프로그램 신규 추진의 타당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핀테크 지원 사업¹⁾은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 지원, 핀테크 관련 국제협력 강화, 국민참여 핀테크 체험행사 개최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고 핀테크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5억 8,200만원이 감액된 139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핀테크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핀테크 지원 사업	16,642	14,579	14,532	13,950	△582	△4.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금융위원회

핀테크 지원 사업은 디지털 금융혁신 지원, 핀테크기업 육성지원, 핀테크 기반 구축, 핀테크 인력양성, 사업 운영 지원 5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모든 내역사업에 핀테크 지원 관련 민간보조사업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는 모두 사단법인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로,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 136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다.

김윤성 예산분석관(kimys1001@assembly.go.kr, 6788-4623)

1) 코드: 일반회계 1134-310

[2023년도 핀테크 지원 사업 내 민간보조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²⁾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핀테크 지원 사업	16,642	14,579	14,532	13,950	△582	△4.0
디지털 금융혁신 지원	10,330	8,625	8,597	7,222	△1,375	△16.0
(민간경상보조)	10,230	8,441	8,441	7,038	△1,403	△16.6
핀테크기업 육성지원	1,537	1,261	1,261	2,135	874	69.3
(민간경상보조)	1,537	1,261	1,261	2,135	874	69.3
핀테크 기반구축	1,490	1,656	1,637	1,656	19	1.2
(민간경상보조)	1,454	1,573	1,573	1,573	0	0.0
핀테크 인력양성	1,875	1,845	1,845	1,745	△100	△5.4
(민간경상보조)	1,875	1,845	1,845	1,745	△100	△5.4
사업 운영 지원	1,410	1,192	1,192	1,192	0	0.0
(민간경상보조)	1,017	1,082	1,082	1,082	0	0.0
(민간자본보조)	393	110	110	110	0	0.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2) 금융위원회의 집행액 기준임

자료: 금융위원회

핀테크 지원 사업 중 내역사업인 핀테크기업 육성지원 사업은 핀테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멘토링,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 핀테크 특화 보육프로그램 및 해외진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8억 7,400만 원 증액된 21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동 내역사업이 증액된 것은 “핀테크 창업지원 프로그램” 예산 10억 2,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이다.

[2022 · 2023년 핀테크기업 육성지원 사업(내역사업) 예산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2022년도 본예산		2023년도 예산안	
산출내역	예산액	산출내역	예산액
핀테크기업 육성지원	1,261	핀테크기업 육성지원	2,135
성장지원 프로그램	660	성장지원 프로그램	1,624
멘토링 (200회×0.25백만원)	50	멘토링 (200회×0.25백만원)	50
네트워킹 데이(1회×50백만원)	50	네트워킹 데이(1회×50백만원)	50
입주기업 AC집중보육 (25건×8백만원)	200	입주기업 AC집중보육 (25건×8백만원)	200
지방핀테크기업 입주지원(30개 사×12백만원)	360	지방핀테크기업 입주지원(12개 사×25백만원)	300
		핀테크 창업지원 사업 (기술 내재화 지원금 12개사×70 백만원, 프로그램 운영 184백만원)	1,024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1회×151백만원)	151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1회×151백만원)	151
해외진출 컨설팅 : 컨설팅 비용지원(30건×15백만원)	450	해외진출 컨설팅 : 컨설팅 비용지원(30건×15백만원)	450

자료: 금융위원회

나. 분석의견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서 추진 예정인 핀테크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의 초기창업패키지와 유사하므로 별도로 핀테크 창업지원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을 통해 초기창업패키지 분야에 핀테크 분야를 추가하고 주관기관으로서 지원센터가 참여하는 등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핀테크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에 기술내재화 지원금(인건비, 기술이전비, 지식재산권 출원·보호비 등) 및 특화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핀테크 초기기업들의 외부의존도를 낮추고 기술을 내재화함으로써 핀테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하려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 및 지원센터는 기술 내재화 지

원금 8억 4,0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1억 8,400만원을 통해 동 프로그램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3년도 핀테크 창업지원 프로그램 예산안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소구분	세부 산출내역	금액
핀테크 창업지원	기술내재화 지원금	창업기업 12개사 ¹⁾ × 70,000천원	840
	프로그램 운영비	핀테크 특화 프로그램(교육, 멘토링, 등), 홍보비 등	184
소 계			1,024

주: 1) 「2020 대한민국 핀테크 판람」 상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수(170개사) 대상 7% 지원

자료: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그러나 핀테크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지원²⁾ 사업의 초기창업패키지와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은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보육프로그램, 멘토링 등을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바, 목적·지원대상 및 지원방식이 거의 동일하다.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창업사업화지원	473,689	432,824	432,824	383,110	△49,714	△11.5
초기창업패키지	100,260	92,540	92,540	64,305	△28,235	△30.5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금융위원회

2) 코드: 일반회계 5132-302

[핀테크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초기창업패키지와의 비교]

구 분	핀테크 창업지원 프로그램	초기창업패키지
소관(주관)	금융위원회(한국핀테크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 주관기관)
목적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성장단계 별 원스톱 창업지원	유망 초기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 및 성장 지원
대상	3년 이내 창업기업	3년 이내 창업기업
분야	핀테크 분야 * 간편결제/송금, 해외송금, P2P 대출, 클라우드펀딩, 자산거래 플랫폼, 인 슈어테크, 개인금융관리, 로보어드바이저, 금융상품 추천·중개	일반분야*, 그린분야** *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블록체인, 서 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드론·개 인이동수단, 지능형로봇, 스마트제조, 자율주행차, 시스템반도체, 미래형선 박,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바이오, 의료기기, 기능성식품 ** 전기·수소차, 신재생에너지, 이차전 지, 자원순환·에너지재활용, CCUS
지원내용	- 기술내재화 지원금: 평균 7,000만 원(최대 1억원) - 핀테크 특화프로그램(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등) - 핀테크지원사업 연계(금융테스트베 드, 핀테크보안지원, 해외진출 등)	- 사업화자금: 평균 7,000만원(최대 1억원) - 특화프로그램: 주관기관별 전문성 활용

자료: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및 창업진흥원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금융위원회 및 지원센터는 핀테크 분야 지원이 필요함에도 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은 금융정책적 우선순위를 반영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우선순위 반영 가점항목(예: 노란우산공제 가입 여부) 등 핀테크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업체선정 기준, 핀테크 특화 지원프로그램 제공 부족 등으로 핀테크 기업 대상 사업효과가 미미하므로 별도로 핀테크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초기창업패키지의 서비스플랫폼 분야가 핀테크 분야보다 넓은 범주로 두 프로그램의 대상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초기창업패키지 전체 선정기업 중 핀테크 관련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10월 기준 16.3%에 이른다.

[초기창업패키지 선정기업 중 핀테크 관련 기업 현황]

(단위: 개사, %)

구 분	2020	2021	2022
전체(A)	1,099	953	700
핀테크 관련(B)	156	152	114
(B/A)	(14.2%)	(15.9%)	(16.3%)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핀테크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기술내재화 자금은 기술내재화와 관련된 인건비, 기술이전비, 지식재산권 출원·보호비 등으로, 초기창업패키지에서 지원하는 사업화자금(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더욱이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와의 중복성 여부 등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 또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에서의 조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³⁾. 동 절차에 따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① 중소기업 보호·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의5(협의 및 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와의 중복성 여부, 수혜자 선정 등 전달 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심의회가 이를 조정한다.

③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 협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15(협의결과의 처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심의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심의회에 상정하고, 심의회의 조정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문위원회⁴⁾는 핀테크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기존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고 사업화 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존재하며, 기존사업과 차별성 있는 지원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등 기존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종합의견⁵⁾을 도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핀테크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신규편성된바, 이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협의·조정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유사·중복을 해소하고 재정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와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핀테크 창업지원 프로그램 관련 중소기업지원사업 전문위원회 종합의견]

검토주제	종합의견
비교대상인 기존사업 간 유사중복 여부	· 기존사업과 유사중복성 있으며, 기존사업을 통해 핀테크 분야 충분히 지원 가능 · 사업화자금은 중기부로 일원화하여 지원 필요성 존재
사업설계 전반 검토	· 핀테크 스타트업의 법률, 기술 이슈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방향 등 기존사업과 차별성 있는 지원내용 마련 필요 ·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등 기존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종합적으로, 핀테크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초기창업패키지와 유사중복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금융위원회는 별도로 핀테크 창업지원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추가적인 협업을 통해 초기창업패키지 분야에 핀테크 분야를 추가하고 주관기관으로서 지원센터가 참여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여 초기창업패키지에서 정책효과를 달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동법 제20조의4(중소기업정책심의회) ⑥ 제2항 각 호에 따라 심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⑦ 실무조정회의는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다만,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전협의 과정에서 초기창업패키지에 핀테크 분야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음에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초기창업패키지 예산 축소 및 지역 안배를 고려한 주관기관 선정 등의 이유로 핀테크 분야 신설이 무산된 바 있다는 입장이다.

가. 현 황

자본시장조사단 운영(정보화)¹⁾는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자본시장조사단 운영을 위해 포렌식 장비와 조사·수사 시설·장비 도입 및 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억 3,600만원 증액한 5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2023년도 자본시장조사단 운영(정보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자본시장조사단 운영 (정보화)	138	238	238	574	336	141.2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2013년 4월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속부서로 설치된 조직으로,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통보된 사건을 분류하여 검찰청·금융감독원에 배당하거나 중요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조사실 2개, 포렌식 장비 6세트가 사용되고 있으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2021년 87건, 2022년 8월말 까지 47건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분류·조사하였다.

김윤성 예산분석관(kimys1001@assembly.go.kr, 6788-4623)

1) 코드: 일반회계 7132-504

[자본시장조사단 조사사건의 고발·통보 및 증권선물위원회 조치 유형별 실적]

(단위: 건)

조치유형	2018	2019	2020	2021	2022.8
고발·통보	75	58	60	48	26
고발	29	29	26	21	9
통보	35	22	16	18	7
Fast-Track	11	7	18	9	10
과징금 부과	20	39	24	29	15
경고 등	9	1	9	10	6
합 계	104	98	93	87	47

주: 여러 조치가 함께 조치되는 경우, 가장 중한 조치로 통계 산출

2013년 이후 Fast-Track 통보사건 합계 : 총 135건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최근 2022년 3월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²⁾을 자본시장조사단 내에 출범³⁾시켰는데, 조사·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2023년 수사실을 별도로 마련하고 모바일포렌식 2세트 및 디스크포렌식 1세트를 별도로 도입하기 위해 3억 6,100만원 편성하였다는 입장이다.

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49. 금융위원회에 근무하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단속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제7조의3(금융감독원 직원) ① 금융감독원 또는 그 지원이나 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직원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밖의 직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 4급 이상의 직원

2.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여 사법경찰관으로 추천한 5급 직원

3) 금융위원회 3인, 금융감독원 4인

[특별사법경찰 도입에 따른 2022·2023년도 자본시장조사단 운영(정보화)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비목	2022 예산액	2022.8. 집행액	2023 예산안	산출근거
자본시장조사단 인건비	인건비 내역 없음				
자본시장조사단 기본경비(총액)	특사경 사항 없음				
자본시장조사단 기본경비(비총액)	일반 수용비	63.5	60	72.4	특사경 관련 8.3백만원 특사경 수사용품 및 사무소모품 구입 = 690,000원×12월
자본시장조사단 운영(정보화)	공사비	-		84	수사실 공사비용 = 4실×21백만원
	자산 취득비	66	-	277	수사실 장비 도입 = 18백만원 모바일포렌식 도입 = 2식×111백만원 디스크포렌식 도입 = 1식×37백만원

자료: 금융위원회

나. 분석의견

2023년 중 마련 예정인 자본시장조사단 내 특별사법경찰 전용 수사실 및 디지털포렌식은 기존 조사실 및 포렌식 장비로도 활용 가능하므로, 수사실 공사비 및 수사실·디지털포렌식 장비 관련 자산취득비에 대한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 훈령인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에 근거하여 수사업무와 조사업무 간의 부당한 정보교류를 차단하기 위해 업무의 분리 운영이 필요하므로 별도의 수사실과 디지털포렌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⁴⁾ 상 조사부서와 수사부서 간 업무

4)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제6조(수사부서의 설치)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이하 "금융위원장"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및 조직을 분리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조사실·디지털포렌식 장비 등 조사시설과 설비 등을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현재 모바일포렌식 3세트, 디스크포렌식 1세트, 클라우드포렌식 2세트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출범하였음에도 디지털포렌식 장비 사용실적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별도의 수사실 및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도입할 필요성은 낮다고 보여진다.

[디지털포렌식 장비 사용 현황]

(단위: 건)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9.20.
모바일 (3세트)	80	81	63	45	35	10(5)
디스크 (1세트)	-	-	-	-	9	8(1)
클라우드 (2세트)	-	-	-	-	-	-
계	80	81	63	45	44	18(6)

주: 괄호 안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해당 포렌식 장비를 사용한 횟수를 의미

자료: 금융위원회

즉, 자본시장조사단 내 특별사법경찰이 기존의 조사실 및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사용여력이 있으므로, 2023년도 자본시장조사단 운영(정보화) 예산안 내 별도의 수사실 및 디지털포렌식 장비 마련을 위한 공사비 및 자산취득비 예산에 대한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범죄 수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시장조사단 내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수사부서(이하 "금융위 특사경 수사부서"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④ 금융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업무와 자본시장법 제426조, 제429조, 제429조의2, 제430조 및 제449조에 따라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조사부서"라고 한다)의 조사업무 간의 부당한 정보교류를 차단하기 위하여 업무 및 조직을 분리 운영해야 한다. 다만 조사실, 디지털포렌식 장비 등 조사 시설과 설비 등을 공동 사용할 수 있다.

가. 현 황

자금세탁방지추진 사업¹⁾은 고액현금거래 보고(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CTR) 정보제공 사실 당사자 통보,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활동 등 국제협력 사업 등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00만원 감액된 8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2023년도 자금세탁방지추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자금세탁방지추진	774	838	822	820	△2	△0.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금융위원회

고액현금거래보고(CTR)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다른 금융회사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거래를 제외한 금융거래로서 1일 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이나 현금과 유사한 지급수단의 입출금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에 자동보고 하도록 한 제도²⁾이다. CTR 정보가 검찰청·국세청·경찰

김윤성 예산분석관(kimys1001@assembly.go.kr, 6788-4623)

1) 코드: 일반회계 1331-303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① 금융회사등은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는 제외한다)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을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領收)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과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3.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없는 일상적인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청 등 법집행기관³⁾에 제공된 경우 FIU는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제공한 거래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제공일 등을 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⁴⁾ 이와 관련하여 2023년도 예산안에는 1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CTR 당사자 통보 관련 예산안]

1억 5,800만원 = 예상 통보건수 59,618건 × 등기 우편요금 2,650원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금융정보분석원은 올해 말부터 CTR 당사자 통보에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를 활용할 계획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통보예산을 일부 감액할 필요가 있다.

2021년 3월부터 특정금융정보법 적용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가 포함됨에 따라 최근 CTR 정보제공사실 통보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CTR 당사자 통보는 2018년 45,629건에서 2021년 48,982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우편 통보에 따른 집행액 역시 9,6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증가하였다.

3)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세청, 관세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

4) 동법 제10조의2(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한 정보(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를 제10조에 따라 검찰총장등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CTR 및 당사자 정보제공사실 통보 현황]

(단위: 건, 천원)

연도	CTR			
	금융기관 보고	집행기관 제공	당사자 통보	집행액
2017	9,584,536	40,115	47,372	95,099
2018	9,538,820	47,670	45,629	95,774
2019	15,665,386	43,272	43,010	95,916
2020	20,414,540	34,549	36,852	92,330
2021	20,551,295	49,059	48,982	119,553
2022.8월말	12,414,721	50,423	22,579	58,067

자료: 금융위원회

그러나 CTR 당사자 통보의 우편등기 반송률은 2017년 20.79%에서 2021년 36.60%로 증가하였다. 대부분 폐문 부재로 반송되고 있으며, 2021년말 기준 우편 등기 반송의 73.8%를 차지하고 있는데⁵⁾,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우 편반송의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TR 당사자 통보 반송 및 1인 가구 비중 추이]

(단위: 건, %)

연도	당사자 통보	반 송	반송률	1인가구비율
2017	47,372	9,849	20.79	28.6
2018	45,629	13,396	29.36	29.3
2019	43,010	10,764	25.03	30.2
2020	36,852	10,825	29.37	31.7
2021	48,982	17,928	36.60	33.4

자료: 금융위원회 및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5) 2021년 CTR 당사자 통보 반송사유별 비중

(단위: %)

연도	폐문 부재	수취인 불명	이사 불명	주소 불명	수취인 부재	수취 거절
2021	73.84	14.44	7.62	2.66	1.29	0.12

자료: 금융위원회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정무위원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결과 금융위원회가 타 기관의 통보방식을 참고하여 등기방식 외에 전자송달 등 보다 효과적인 당사자 통보방식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FIU는 국회의 지적을 반영하여 2023년부터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 서비스⁶⁾를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축 이후에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CTR 정보제공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한 후 미확인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나, 현 시점에서 정확한 예상 통보건수는 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비서 서비스 가입자가 2021년말 약 1,500만명에 이르고 국세청·경찰청 등의 기관에서 등기·일반우편에서 모바일 안내로 전환한 사례⁷⁾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모바일 통보 전환건수를 추계하고 통보예산을 일부 감액할 필요가 있다.⁸⁾

6) 국민비서 서비스는 국민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개인맞춤형으로 미리 알려주고(국민비서 알림서비스), 국민의 질문사항을 상담해주는(국민비서 상담서비스) 온라인 서비스로, 카카오톡·토스·네이버앱·신한은행 및 국민은행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이나 문자서비스를 통해 행정정보를 모아서 제공한다.

7) 국세청의 납세 안내 등 관련 일반우편 발송건수 : (모바일 방식 도입 전) 2018년 39,484건 → (모바일 방식 도입 후) 2019년 30,084건 → 2020년 23,039건 → 2021년 17,199건

8) 국민비서 서비스 발송 예산은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편성·집행함

가. 현 황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¹⁾ 사업은 시장실패 영역인 신산업·전략산업 지원 및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추진하고자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위해 정부 재정을 산업은행에 출자하는 것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3,000억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산업은행 출자 (혁신성장펀드)	510,000	600,000	600,000	300,000	△300,000	△50.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금융위원회

혁신성장펀드는 기존 뉴딜펀드를 새정부 방향에 맞는 신산업·전략산업 지원 및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으로 투자분야를 확대·다변화하고 민간 주도의 펀드 운용이 가능하도록 재편하는 것으로 혁신산업지원분야와 성장지원분야로 구분하여 운용할 계획이다. 혁신성장펀드는 5년간 정부재정 1.5조원, 정책금융 3조원, 민간자금 10.5조원으로 총 15조원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한다.

[혁신성장펀드 조성계획(안)]

(단위: 조원)

구 분	내 용	연 도	조성계획			
			정부재정	정책금융	민간자금	계
혁신산업 지원분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신산업·전략산업 (반도체·AI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자금공급	2023	0.2	0.34	0.96	1.5
		2024	0.2	0.34	0.96	1.5
		2025	0.2	0.34	0.96	1.5
		2026	0.2	0.34	0.96	1.5
		2027	0.2	0.34	0.96	1.5
		소 계	1.0	1.7	4.8	7.5
성장지원 분야	역량있는 중소·벤처기업이 중견·유니콘(기업가치 10억불 이상)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금 지원	2023	0.1	0.26	1.14	1.5
		2024	0.1	0.26	1.14	1.5
		2025	0.1	0.26	1.14	1.5
		2026	0.1	0.26	1.14	1.5
		2027	0.1	0.26	1.14	1.5
		소 계	0.5	1.3	5.7	7.5
총 계			1.5	3.0	10.5	15.0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산업은행 출자(혁신성장펀드)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2022년 9월말 기준 혁신성장펀드의 투자대상·투자규모 등 운영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으므로, 금융위원회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혁신성장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 필요성 및 출자규모의 적정성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조속히 운영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혁신성장펀드의 투자 대상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금융위원회는 기존 「혁신성장 공동기준」 중 혁신산업 분야와 뉴딜투자공동기준 등을 바탕으로 민간과 시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3년 중 「新 혁신성장공동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혁신성장펀드의 투자규모 및 투자기구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모태펀드 대비 펀드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며, 벤처투자조합(VC) 외에 신기술투자조합, 기관전용사모펀드 등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혁신성장펀드의 투자내용에 대해 방향을 설정하였을 뿐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와 같이 정책펀드의 운용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경우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 혁신성장펀드 조성의 필요성 및 출자규모의 적정성 등을 논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혁신성장펀드 운영계획을 조속히 구체화하여 국회 예산안 심사가 내실있게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혁신성장펀드의 투자대상·분야가 뉴딜펀드·스케일업펀드 등 기존 정책펀드와 중복될 것으로 보이며, 기존 정책펀드의 투자여력 및 신규 정책펀드 조성 등을 감안하여 출자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기존 정책펀드 중 혁신분야의 중소·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펀드로 뉴딜펀드, 성장지원펀드 및 모태펀드의 스케일업펀드 등이 있다.

먼저, 2021년부터 출시된 ‘뉴딜펀드’는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혁신산업 분야 및 전후방 연관산업의 혁신기업 및 중소·중견기업을 투자대상으로 하여 2021~2022년 간 총 1조 1,100억원의 재정 및 1조 6,000억원의 정책자금(산업은행 및 성장사다리)을 바탕으로 총 8조원의 뉴딜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였다.

2022년 8월말 기준 결성액 6조 7,652억원 중 1조 9,287억원(28.5%)이 투자되었으며, 이 중 주목적투자가 중소·중견기업 대상 뉴딜분야인 58개의 자펀드에서는 총 결성액 5조 8,970억원 중 1조 7,272억원(29.3%)만 투자가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자펀드 운용사는 펀드 결성 후 4~5년의 투자 기간 동안 자율적으로 투자 대상을 탐색하여 투자를 집행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22년 8월말 결성액 대비 71.5%인 4조 8,365억원의 투자여력이 있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을 주목적투자로 하는 자펀드의 미투자액은 4조 1,698억원이다.

[2022. 8월말 기준 뉴딜펀드 결성 현황]

(단위: 개, 억원)

구 분	자펀드	펀드결성		투자			
		결성 목표액	결성액	투자 기업수	투자액	(투자율)	미투자액
전 체	65	80,000	67,652	334	19,287	28.5	48,365
뉴딜·중소중견 주목적투자	58	67,100	58,970	317	17,272	29.3	41,698

자료: 금융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2022년 혁신성장 공동기준」 개편 당시 혁신성장 분야를 기반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 하에 뉴딜투자 공동기준과 연계 개편하였는바, 혁신성장펀드의 투자기준이 되는 「新 혁신성장 공동기준」 역시 뉴딜투자 공동기준의 분야·품목과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 혁신성장펀드는 기존의 뉴딜펀드를 재편하여 조성될 뿐만 아니라 투자분야 간 유사성이 있음을 감안할 때 혁신성장펀드의 투자대상이 되는 분야·품목에 대해서는 뉴딜펀드의 투자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성장지원펀드’는 창업 초기 이후 성장·회수단계 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정책펀드로, 2018~2020년 간 3,200억원 규모의 정부출자가 이루어졌으며 55개의 자펀드가 결성되었다. 2022년 8월말 기준 9.9조원 결성액 중 8.21조원이 투자되어 아직 1.69조원의 투자여력이 있다.

[성장지원펀드 조성 및 투자현황(2022. 8월말 기준)]

구분	펀드	목표	조성	업체수	투자	진행률
1차('18년)	18개	2.35조	2.94조	401개	2.73조	93%
2차('19년)	19개	2.43조	3.20조	379개	2.80조	88%
3차('20년)	18개	2.50조	3.76조	363개	2.68조	71%
합계	55개	8.00조	9.90조	1,143개	8.21조	83%

자료: 한국산업은행

성장지원펀드의 경우 주목적투자기준은 없었으나 성장단계의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혁신성장펀드의 성장지원분야와 투자대상기업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성장지원펀드와 혁신성장펀드 비교]

구 분	성장지원펀드	혁신성장펀드
조성계획	3년간('18~'20) 8조원	5년간('23~'27) 15조원
투자분야	성장단계 중소·중견기업	①디지털초격차기술 등 혁신산업분야 ②창업벤처기업 유니콘기업 성장지원 분야
주목적투자 기준	무관	新 혁신성장공동기준*(혁신산업 분야) * '23. 1분기 개편예정
자금조달 ¹⁾	재정 포함 정책자금 2.6조원, 민간 5.4조원	재정 1.5조원, 산은 3조원, 민간 10.5조원
후순위 출자	전분야(단, 운용사 자율 선택가능)	시장 실패 영역 위주
정책자금 비율	32.5%	30%
모펀드 운용사	한국성장금융	미정(공모 예정)

주: 1) 조성계획상 자금조달 및 정책자금 비율임

자료: 금융위원회

다음, 중소기업모태펀드 내 '스케일업 펀드'는 2019년부터 운용 중인 펀드로, 혁신기술 및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하면서 성장잠재력이 있는 창업·벤처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여 중견·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도약을 촉진할 목적으로 결성된다. 2022년 8월말 기준 스케일업 펀드는 총 1조 3,782억원이 결성되었고 미투자액 6,731억원(48.8%)이 투자여력으로 남아있으며, 2023년도 예산안에서 정부 출자 350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스케일업 펀드 조성 및 투자 현황(2022. 8.)]

(단위: 개, 억원, %)

자펀드	펀드결성액				투자현황		
		예산 등	회수재원	민간 출자액	투자액	(투자율)	미투자액
7	13,782	3,500	-	10,282	7,051	51.2	6,73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중소기업모태펀드 내 디지털·초격차 분야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현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차세대 반도체 등이 포함되어 있고 향후 금융위원회는 「新 혁신성장 공동기준」에도 반도체 등 디지털 분야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동력 분야를 구체적으로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어, 혁신성장 펀드와 초격차펀드 간 투자대상의 중복 가능성이 있다.²⁾

[2023년도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기금)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1,010,000	460,000	460,000	283,500	△176,500	△38.4
초격차펀드	-	-	-	55,000	55,000	순증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즉, 혁신성장펀드는 기존의 정책펀드(뉴딜펀드·성장지원펀드·스케일업 펀드)와 투자대상·분야 간 중복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각 정책펀드에 미투자액이 잔존하여 투자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초격차·반도체 분야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정책펀드 추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혁신성장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2)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및 산업은행은 혁신성장펀드는 성장단계 벤처 중소·중견기업, 인프라프로젝트 등으로 설정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 현 황

신용보증기금의 기금전입금¹⁾은 기후대응기금으로부터 녹색 공정전환보증계정에서의 보증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전입받는 것으로, 2023년도 계획안은 전년대비 50억원 감액된 400억원으로 편성되었다.

[2023년도 신용보증기금 기금전입금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2023 계획안(B)	증감	
		본예산	수정(A)		B-A	(B-A)/A
기금전입금	-	45,000	45,000	40,000	△5,000	△11.1

자료: 신용보증기금

한편, 신용보증기금의 설비부담금²⁾은 신용보증기금이 매출채권보험계정,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의 위탁관리에 따른 관리수수료 수입에 관한 것으로, 2023년도 계획안은 전년대비 3,300만원 증액된 11억 8,1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2023년도 신용보증기금 설비부담금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2023 계획안(B)	증감	
		본예산	수정(A)		B-A	(B-A)/A
설비부담금	1,148	1,148	1,148	1,181	33	2.9

자료: 신용보증기금

설비부담금이 3,300만원 증액 편성된 것은 매출채권보험계정,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외에 문화산업완성보증계정·녹색보증계정·녹색 공정전환보증계정의 관리수수료가 신규로 계상되었기 때문이다.

김윤성 예산분석관(kimys1001@assembly.go.kr, 6788-4623)

1) 코드: 신용보증기금 91-913

2) 코드: 신용보증기금 59-59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설비부담금 편성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2계획 (수정)	1,148,000	· 매출채권보험 관리수수료 684백만원 : 매출채권보험계정 예상 정원 228명 × 3백만원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관리수수료 464백만원 : 고정비* 120백만원 + 변동비 344백만원** * 사무시설, 전산기기 및 신용정보회선 등 고정성 사용료 ** 여유자금 위탁운용에 따른 수수료
2023계획안	1,181,000	· 매출채권보험 관리수수료 684백만원 : 매출채권보험계정 예상 정원 228명 × 3백만원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관리수수료 464백만원 : 고정비* 120백만원 + 변동비 344백만원** * 사무시설, 전산기기 및 신용정보회선 등 고정성 사용료 ** 여유자금 위탁운용에 따른 수수료 · <u>문화산업완성보증계정 관리수수료 8백만원</u> : 문화산업완성보증계정 예상 정원 5명 × 1.5백만원 · <u>녹색보증계정 관리수수료 11백만원</u> : 녹색보증계정 예상 정원 7명 × 1.5백만원 · <u>녹색 공정전환보증계정 관리수수료 14백만원</u> : 녹색 공정전환보증계정 예상 정원 9명 × 1.5백만원

자료: 신용보증기금

나. 분석의견

신용보증기금으로의 전입금 등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후대응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별도계정에서 운용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재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기금수입에 포함되어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를 과다하게 보이게 하므로, 기금 수입 및 지출 중 여유자금 운용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기후대응기금의 근거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르면 기금의 보증사업을 신용보증기금이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2022년부터 기후대응기금에서 신용보증기금으로 출연금이 기금전입금(91-913)에 편성·집행되었다.

[기후대응기금 보증사업 관련 근거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7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정을 설치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9조(기금의 운용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 및 기금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제3조(정의) ①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금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라 함은 기획재정부장관을 말한다.
2. "기금사업 주관 부처"(이하 "중앙관서"라 한다)라 함은 기금사업을 주관하여 시행하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3. "기금수탁관리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라 함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4. "보증사업"이라 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융자사업"이라 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기금에서 자금을 대여하거나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보증기관) 기금의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러나 실제 기후대응기금의 출연금은 별도 계정인 녹색 공정전환보증계정에서 운용·관리되고 있으며, 출연금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시설 도입, 친환경제품·기술의 R&D·사업화 및 생산 확대에 필요한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 대출에 보증을 제공한다. 2022년 기후대응기금의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450억원으로, 2022년 8월 말 기준 100억원의 전입금을 바탕으로 59개 기업에 517억원의 보증이 공급되었다.

[2022·2023년도 기후대응보증(신보출연)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계획안(B)	증감	
		계획액	수정(A)		B-A	(B-A)/A
기후대응보증(신보출연)	-	45,000	45,000	40,000	△5,000	△11.1

주: 1) 기금은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금융위원회

[녹색 공정전환보증계정 운용·관리 현황]

(단위: 억원, 배, %)

구 분	2022년 목표	2022.8월말	2022년말(예상)
정부출연금	450	100	450
보증공급액 ¹⁾	5,000	517	5,000
보증기업수	-	59	570
보증잔액(A)	4,505	490	4,505
기본재산(B)	394	100 ²⁾	394
운용배수(A/B)	11.4	4.9	11.4
(법정 운용배수) ³⁾	20	20	20
(목표 운용배수)	11.1	11.1	11.1
부실액	-	-	-
부실률	-	-	-
대위변제액	-	-	-
대위변제율	-	-	-
구상권회수	-	-	-
여유자금운용	450	100	450

주: 1) 보증공급액은 신규보증금액 기준

2) 최초 결산기 미도래에 따라 2022.8월 현재 정부출연금 100억원 기준으로 산정

3) 법정 운용배수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20배수 이내 운용

자료: 금융위원회

즉, 기후대응기금의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녹색 공정전환보증계정의 기본재산을 구성하고 여유자금의 별도 운용되고 있으며 보증부실이 발생할 경우 대위변제에 지출될 예정이므로 「신용보증기금법」상의 신용보증기금과는 별도로 운용된다. 그럼에도 신용보증기금의 기금전입금에 포함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과 여유자금 현황을 과다계상하게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용보증기금 수입분에서 기금전입금 수입분 및 여유자금운용 지출분에서 400억원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

둘째, 타 법령에 근거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위탁관리·운용하고 있는 보증계정의 설치·운용방식이 적절한지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후대응기금 외에도 「신용보증기금법」 외 타 법률에서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하는 경우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기획재정부), 매출채권보험계정(중소벤처기업부), 문화산업완성보증계정(문화체육관광부), 녹색보증계정(산업통상자원부)이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위탁관리 중인 기금·계정의 근거법률]

기금·계정명	소관 중앙관서	근거규정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기획재정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① 민간투자사업 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제34조제1항 각 호의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한다.
매출채권보험계정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의 설치) ① 정부는 제2조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상행위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내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기금 · 계정명	소관 중앙관서	근거규정
문화산업완 성보증계정	문화체육관 광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0조의2(완성보증계정의 설치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의 제작 및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완성보증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에 완성보증계정을 설 치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녹색보증계 정	산업통상자 원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6.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위 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법 제10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에 대한 융자, 보증 등 금융 지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보증계정의 설치 및 운용 등) ① 보증기관은 녹색보증사 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정(이하 "보증계정" 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6조(보증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① 보증기관은 녹색보증계 정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중 문화산업완성보증은 문화상품의 제작자가 문화상품을 유통하는 자에게
계약의 내용대로 완성하여 인도할 수 있도록 대출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
를 보증하는 것으로, 계정은 2019년 설치되었으며 2022년 8월말 기준 총 265억원
의 정부출연금이 편성 또는 집행되어 2022년 8월말 기준 보증잔액은 476억원이다.

[문화완성보증계정 위탁운용 · 관리 현황]

(단위: 억원, 배, %)

구 분	문화완성보증계정			
	2019	2020	2021	2022.8
정부출연금	50	50	75	90
보증공급액 ¹⁾	150	205	451	330
보증기업수	20	28	72	62
보증잔액(A)	129	139	354	476
기본재산(B)	36	84	132	229
운용배수(A/B)	3.6	1.7	2.7	2.1
(법정 운용배수)	20.0	20.0	20.0	20.0
(목표 운용배수)	5.0	5.0	5.0	5.0
부실액	-	9	-	15
부실률	-	6.4	-	4.9
대위변제액	-	4	5	-
대위변제율	-	2.9	1.4	-
구상권회수	-	-	-	-

주: 1) 보증공급액은 신규보증금액 기준

자료: 신용보증기금

녹색보증계정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및 관련 제품·설비의 생산·개발 단계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기 위한 계정으로, 2021년 설치되었다. 녹색보증계정은 2022년 8월말까지 총 475억원의 정부출연금을 바탕으로 2021년 1,891억원, 2022년 8월말 기준 1,123억원의 보증을 공급하였다.

[녹색보증계정 위탁운동 · 관리 현황]

(단위: 억원, 배, %)

구 분	녹색보증계정	
	2021	2022.8
정부출연금	250	225
보증공급액 ¹⁾	1,891	1,123
보증기업수	98	66
보증잔액(A)	1,848	2,849
기본재산(B)	180	413
운용배수(A/B)	10.3	6.9
(법정 운용배수) ²⁾	20.0	20.0
(목표 운용배수)	7.0	7.0
부실액	-	-
대위변제액	-	-
구상권회수	-	-

주: 1) 보증공급액은 신규보증금액 기준

2) 법정 운용배수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20배수 이내 운용(신용보증기금계정 준용)

자료: 신용보증기금

위와 같이 보증사업의 근거 및 위탁관리 · 운용에 대하여 개별 법령에 근거를 두는 경우 해당 법령이 목표로 하는 특정 산업 · 기업에 대한 집중적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계정을 운용하는 것은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국가가 특정 목적을 위하여 특정 자금을 조성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한다는 점에서 기금 운용과 실질이 유사함에도 기금운용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부처의 출연사업은 일반회계상 재정사업으로 재정사업평가대상 및 국회심의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나, 보증계정 운용의 경우 여유자금 운용, 리스크 관리 등 평가분야 및 방식이 재정사업 평가와는 다르며, 출연금이 없는 경우에도 보증계정은 관리 · 운용되나 사업평가 및 국회 심의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내 계정 설치를 통해 분리하여 별도 보증을 운용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 · 운용과 달리 관리수수료 지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특정 산업 및 분야별 기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보증지원이 필요한 경우 개별법령상 계정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보다는 신용보증기금 내 계정을 설치하여 직접 운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공적자금(Public Funds)은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실이 누적되면서 경색된 금융시장과 실물경제를 조속히 정상화시키고자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정부 보증을 받아 발행한 채권과 공공자금 등으로 조성한 자금¹⁾으로,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 등에 사용되었다. 2002년 국회에서 확정한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라 채무원금 97.2조원²⁾ 중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28조원을 제외한 69조원에 대해 20조원은 금융회사가, 49조원은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여 상환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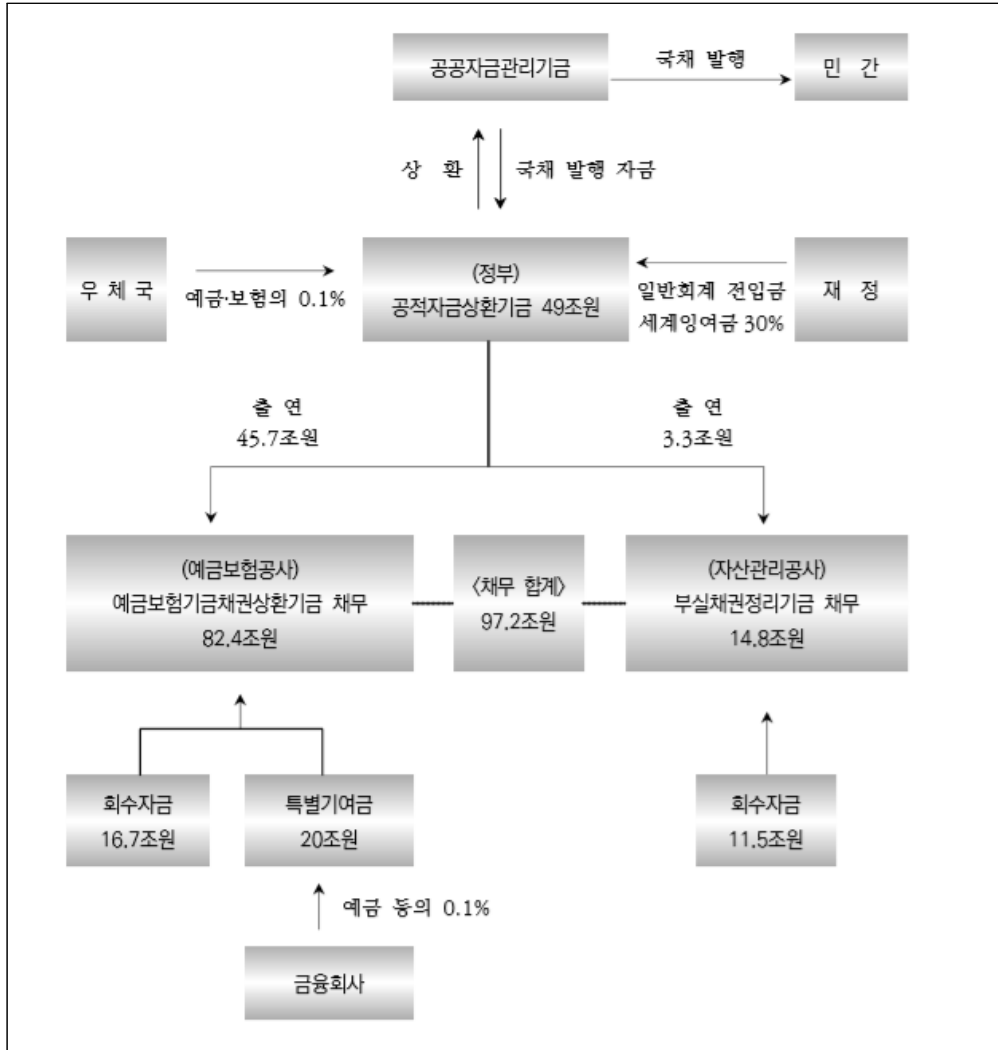
상환 구조를 살펴보면,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공적자금 채무를 상환하는데,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총 부채 82.4조원을 회수 자금 16.7조원, 금융회사의 특별기여금 20조원 및 재정 출연금 45.7조원으로 상환하고, 부실채권정리기금은 회수자금 11.5조원 및 재정 출연금 3.3조원으로 상환하도록 계획되었다.

한편, 공적자금상환기금은 2003~2006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공적자금 49조원을 상환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하고자 설치된 기금으로, 매년 일반회계 출연금과 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특별회계 등으로 25년 이내(~2027년)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받은 국채원리금을 상환³⁾하도록 하였다.

김윤성 예산분석관(kimys1001@assembly.go.kr, 6788-4623)

- 1) 공적자금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하는 방법 등을 통해 자금을 조성한 공적자금 I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된 구조조정기금인 공적자금 II로 구분될 수 있는데, 현재는 공적자금 I만 관리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공적자금 I에 대해서만 분석하며, ‘공적자금’으로 기재한다.
- 2) 2002년말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59조원이나 이 중 7조원은 이미 상환되었고, 회수자금으로 투입된 33조원 및 정부예산 등으로 투입된 공공자금 22조원은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상환 대책 상 공적자금 채무에서는 제외되어, 상환대책 상 채무원금은 97.2조원임
- 3) 별도로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5조〕

[공적자금 상환 구조]



자료: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공적자금 관리백서」(2022. 8.), p.73

이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의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 재정 수입분은 일반회계전입금⁴⁾ 2조 1,600억원, 기타특별회계전입금⁵⁾ 1,127억 5,700만원이다.

한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채무 상환이 2021년 완료되고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청산 전이라도 잔여재산이 확실한 경우 그 일부를 공적자금상환

4) 코드: 공적자금상환기금 91-911

5) 코드: 공적자금상환기금 91-912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함⁶⁾에 따라 2021년부터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부터 전입되었으며 2023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⁷⁾에 2조 6,000억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전입금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계획안(B)	증감	
		본예산	수정(A)		B-A	(B-A)/A
일반회계전입금	2,600,000	2,600,000	2,600,000	2,160,000	△440,000	△16.9
기타특별회계전입금	106,740	108,597	108,597	112,757	4,160	3.8
기타경상이전수입	1,258,072	2,400,000	2,400,000	2,600,000	200,000	8.3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1,250,000	2,400,000	2,400,000	2,600,000	200,000	8.3

주: 1)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7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금융위원회

위 수입에도 불구하고 만기도래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리금이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으로 조달하게 된다. 2023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으로 6조 1,282억원을 계상하였다.

6)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③ 상환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5.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체결되는 정산약정에 따른 출연금의 반환 법률 제6807호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 (상환기금의 청산) 상환기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청산하고, 잔여 자산 및 부채 그 밖의 권리·의무는 금융위원회가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3조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이하 이 조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이라 한다) 또는 예금보험기금 중 그 귀속주체를 정한다. 다만,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환기금의 자산 및 부채를 실사한 결과 상환기금의 청산 시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되는 잔여재산의 일부를 상환기금의 청산 전에 공적자금상환기금에 귀속시킬 수 있다.

7) 코드: 공적자금상환기금 59-596

[2023년도 공적자금상환기금 기금운용계획안 중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계획안(B)	증감	
		본예산	수정(A)		B-A	(B-A)/A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2,097,252	-	-	6,128,204	6,128,204	순증

주: 1)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7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금융위원회

한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경우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출자방식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했다면 보유주식의 배당 또는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보유주식과 관련된 수입은 정부출자수입⁸⁾(배당금)과 재고자산매각대⁹⁾(보유주식 매각)에, 지출은 기타정리자문경비등¹⁰⁾(매각 관련 자문 수수료)에 편성되며,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는 정부출자수입 1,564억 5,100만원, 재고자산매각대 2,156억 4,200만원의 수입과, 26억 4,900만원의 기타정리자문경비등 지출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내 출자지분 관련 수입·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정부출자수입	162,674	132,629	132,629	156,451	23,822	18.0
재고자산매각대	1,081,997	910,859	910,859	215,642	△695,217	△76.3
기타정리자문경비등	2,038	2,109	2,109	2,649	540	25.6

주: 1) 각각 2022년 당초계획과 7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금융위원회

2022년 8월말 기준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우리금융지주(1.29%), 한화생명(10.0%), 서울보증보험(93.85%), 수협중앙회의 일부 지분을 보유 중이다. 그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우리금융지주·한화생명에 대해 매각 및 배당금을 통해,

8) 코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52-521

9) 코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73-731

10) 코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131-370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배당금으로, 수협중앙회의 경우 우선 출자증권 소각¹¹⁾을 통해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있었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보유주식 현황(2022년 8월말 기준)]

(단위: 억원, 만주, %, 원)

구 분	지원액 (A)	회수액(B)	보유현황				
			회수율	평가액	보유주식	(공사 지분율)	단가 ³⁾
우리금융 지주 (출연 포함)	94,422 ¹⁾ (127,663)	121,077 ²⁾ (128,672)	128.2% (100.8%)	1,142	936	1.29%	12,200
한화생명	35,500	25,071	70.6%	2,006	8,686	10.0%	2,310
서울보증 보험	102,500	43,483	42.4%	30,463	3,276	93.85%	92,976
수협 중앙회	11,581	4,007	34.6%	7,574	7,574	우선주	10,000

주: 1) 9조 4,422억원은 출자를 통한 지원액이며, 출연액(3조 3,241억원)을 포함하면 총 지원액은 12조 7,663억원임

2) 출연에 따른 파산배당금 등 7,595억원을 포함하면 총 회수액은 12조 8,672억원임

3)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우리금융지주·한화생명보험의 경우 2022. 8. 31. 종가 기준이며, 서울보증보험은 비상장기업으로 주식총액은 2018년도 예보채상환기금 재계산 시 평가금액임

자료: 예금보험공사

나. 분석의견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배당수입을 늘리고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회수방안 수정계획을 반영하여 수입 및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 그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 및 국채발행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11) 2016년 수협중앙회의 신용부문이 수협은행으로 신경분리됨에 따라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의 주주로서 받는 배당금을 재원으로 수협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에 있는 예금보험공사의 우선출자증권을 매입·소각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함

먼저, 우리금융지주 출자지분의 경우 2019년 6월 발표·수립된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방안」에 따라 2022년까지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을 전량 매각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입에는 우리금융지주 관련 정부출자수입 및 재고자산매각대가 계상되지 않았으나, 기타정리자문비용등 사업에는 지분을 3.62%를 전제로 우리금융지주 매각수수료가 14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다.

그러나 2022년 8월말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잔여지분은 1.29%에 불과하므로 지출금액은 잔여지분 규모를 수정 반영하여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내 기타정리자문비용등 사업 중 우리금융지주 매각수수료 관련]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산출근거
우리금융지주	1,442	· (2022. 3월말 잔여지분 3.62% 미매각 가정) 592백만원 ¹⁾ (재무자문 3사) + 250백만원 ²⁾ (법률자문) + 500백만원 ³⁾ (회계자문) + 100백만원 ⁴⁾ (부대비용)
		1) 384,613백만원[2023년 예상 매각금액(잔여지분 3.62%, 최근 3개월(2022.1월~3월) 거래량가중평균 추가 기준) × 0.154%(부가세포함 성공보수 평균 수수료율)] 2) 現 법률자문사 평균지급액(2014~2021년, 309백만원)을 고려했으며, 절감노력(59백만원)을 반영하여 250백만원으로 산정 3) 現 회계자문사 평균지급액(2014~2021년, 558백만원)을 고려했으며, 절감노력(58백만원)을 반영하여 500백만원으로 산정 4) 부대비용 절감노력을 반영하여 한도를 100백만원으로 설정

자료: 예금보험공사

다음,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그간 예금보험공사는 배당을 통해 공적자금을 회수하였으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지분을 5%의 매각¹²⁾을 가정하고 재고자산 매각대 1,547억 1,400만원, 기타정리자문경비등 12억 700만원을 편성하였다.

12) 다만, 금융위원회는 2022년 7월 「서울보증보험 지분매각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동 계획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2023년에는 약 10%의 지분을 IPO(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공개)를 통해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매각할 계획이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내 서울보증보험 관련 수입·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계획	2023 계획안	(산출근거)
수 입	재고자산 매각대	-	162,292	1,745,540 ¹⁾ × 92,975.5원 ²⁾ 1) '23년 매각예상 수량(5%) 2) '18년 예보채상환기금 재계산시 주당 회수 추정금액
	정부출자 수입	98,687	154,714	32,764,453 ¹⁾ × 4,722원 ²⁾ 1) '22년말 예상 보유주식수 2) 3년(FY'19~'21) 평균 주당 배당금
지 출	기타정리 자문경비등	-	1,207	357백만원 ¹⁾ (재무자문) + 250백만원 ²⁾ (법률자문) + 500백만원 ²⁾ (회계자문) + 100백만원 ²⁾ (부대비용) 1) 162,292백만원('23년 예상 매각금액) × 0.22%(최 근 매각주관사 부가세 포함 수수료를 사례 반영) 2) 법률·회계 자문수요, 부대비용 발생 예상, 우리금융 지주 사례를 감안하여 비용 산정

자료: 예금보험공사

2022년 8월말 기준 서울보증보험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율은 42.4%에 불과하는 등 조속한 공적자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서울보증보험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RBC 비율¹³⁾이 2022년 6월말 기준 손해보험회사 평균 223.2%의 1.84배인 411.4%로 업계 내 가장 높으며, 당기순이익 역시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을 제외하고는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주당 배당금을 과거 3년 평균인 주당 4,722원¹⁴⁾보다 높게 산정함으로써 조기에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 RBC 비율 = 요구자본(보험회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손실금액) 대비 가용자본(보험회사의 각종 리스크로 인한 손실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량)

14) 최근 5년간 서울보증보험의 배당 현황

(단위: 천주, %, 원, 억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보유주식수	32,764	32,764	32,764	32,764	32,764
지분율	93.85	93.85	93.85	93.85	93.85
주당배당금	6,588	4,442	4,590	3,012	6,563
배당성향 ¹⁾	50.0	35.0	37.1	32.0	50.2
배당금	2,159	1,455	1,504	987	2,150

주: 1) 배당성향은 전년도 회계연도 기준

자료: 예금보험공사

[서울보증보험의 당기순이익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에 대한 배당금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당기 순이익	1,150	4,842	5,080	6,151	4,589	4,458	4,331	3,282	4,566	-
배당금	1,472	803	3,374	3,948	3,210	2,159	1,455	1,504	987	2,150
배당성향	50.0	75.0	75.0	82.3	55.7	50.0	35.0	37.1	32.0	50.2

주: 배당성향은 전년도 회계연도 기준

자료: 예금보험공사 제출자료 및 각 연도 서울보증보험 연결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마지막으로, 수협중앙회의 경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협중앙회의 배당금을 통한 출자우선증권 매각으로 533억 5,000만원의 수입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2022년 6월 예금보험공사와 수협중앙회는 공적자금상환합의서를 개정함에 따라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 미상환잔액 7,574억원(액면가 기준)에 해당하는 국채를 매입하여 2022년 9월말 예금보험공사에 일시에 지급하여 상환하였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내 수협중앙회 관련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계획	2023 계획안	(산출근거)
수 입	재고자산 매각대	28,069	53,350	당기순이익 ¹⁾ (216,030백만원)-내부유보액 ²⁾ (147,845백만원)-조달비용(14,835백만원) ³⁾
				1) '22년 경영계획상 당기순이익 - 세전 당기순이익(2,850억원), 법인세율 24.2% 적용 2) 법정적립금, 신종자본증권 배당 지급액 등을 고려한 목표자본비율(수협은행 최근 5년('17~'21) 보통주 비율 평균 10.78%) 유지 필요액 3) 신용사업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수금채 이자 조달비용

자료: 금융위원회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국채를 일시에 수령하고 2027년까지 국채의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에 현금을 지급받아 공적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며 2023년에는 800억원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재고자산매각대 533억 5,000만원 대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국채매각대 800억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공적자금상환합의서 개정에 따른 국채 만기도래 일정]

(단위: 억원)

상환 총액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7,574	800	800	800	800	4,374

자료: 예금보험공사

이상의 논의를 고려할 때, 예금보험채권기금상환기금의 재고자산 매각 및 정부 배당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잔여재산이 증가하면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의 전출 규모도 증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수입이 증가하게 되면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규모를 감소시킬 수 있고 그에 따라 국채발행 규모도 줄일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의 배당수입을 늘리고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회수 수정계획을 반영하여 수입 및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 그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금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¹⁵⁾

15) 또한 2027년 말 두 기금의 청산시점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기금간 전출규모 및 공적자금 상환 부담의 최종 부담주체에 대한 논의도 조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현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49억 2,6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20억 2,000만원(69.5%) 증가하였다.

[2023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6,026	2,906	2,906	4,926	2,020	69.5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585억 2,4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85억 700만원(17.0%) 증가하였다.

[2023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5,541	50,197	50,017	58,524	8,507	17.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김국찬 예산분석관(gckim@assembly.go.kr, 6788-3736)

2023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개인정보기술표준개발지원(R&D) 사업(2023년 15억원)이 신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고, ② 위원회운영지원 사업(2022년 27억 4,400만원 → 2023년 30억 1,900만원),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 사업(2022년 56억 6,200만원 → 2023년 61억 800만원),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사업(2022년 13억 2,300만원 → 2023년 15억 2,100만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사업(2022년 25억원 → 2023년 31억 9,700만원), 개인정보보호강화 기술 연구개발(R&D) 사업(2022년 30억원 → 2023년 59억 9,500만원), 개인정보침해방지 사업(2022년 80억 7,800만원 → 2023년 108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③ 위원회정보화지원 사업(2022년 47억 8,700만원 → 2023년 39억 2,000만원)과 기술개발·전문인력 양성 사업(2022년 16억원 → 2023년 15억 3,000만원),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2022년 49억 2,900만원 → 2023년 46억 9,200만원)은 감액 편성되었다.

2023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아동·청소년 디지털잊힐권리 실현 사업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① 법적 한계로 인하여 2024년 이후 삭제 지원 대상 확대 등 사업의 수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② 사업 예산의 산출내역에 따르면 2023년도 예산액 중 인건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사업이 시행될 것임을 전제로 과다 계상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2개월분에 해당하는 예산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으며, ③ 지원 작업이 인력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효율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기술적 수단을 함께 활용한 삭제 등의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인정보 전송지원 플랫폼 사업의 경우 현행법상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일반법적 근거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개인정보 전송지원 플랫폼 ISP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전송요구권 도입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계부처의 의견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① 전문인재 양성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성과지표 측정 산식에서 교육 횟수 대신 교육인원 수를 활용하고 측정 산식을 세분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②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의 온라인 제공 확대를 비롯한 비대면 교육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③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간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현황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므로 민간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3년도 신규사업은 총 1개 사업, 15억원 규모이다.

개인정보기술표준개발지원(R&D) 사업은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핵심 신기술별 개인정보 분야 표준개발 및 국내·외 표준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신규 편성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1개)	개인정보기술표준개발지원(R&D)	1,50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 증액사업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사업과 개인정보보호강화 기술연구개발(R&D) 사업이다.

개인정보보호강화 기술연구개발(R&D) 사업은 최근 산업계의 활용수요가 높은 생체정보 및 개인 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개발비 등이 반영되어 증액되었다.

개인정보 침해방지 사업은 개인정보 침해사건 조사기능을 강화하고자 침해사건에 대한 데이터 관리 등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구축 예산 등이 반영되어 증액되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2 ¹⁾		2023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개)	개인정보보호강화 기술연구개발(R&D)	3,000	3,000	5,995	2,995	99.8
	개인정보침해방지(정보화)	8,078	8,078	10,839	2,761	34.2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

신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법적 문제 고려 필요

1-1. 아동·청소년 디지털잊힐권리 실현 사업 관련 문제

가. 현 황

아동·청소년 디지털잊힐권리 실현 사업은 정보주체로서 인식이 성숙하지 못한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 또는 제3자에 의하여 게시된 글·사진·영상 등에 대해 삭제 및 검색목록 배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 사업¹⁾의 내내역사업이다. 아동·청소년 디지털잊힐권리 실현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2023년 예산안은 7억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아동·청소년 디지털잊힐권리 실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개인정보보호정책지원	4,868	5,662	5,662	6,108	446	7.9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성화	972	1,055	1,055	1,720	665	665
(아동·청소년 디지털잊힐권리 실현)	-	-	-	700	순증	순증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 게시한 온라인 게시물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자로, 신청 가능 연령은 ‘아동·청소년 잊힐권리 시범사업 준비반’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며, 신청자가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 또는 제3자가 올린 글·사진·영상 등의 개인정보에 대해 요청이 있는 경우 삭제 또는 블라인드를 지원하게 된다.

아동·청소년 디지털잊힐권리 실현 사업은 2023년에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데, 지원인력 29명이 월 60건의 게시물을 삭제함으로써 1년간 총 20,880건의 삭제 또는 블라인드를 지원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기간에는 신청자 본인이 아동·청소년 시기에 올렸던 개인정보에 대해서만 삭제 등을 지원하고 이후 2024년부터 제3자가 올린 게시물까지 삭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삭제 지원 대상 게시물의 유형 및 요건(안)]

구분	게시 유형	요건 및 지원범위
자기 게시물 (2023년 이후)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게시한 글·사진·영상 등	(요건) 본인 게시물 입증 (지원범위) 삭제 지원, 검색목록 배제 지원
	정보주체가 게시한 글을 제3자가 공유(링크, 복제 등)한 경우	(요건) 본인 게시물 입증 (지원범위) 해당 게시물 접근배제 및 검색목록 배제 지원
제3자 게시물 (2024년 이후)	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청소년에 관한 글·사진·영상 등을 올린 경우(셰어런팅 등)	(요건) ① 해당 게시물이 본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실 입증, ② 부모가 직접 삭제하는 것이 어렵거나(계정탈퇴 등), 부모와 연락 단절 등으로 요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지원범위) 부모 요청 시 해당 게시물 삭제 지원, 부모 연락이 어려운 경우 게시물 접근배제 및 검색목록 배제 지원
	제3자가 아동·청소년에 관한 비난·비방 등 부정적 게시물을 올린 경우(사이버 폭력)	(요건) 해당 게시물에 등장하는 내용 등이 본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실 입증 (지원범위) 해당 게시물 접근배제 및 검색목록 배제 지원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나. 분석의견

첫째, 제3자가 아동·청소년에 관하여 게시한 개인정보의 경우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게시한 개인정보와 달리 현행법에 따른 개인정보 삭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적 한계로 인하여 2024년 이후 삭제 지원 대상 확대 등 사업의 수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에서는 잊힐 권리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률은 없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2)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3)에 따르면 명예훼손, 불법적 개인정보 거래 및 기타 법률 위반 정보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제공한 개인정보를 제3자가 복사하거나 링크한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 삭제가 어렵고, 해당 정보가 명예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 등 권리침해 정보가 아니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삭제도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⁴⁾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년 7월 관계부처(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아동·청소년의 잊힐 권리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률안은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4) 국회입법조사처,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 법제화에 대한 검토」, 『NARS 현안분석』 제162호, 2020.

없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적 한계로 인하여 향후 삭제 지원 범위 확대 등 사업 수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잇힐 권리 법제화 방안이 포함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출한 실제 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3년 3월부터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나, 사업 예산의 산출내역에 따르면 2023년도 예산액 중 인건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사업이 시행될 것임을 전제로 과다 계상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2개월분에 해당하는 예산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출한 디지털잇힐권리 실현 사업의 예산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도 예산액 중 약 71.6%가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된 게시글 삭제 지원 인력에 대해 지급하는 인건비로 편성되었고, 나머지 예산액은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과세로 편성되었다.

[2023년도 아동·청소년 디지털잇힐권리 실현 사업 예산액 세부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직접인건비 (월)	인원 (명)	투입공수 (개월)	참여율 (%)	금액
책임연구원	6,654,052	1	12	20	15,969,725
연구원	5,102,238	3	12	20	36,736,114
연구보조원	3,410,674	4	12	40	65,484,941
보조원	2,558,092	21	12	60	386,783,510
직접인건비 합계					504,974,290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과세					200,752,528
합 계					705,726,818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년 11월부터 2월까지 사업 시행을 위한 웹 사이트 등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고, 이후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2023년 아동·청소년 디지털잊힐권리 실현 사업 추진계획(안)]

구분	추진 내용
2022. 10. ~ 2023. 1.	디지털잊힐권리 시범사업 준비반 구성 및 운영 (삭제지원대상 및 범위, 서비스 운영방식 등에 대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 간 논의 후 확정)
2022. 11. ~ 2023. 2.	사업 시행 위한 웹사이트 메뉴 구성 등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참여 제고를 위해 기존 개인정보보호 포털 활용 예정)
2023. 3. ~	아동·청소년 디지털잊힐권리 실현 사업 시행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인건비는 3월부터 지출될 예정임에도, 예산액 세부 산출내역에서는 인건비가 1월부터 지출될 것을 전제로 예산액을 편성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업 추진계획을 고려하여, 예산액 중 2개월분(예산액 세부 산출내역 기준 약 1억 1,762만원)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업계획에 따르면 시범사업 운영 1년 간 총 20,880개의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블라인드 지원이 예정되어 있는데, 지원 작업이 인력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효율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기술적 수단을 함께 활용한 삭제 등의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출한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게시물의 삭제 또는 블라인드 지원은 전담 인력(29명)에 의해 실시되며, 인당 월 60건만끔 지원 가능하므로 1년에 총 20,880건만끔 지원될 예정이다. 전담 인력에 의해 삭제 등이 지원되는 1건의 단위는 URL을 통해 접속 가능한 하나의 게시물을 의미하며, 전담 인력을 제외한 별도의 자동탐지 시스템 마련 계획은 없다.

그러나 최근 SNS와 UCC를 비롯한 자유도 높은 온라인 콘텐츠가 확산되면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가 캡처, 가공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서로 다른 URL로 저장될 가능성이 증가하였으므로, 인력에 의해서만 삭제나 블라인드를 지원할 경우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다수의 URL로 증식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

보를 온전히 삭제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예능프로그램의 유행과 같이 다수가 향유하는 콘텐츠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가 게시되면, 불특정 다수에 의한 개인정보 확산 속도가 지원 인력의 게시물 삭제 속도를 압도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향후 2022년 7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온라인 게시물의 개인정보 자동탐지기술(R&D)과 같은 기술적 수단을 함께 강구함으로써 동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2. 개인정보 전송지원 플랫폼 사업 관련 문제

가. 현 황

개인정보 전송지원 플랫폼 사업¹⁾은 마이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주체 동의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전송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2023년 예산안은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ISP 실사를 위해 7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3년도 개인정보 전송지원 플랫폼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	2,500	2,500	3,197	697	27.9
(개인정보 전송지원 플랫폼)	-	-	-	787	순증	순증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마이데이터(MyData)는 정보주체가 공공·민간에 제공하여 왔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요구²⁾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신용평가, 자산관리, 건강관리 등 데이터 기반 서비스에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2019년부터 금융위원회(금융), 행정안전부(공공), 보건복지부(의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실증서비스 지원) 등 각 부처에서 소관 분야에 적합한 데이터와 전송방식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분야별 추진 경과·내용 등에 차이가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서로 다른 산업 간 데이터 전송을 위한 기술표준을 마련하고 모든 분야에서의 정보 연계·통합 활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관계부처와 함께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목적으로 ‘마이데이터 표준화 협의회’를 개최하여 마이데이터 표준화 추진계획에 대해 협의한 후, 전문가

김국찬 예산분석관(gckim@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1031-300

2) 정보주체가 정보제공자로 하여금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데이터의 전송을 요구하는 것으로, 유럽연합 회원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EU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을 통해 2018년부터 시행된 것에서 유래되었다.

와의 논의를 거쳐 마이데이터 표준화 우선 추진 분야를 확정하고 이후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데이터 형식의 표준화, 전송요구권 보장을 위한 ‘개인정보 전송지원 플랫폼’ 구축 등의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마이데이터 표준화 협의 주요 내용]

구분	참석 기관	주요 내용
1차 협의 (21. 11.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금융위원회,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 마이데이터 표준화 추진계획 논의 (산업 간 데이터 형식 및 전송 방식 표준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절차, 사용자 인증 및 보안체계 구축 방안 등) - 향후 협의회 운영 방향 논의
2차 협의 (22. 4. 26.)	1차 협의 참석기관 +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마이데이터 표준화 사업 추진 경과와 표준화 대상 분야 등 논의 - 각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표준화 방안 및 부처 간 협조사항 공유
3차 협의 (22. 7. 5.)	2차 협의 참석 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 2022년 우선 추진 표준화 분야 확정(정보통신, 교육, 유통, 문화·여가, 국토·교통) -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데이터 형식·전송방식의 표준화, 종합지원플랫폼 구축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현행법상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일반법적 근거 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개인정보 전송지원 플랫폼 ISP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전송요구권 도입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관계 부처의 의견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각 부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관 법률 개정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위원회는 2020. 2. 개인정보의 전송요구권을 규정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³⁾을 통해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2021. 6. 특정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행정정보에 대한 전송요구권을 규정하는 「전자정부법」 개정⁴⁾을 통해 2022년에 공공분야 마이데이터 연계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현행법상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대하여는 개별법적 근거만 마련되었을 뿐, 「개인정보 보호법」에서의 일반법적 근거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전송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8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 하나인 점, 동법 제17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를 거쳐 현행법으로도 마이데이터 제도 추진이나 개인정보 전송지원 플랫폼의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 해당 플랫폼 구축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도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정부 내 합의가 형성되어 있는 점, 향후 플랫폼 구축에만 약 2년 이상 소요될 예정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기 전에 해당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개인정보 전송지원 플랫폼 구축에 필수적인 전송요구 요건 및 절차, 전송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4. 개인신용평가회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① 정보주체는 행정기관등이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등의 장으로 하여금 본인에 관한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 등의 행정정보(법원의 재판사무·조정사무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무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본인정보”라 한다)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본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처리하는 민원은 제외한다)를 처리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행정기관등
2.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요구권 보장에 필요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아직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전송지원 플랫폼 ISP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되, 추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내용과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등 개별 법령 등과의 정합성 등을 적실성 있게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Ⅲ

개별 사업 분석

1

개인정보 가명처리 및 전문관리자(CPO) 양성 사업 관련 문제

가. 현 황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개인정보보호 법·기술을 망라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양성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위협 감소 및 안전한 활용에 기여하는 것으로, 기술개발·전문인력 양성 사업¹⁾의 내역사업이다.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① 가명·익명처리 전문가 교육 예산(7억원)과 ② 전문관리자 양성교육(2억원) 예산으로 구분된다.

[2023년도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1 결산	2022 ¹⁾		2023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기술개발·전문인력 양성	1,400	1,600	1,600	1,530	△70	△4.3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900	900	900	900	0	0

주: 1)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기준을 의미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익명처리 전문가 교육은 「개인정보 보호법」²⁾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

김국찬 예산분석관(gckim@assembly.go.kr, 6788-3736)

1) 코드: 일반회계 1031-304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

게 활용하기 위하여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전문관리자 양성교육은 개인정보보호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³⁾(CPO, Chief Privacy Officer)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인정보보처리자는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4항제8호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⁴⁾.

나. 분석의견

첫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성과지표 측정 산식에서 가명정보 전문인재양성 교육 횟수를 활용하고 있는데, 전문인재 양성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성과지표 측정 산식에서 교육 횟수 대신 교육인원 수를 활용하고 측정 산식을 세분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
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4)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예산은 1개의 전략목표와 1개의 프로그램 목표 하에서 운용되며, 해당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 수는 ‘개인정보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실시 횟수’, ‘개인정보 노출 불법유통 게시물 탐지 삭제율’로 총 2개이다.

성과지표 중 ‘개인정보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실시 횟수’는 개인정보 관련 교육 횟수 및 개인정보 관련 컨설팅 횟수를 점수 환산하여 측정하는데, ‘개인정보보호 실무역량’ 교육과 ‘가명정보 전문인재양성’ 교육 실시 횟수의 합이 58회 이상이고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과 ‘가명정보 안전활용 컨설팅’ 횟수의 합이 92회 이상인 경우 해당 성과지표가 만점에 도달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산의 프로그램 구조 및 성과지표 현황]

구분		내용																														
전략목표(1개)		국민이 신뢰하는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을 통해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지원																														
프로그램목표(1개)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제고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기반을 조성																														
성과지표 (2개)	개인정보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실시 횟수	개인정보 관련 교육 실시 횟수를 점수로 환산(50%)하고, 개인정보 관련 컨설팅 횟수를 점수로 환산(50%)하여 산정 - 개인정보 관련 교육은 ‘개인정보보호 실무역량’ 또는 ‘가명정보 전문인재양성’으로, 점수 환산 방식은 아래와 같음 <table><tr><td>횟수</td><td>58회 이상</td><td>57회 ~ 54회</td><td>53회 ~ 50회</td><td>49회 이하</td></tr><tr><td>등급</td><td>탁월</td><td>우수</td><td>보통</td><td>미흡</td></tr><tr><td>점수</td><td>100</td><td>90</td><td>80</td><td>70</td></tr></table> - 개인정보 관련 컨설팅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또는 ‘가명정보 안전활용 컨설팅’으로, 점수 환산 방식은 아래와 같음 <table><tr><td>횟수</td><td>92회 이상</td><td>91회 ~ 87회</td><td>86회 ~ 82회</td><td>81회 이하</td></tr><tr><td>등급</td><td>탁월</td><td>우수</td><td>보통</td><td>미흡</td></tr><tr><td>점수</td><td>100</td><td>90</td><td>80</td><td>70</td></tr></table>	횟수	58회 이상	57회 ~ 54회	53회 ~ 50회	49회 이하	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점수	100	90	80	70	횟수	92회 이상	91회 ~ 87회	86회 ~ 82회	81회 이하	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점수	100	90	80	70
	횟수	58회 이상	57회 ~ 54회	53회 ~ 50회	49회 이하																											
	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점수	100	90	80	70																												
횟수	92회 이상	91회 ~ 87회	86회 ~ 82회	81회 이하																												
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점수	100	90	80	70																												
	개인정보 노출 불법유통 게시물 탐지 삭제율	(탐지된 홈페이지 중 개인정보 삭제건수) ÷ (모든 홈페이지 탐지건수) * 100%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해당 성과지표의 경우 교육인원 수가 적거나 두 가지 교육 중 어느 한 쪽의 교육 실시 횟수가 적어도, 다른 한 쪽의 교육 실시 횟수만 58회를 초과하면 해당 항목에서 ‘탁월’ 등급으로 간주되어 100점을 획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증가하는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수요 대응이라는 사업목적을 고려하여 성과지표를 ‘교육 실시 횟수’ 대신 ‘교육인원 수’ 등으로 변경하고 각 교육마다 점수를 별도로 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 전문관리자 양성교육 잠재수요가 상당한 규모일 것으로 추정됨에도 현행 전문관리자 양성교육 과정 운영 방식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중 공공부문의 잠재수요조차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의 온라인 제공 확대를 비롯한 비대면 교육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1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내용에 따르면 중앙·지방·공공기관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양성교육의 잠재수요는 약 45,000명에 달하며, 민간부문의 잠재수요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정보보호 전문관리자 양성교육에 대한 공공부문 잠재수요]

구분	변수	수치
공공분야 개인정보 처리자 수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행정·부속기관(A)	5,190개
	지방자치단체(B)	277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C)	761개
	교육기관(D)	22,642개
	공공분야 개인정보처리자 수(E=A+B+C+D)	28,870개
초임 CPO 교육과정 잠재수요	공공분야 CPO 지정비율(F)	99.8%
	업무 3년 미만 경력자 비율(G)	73.2%
	초임 CPO(임명 후 3년 미만인 자) 과정 잠재수요(H=E*F*G)	21,091명
예비 CPO 교육과정 잠재수요	CPO 제외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평균 인원 수(I)	2.6명
	CPO 제외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중 업무 경력 3년 이상 비율(J)	32.7%
	예비 CPO(업무경력 3년 이상이면서 CPO가 아닌 자) 과정 잠재수요(K=E*I*J)	24,545명
개인정보보호 전문관리자 양성교육에 대한 공공부문 잠재수요(L=H+K)		45,636명

주: 공공분야 개인정보처리자 수를 제외한 변수는 「2021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2022년 전문관리자 양성교육 과정은 Basic의 경우 연간 총 3회, 회당 100명씩 최대 300명까지만 교육이 가능하며, Advanced의 경우 연간 총 6회, 회당 30명씩 최대 180명까지 교육이 가능하나 Basic 수강자들만 교육 신청이 가능하므로 실제 연간 최대 교육인원은 300명에 불과하다.

[개인정보 전문관리자 양성교육 내용 및 실시 현황]

교육과정	최대 교육 가능 인원	교육 주요내용	총 회수 (회당 교육시간)	교육 실시 현황 (22. 10월 2주 기준)
Basic (온라인)	회당 100명	개인정보 법제도 이해,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관리·보호방안, 신기술과 개인정보보호 방안 등	3회 (21H)	1회 (93명)
Advanced (오프라인)	회당 30명 * Basic 이수자만 참여 가능	(공공)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유출방지, 주요 위반 사례별 대응 (민간) 개인정보 자율점 검 주요 미흡 및 법률 위반 사례 및 유출사고별 대응	6회 (37H)	1회 (15명)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년의 교육체계가 2023년에도 유지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공공 부문 잠재수요를 충족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한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효율적으로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의 온라인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Basic 과정을 비롯한 비대면 교육 정원을 늘리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간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현황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민간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에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률은 61.1%로 공공기관(99.8%)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공기관·민간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실태조사 결과]

구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응답 비율(%)
공공기관	행정기관	99.8
	교육기관	100.0
	공공병원	99.0
	공공기관 전체	99.8
민간기업	제조	43.8
	전기/가스/수도	34.3
	건설업	45.9
	유통/물류/도소매	62.3
	숙박/음식	55.6
	정보/통신	61.4
	금융/보험	96.8
	부동산/임대	76.8
	사교육	87.2
	보건/복지	70.0
	협회/단체	83.0
	민간기업 전체	61.1

주: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의한 공공기관 1,500개, 민간기업 3,000개(전국 17개 시·도 종사자 수 1인 이상 사업체) 대상 실태조사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민간기업 중 5인 미만 사업체 등 소상공인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재작성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실태조사 결과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융/보험’(96.8%), ‘사교육’(87.2%) 업종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제조’(43.8%), ‘전기/가스/수도’(34.3%),

‘건설업’(45.9%) 업종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개인정보 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러한 업무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활용과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단기간 내에 확산될 수 있으므로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부기관이 모든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감독할 수는 없으므로 각 개인정보 처리기관 보호책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응답 비율이 적은 업종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이행을 독려하는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예산안분석시리즈 II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22년 10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케이에스센세이션 (tel 02·761·0031)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9-11-6799-088-4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2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60-001506-10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